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책등)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 조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뒷표지)

ISBN 89-90475-23-6 93330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책 임 연 구 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연 구 원: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임강사)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정책팀장)

2003. 11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 11. 7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연구원: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전임강사)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정책팀장)

연구보조원: 김명아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심경섭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기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김지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정민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과정)

목 차

목차	i
표차례	iii
요약문	v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2
3. 연구내용과 방법	7
 II.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5
1. 인권, 아동 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15
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19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22
4.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34
 III. 국내 유입과 정착 및 귀국	 43
1. 입국 경로	43
2. 정착과정	48
3. 귀국·송환	55
 IV.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59
1. 시간대별 생활 패턴	59
2. 부모-자녀 관계	63
3. 친구와 이웃	66
4. 의료와 건강	71
5.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74

V. 정규교육 수혜 희망	76
1. 진학에 대한 태도	76
2.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80
VI. 학생청소년의 생활	83
1. 학교 입학	83
2. 학교 생활의 적응	86
3. 놀림과 따돌림	107
VII. 근로청소년의 생활	117
1.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117
2. 취업실태	118
3. 직종과 노동조건	120
4. 고충	122
VIII.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장 대책	124
1. 아동의 양육권 보장	124
2.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125
3.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1. 조사 결과: 외국인 아동 조사	136
부록 1-2. 조사 결과: 외국인 부모 조사	180
부록 1-3. 조사 결과: 한국인 친구 조사	205
부록 2-1. 질문지: 외국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230
부록 2-2. 질문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에 대한 부모 조사연구	244
부록 2-3. 질문지: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 조사연구	254
부록 2-4. 조사표: 외국인 아동 인권실태 심층면접 조사표	263

표 차 례

<표 1-1>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2003년 5월 31일	6
<표 1-2>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한 심층면접 항목	8
<표 1-3> 조사대상 1: 학령기 외국인노동자 아동	11
<표 1-4> 조사대상 2: 국내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	11
<표 1-5> 조사대상 3: 외국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11
<표 1-6> 조사대상 4: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	12
<표 2-1> 인권의 세 가지 영역	15
<표 2-2>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영역	16
<표 2-3>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영역	34
<표 3-1> 부모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51
<표 3-2> 외국인 아동의 모국 문화 학습	53
<표 3-3>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경험	55
<표 3-4>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경험	55
<표 3-5> 자녀를 모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	56
<표 4-1> 방과후 같이 지내는 사람	62
<표 4-2> 부모에 대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64
<표 4-3> 부모에 대한 만족도	66
<표 4-4>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70
<표 4-5> 아동의 예방 접종 시기 준수 여부	71
<표 4-6> 아동이 아플 때 병·의원 이용의 용이성 여부	72
<표 4-7>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	72
<표 4-8> 자녀가 아픈 경우 주로 찾는 곳	72

<표 4-9>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 유무	74
<표 4-10>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한국인(복수 응답)	75
<표 5-1> 아동이 희망하는 교육수준	77
<표 5-2>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희망하는 교육수준	77
<표 5-3> 아동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	79
<표 5-4>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교육수준	79
<표 5-5>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80
<표 5-6>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국내 교육수준	81
<표 6-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85
<표 6-2> 아동의 학교생활 평가	87
<표 6-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걱정 사항	88
<표 6-4> 학생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	88
<표 6-5>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 실력	89
<표 6-6>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복수 응답)	91
<표 6-7> 외국인 아동이 공부할 때 도움 받는 대상(복수 응답)	93
<표 6-8> 아동이 숙제 할 때 도움 받는 사람	93
<표 6-9>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	96
<표 6-10>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점(복수응답)	96
<표 6-11> 학교에서 학급임원을 맡은 경험(복수 응답)	98
<표 6-12> 외국인 아동의 한국내 평균 친구 수	99
<표 6-13> 교사에 대한 만족도	103
<표 6-14> 교사에 대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103
<표 6-15>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	104
<표 6-16>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104
<표 6-17> 교사가 한국인 학생들과 달리 대한 경험	105

<표 6-18> 교사가 외국인 아동을 차별한 이유	105
<표 6-1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108
<표 6-20>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108
<표 6-21>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한 피해	108
<표 6-22>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경험	113
<표 6-23> 피해를 상담한 사람(복수 응답)	114
<표 6-24> 가장 도움이 된 상담자	114
<표 6-25> 상담의 도움 정도	115
<표 6-26>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115
<표 7-1> 현재 직업과 구직 희망 여부	118
<표 7-2> 현재 하는 일	119

요 약 문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설동훈 · 한건수 · 이란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생활할 수가 있으나,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체류자격이 불법인 미등록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그 가족 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가족의 아동은 거의 전원이 ‘불법체류자’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도 적지 않다. 중국·몽골·필리핀·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여성(또는 남성)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남성(또는 여성)과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제결혼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가지나, 외모나 피부색 등에서 한국인 아동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대한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인권 실태 조사의 항목으로 삼는다. 그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 **연구방법:**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survey research)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및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조사’대상자는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 한국인 친구이다. ‘심층면접’은 아동과 부모 및 친구들뿐 아니라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의 담임 교사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실제 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한 기간은 2003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조사지역은 서울·경기·부산·경남 지방이고, 표본조사의 응답자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98명, 부모 128명, 한국인 친구 620명이다. 심층면접·참여관찰조사에 응해준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수는 35개(36명 심층면접)다.

1.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법률적 검토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의 체류자격인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업(E-9)은 가족의 동반이 사실상 금지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지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이지만, 그가 법을 위반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그의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 중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의 이러한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재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질상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보장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이러한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년 전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등 이미 인준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초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년 11월 20일 비준, 1991년 12월 20일 발효)과,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003년 4월 1일 발효)이 그 대상이다. 국내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은 ‘실정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비록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았지만 발효된 국제협약의 내용은 ‘도덕권’과 관련지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즉, 인권이란 법률이나 국제 조약 혹은 도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규범을 준거로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영역을 규정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은 한편으로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 인권’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인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는 ① 신체적 자

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② 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⑥ 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여섯 개로 분류할 수 있다.

2. 국내 유입과 정착 및 귀국

부모가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려고 할 때 자녀들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 물론 장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 전적으로 자녀들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님 중 한 분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본국에 남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아동들이 많다.

아동들은 개별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동반 여권을 사용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관광이나 다른 상용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이다.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경우 본국에 직접 가서 자녀를 데려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자녀를 입국시킨다. 브로커는 아동의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부모에게 인계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브로커는 의뢰 아동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동반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

권을 통해 위장입국 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려면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부모 중 한 명이 귀국해서 다시 자녀를 동반해서 입국하는 경우와 떨어져 있던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입국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나 나중에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의 경우 모두 비슷한 정착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지만, 부모와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장 근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관광이나 쇼핑을 마친 후, 자신들끼리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재회한 후 짧은 여행이나 서울의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구입한 후, 부모는 다시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모국 친구들이나, 일요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몇 달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본 아동도 있다

아동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후 한국학교에 입학하려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아동을 돌보느라 부인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절차와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와 범칙금 및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아이의 양육을 위탁한다. 한국에 와서 결혼한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각자 자신들이 입국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갚아야 하거나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을 본국으로 보내기도 한다.

3.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등교한다. 아동들은 부모님과 별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자녀와 쉽게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때로 어린 동생을 돌보기도 한다. 부모가 일찍 출근한 경우 취학아동들은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동생이 있는 경우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 몇몇 아이는 부모 몰래 등교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방과후 취학아동들의 생활은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다. 사교육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한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나 주위에 모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주로 함께 어울린다.

아동들은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저녁시간이면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로 TV를 보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부모가 저녁시간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부모의 퇴근이 늦을 경우 자신들이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다.

아동들은 주말과 휴일에 부모와 함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한다. 어떤 아동은 부모가 외출한 뒤 집에 혼자 남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인 아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부모-자녀관계:**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가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만의 대부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데서 비롯된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잠든 시간어야

퇴근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문제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만 하느라 한국어나 한국 생활에 대해 자녀들에 비해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 **친구관계:**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형제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여가 시간을 형제자매와 보내게 되고 부모 또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 **이웃관계:**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거나 친한 편이다. 부모님은 일자리 정보나 고국 소식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 중 대다수는 아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편이다. 아동들은 주로 거주지 근처의 가게주인, 교회 등의 한국인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
- **의료와 건강:** 아동들은 불법체류 상황인 부모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부모님과 같이 의료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협력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방주사를 제 때에 접종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 외국인 가족은 53.6%가 제때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81.8%가 제때에

맞추었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아플 경우 외국인 가족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70.0%)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친구’(14.6%), 학교 선생님(9.8%), 버스·택시 운전자(7.3%),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의 경우, 학교 친구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도 학교 친구라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각각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한국인들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이 많은 것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의 경험 때문이다.

- **진학 희망:**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에 대한 희망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4년제 대학교’(60.2%), ‘대학원 박사과정’(16.1%), ‘중학교 이하’(9.7%), ‘고등학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학한 청소년의 경우도 같은 순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인 아동에 비해, ‘중학교 이하’ 내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다소 낮지만,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외국인 아동들의 진학 희망이 양극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원 수업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인 노동자중에 몽골학교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킨 후, 방과후에 학원을 보낸다.

4. 학생청소년

2003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까지 했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중 '취학연령대 아동' 1천여 명 중 205명만 취학하고 있을 뿐이다. 취학연령대 불법체류자 아동 중 약 80%는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말을 잘 못해서'가 31.6%,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가 21.1%였다.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들에게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많은 교육청 단위로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예비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생활 적응:**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장애아를 위해 개설한 특수반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 학급에서 특별한 지도 없이 일반 학생들의 교과를 따라가야 한다. 입국 초기 아동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고 학습능력도 향상되지만 한국 친구들에 비하여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학습을 못 따라 가는 것뿐인데 학생의 학습 능력 전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아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 **교우관계:** 많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한국 학교에 가게 되면 학년을 낮추어 들어간다. 실제 나이보다 2~3학년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실질적 연령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우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거나, 어린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와 외국인 노동자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귄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학급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몇몇 아동들은 한국 친구들이 자신들이 돈을 쓰면 같이 놀아주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땅한 친구가 없는 아동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한국친구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 **교사와의 관계:** 담임교사들 중 상당수는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외국인 청소년의 88.6%, 한국인 청소년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 15.0%, '공부만 강요한다' 10.0%, '자주 때린다' 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공부만 강요한다'가 11.5%, 중학교의 경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 **놀림과 따돌림:** 외국인 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놀림의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인과 인종적 특성이 다른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많은 경우 신체적 차이 특히 피부색과 관련해서 놀림을 받았다. 검은 피부를 가진 동남아 출신 아동은 피부색 때문에 '깜둥이'

나 ‘아프리카’라고 놀림 받거나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놀림 받은 경험이 많다. 학교에서 외국인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의 비율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33.3%)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 아이들이 외국인 아동을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롭히고 따돌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한국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문화교육, 문화간 이해교육이 절실하다.

5. 근로청소년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경우와 부모와 재결합한 후, 학업을 계속하려 했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들이 차선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첫째,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5세가 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한국에 노동이주를 한 경우, 15세가 된 자녀들을 노동이주 시키는 경우는 방글라데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추가 입국시킨 경우, 한국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학교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때 청소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

● **취업실태:** 근로 청소년들은 정식 취업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직장을 구했을 때는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하지만 직장을 쉬게 되면 친구들 소개로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구할 수 없을 듯해서 체격이 큰 청소년은 나이를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자는 고용주는 거의 없다.

- **전업 취업자:** 노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정착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 외국인노동자처럼 동료들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도 취업하기를 원하고 청소년들도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 **파트타임 취업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전단 돌리기, 스티커 붙이기, 주유소 주유원과 같은 일들을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해 낮다. 또한 정규직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 공간과 식비를 보조받는데 비해 이들은 시간이나 작업량에 따라 계약된 임금 외에는 수입이 없다.
- **고충:** 어린 자녀보다는 12살 이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다. 다른 한편으로, 15세 이상의 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성인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6.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호대책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 지 못한 채, 부모의 나라로 보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또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인 아동들로부터 차별당 하고 따돌림당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 **아동의 양육권 보장:**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 면 외국인등록 절차와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와 범칙금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한다. 이러 한 상황은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 마 련이 시급하다.

●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 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 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 습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 본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 리협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아

동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 교재와 교수법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재 중에서 우수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한국 학교에 가서 따돌림당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녹아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분위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든 상황이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기술직 종사자는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생활할 수가 있으나,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체류자격이 불법인 미등록노동자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닌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취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동반하여 입국하여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으며, 그 가족 성원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가족의 아동은 거의 전원이 '불법체류자'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가족에서 태어난 아동도 적지 않다. 중국·몽골·필리핀·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 출신의 여성(또는 남성)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인 남성(또는 여성)과 결혼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제결혼가족에서 태어난 아동은 그 부모의 희망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가지나, 외모나 피부색 등에서 한국인 아동과 구분되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 언론을 통해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연구의 공백을 메워준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 연구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는 국제규범에 나타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규범에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결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ILO ‘이주노동자 보충협약·권고’(1975)가 처음이다. 이 협약에서 회원국은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이 협약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외국인권리선언’과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제44조)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설동훈과 그 동료들(Seol, Skrentny, and Lee, 2002)은 국제인권규범이 외국인력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은 인종 피부 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사회적 출신 등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2001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설동훈 2001b).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는 2003년 1월 “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후,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고 밝힌 후, “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라.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기준을 고려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나. 결혼가족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생활에 대한 분석은 별로 많지 않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들의 가족과 자녀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결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설동훈(2000b)이 2000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끼리 결혼한 부부'가 838쌍이고,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부부'가 119쌍,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부부'가 102쌍이었다. 또한, 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은 1998년 경제 위기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대처 방식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것은 그들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급증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성과는 적지 않다(성지혜 1996; 전수현 2002; 조성원 2000; 홍기혜 2000; 설동훈 2001b). 설동훈(2001b)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취업 조건이 2000년에 크게 개선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0년 법무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게 대하여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동등하게 적정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또 과거에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 남성도 한국 여성과의 혼인 관계가 입증되면 '입국규제 대상'에서 해제하여, 다른 특별한 규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국에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90일마다 출입국을 반복할 필요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태 연구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에 체류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부부의 경우 그들이 일하러 간 사

이에 자녀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상태는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12세의 외국인 아동은 10,103명, 그 중 국내 학교에 취학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478명 정도로 추정되었다(설동훈 2001b).

2000년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취학할 연령대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자녀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정금자 2000).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19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학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등록노동자는 ‘거류신고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미등록노동자의 자녀라 할 지라도 입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0년까지 미등록노동자의 자녀가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를 비롯한 몇몇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는 학교장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외국인 미등록노동자 부부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는 1999년 12월에 8명의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대안학교로서 재한몽골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한금섭, 2003). 점점 많은 수의 몽골 어린이들이 학교로 모이게 되었고, 2003년 2월까지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의 수는 170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협약상 아동은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에게도 국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국내법으로도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있다.

<표 1-1>은 2003년 5월말 기준, 국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재학생 수는 205명인데, 경기도 97명, 서울 93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출신국별로는 몽골이 160명이 가장 많고, 중국 14명, 파키스탄 8명, 방글라데시 7명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93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중학교는 12명에 불과하다. 학년별로는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일반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완화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의 배려 여부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심은정 2002; 문화일보 2002).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린 지침을 두고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 내용은 출입국사실 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는 내용이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다는 사실 증명서이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그것을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와 착각하고 있다(PD 리포트 2003). 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는 그들이 합법체류자로서의 내용인 것이다. 그나마 초등학교의 경우 미비하나마 교육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다. 국내 현실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 아이들 또한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¹⁾

<표 1-1>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재학생수, 2003년 5월 31일

(가) 시·도별 현황

시도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1년	2년	3년	계
서울	93	15	22	12	15	10	14	88	3	2	0	5
경기	97	16	22	18	7	17	10	90	4	2	1	7
인천	3	1	0	1	1	0	0	3	0	0	0	0
충북	4	0	1	3	0	0	0	4	0	0	0	0
충남	4	2	1	0	0	1	0	4	0	0	0	0
경남	4	1	0	0	2	0	1	4	0	0	0	0
계	205	35	46	34	25	28	25	193	7	4	1	12

(나) 국적별 현황

국적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	1년	2년	3년	계
몽골	160	22	33	28	20	22	24	149	7	3	1	11
중국	14	3	5	1	2	1	0	12	0	1	0	1
파키스탄	8	1	2	3	0	2	0	8	0	0	0	0
방글라데시	7	4	0	1	1	1	0	7	0	0	0	0
러시아	7	2	3	0	0	2	0	7	0	0	0	0
우즈베키스탄	4	2	1	0	0	0	1	4	0	0	0	0
키르기스스탄	4	0	0	0	2	0	0	2	0	0	0	0
일본	2	1	1	0	0	0	0	2	0	0	0	0
나이지리아	1	0	1	0	0	0	0	1	0	0	0	0
스리랑카	1	0	0	1	0	0	0	1	0	0	0	0
계	205	35	46	34	25	28	25	193	7	4	1	1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3.8.

- 1)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은 공공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입국자, 허위서류에 의한 초청자뿐 아니라 체류기간 초과자도 포함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그 권리 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방침과 이 법률 조항이 충돌하는 데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초등학교 취학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립학교 교장은 공무원이므로 통보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보다 상위법률인 출입국관리법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고등학교는 유학비자가 있어야만 진학이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므로 유학비자까지 발급받아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하기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도 (1) 한국어 실력의 미비로 학습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2) 심각한 따돌림 현상(속칭 “왕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이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계단에서 밀어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가난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욕설에 못 이겨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입장도 아니어서, 아이들은 그저 집안에서 놀게 방치되고 있다.

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연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기존 연구는 전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갖는 기본권의 내용을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에 비추어 정리한 후, 표본조사·심층면접·참여관찰의 방법을 동원하여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로 한다.

3.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는,

<표 1-2>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한 심층면접 항목

관련조항	조항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제7조	출생 직후 성명권, 국적취득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중 불법체류자로서 국내 출산경험자	- 출생 관련 의료문제 - 아동 성명권 및 국적취득 문제 - 관계기관의 처리 및 협조 여부 - 아동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
제10조, 제11조	가족 형성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 출입국 시 관계기관의 대응 - 이와 관련하여 겪었던 어려움 - 아동의 불법해외 이송 사례
제12조	아동의 자기결정권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및 중학생 이상의 외국인노동자 아동	- 부모의 아동의견 존중 및 그 이유 - 이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사항
제17조	대중매체와 아동권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및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 우리나라 대중매체에 대한 의견 - 외국인노동자 및 아동을 다룬 프로그램 청취여부 및 그에 대한 의견
제18조	아동 양육의 책임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및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양육책임은 누가 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의견
제23조	장애아동 관련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조사대상이 있을지 궁금하지만 장애아동이 있는 외국인노동자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할 것임.
제24조	건강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 설문조사보다 자세한 조사 -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 - 부모의 질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제28조	학교 규율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 아동이 느끼는 학교 및 학급의 규율에 대한 조사 - 필요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에 대한 조사
제31조	향유권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아동이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경제적 착취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및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노동 착취 등
제37조	공권력의 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 아동 부모 및 고학년 외국인노동자 아동	- 불법체류자의 아동일 경우 공권력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유형 파악. 특히 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을 것. 다양한 유형 파악에 주력. -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고 파출소, 경찰서 등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수사과정 및 재판 포함)도 조사내용에 포함
기타	한국에 대한 의견	외국인노동자 아동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 및 그 이유, 한국에서 계속 살고자 할 때(합법적 자격일 경우를 전제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한국인 친구들	- 외국인노동자 아동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집으로의 초대 포함) 부모의 태도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모의 태도 -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에 대해 한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대한 국내 법령과 국제법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인권실태 조사의 항목으로 삼는다(표 2-2 참조).

아동 관련 국제인권규범으로는 국제연합의 '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다.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규약)'에 제시된 보편적 인권과 아울러 아동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권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2>는 이 협약을 토대로 작성한 '심층면접 조사표'이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제규범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과, 국제노동기구의 '제19호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과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들을 검토한다. 1990년 제6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간주된다. 질문 문항은 아동 인권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였다(Portes and Rumbaut, 2001; Rumbaut and Portes, 2001 참조).

나. 연구방법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survey research)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및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지와 한 가지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 아동용 질문지: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 조사연구”(Survey of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부록 2-1) — 영어·몽골어·한국어·러시아어.
- 부모용 질문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에 대한 부모 조사연구”(Children of Migrant Workers Study: Parental Questionnaire, 부록 2-2) — 영어·몽골어·한국어·러시아어.
- 한국인 친구용 질문지: “외국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부록 2-3) — 한국어.
- 심층면접용 조사표: “외국인 아동 인권실태 심층면접 조사표”(부록 2-4) — 한국어.

‘조사’대상자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부록 2-1)과 그 부모(부록 2-2), 한국인 친구(부록 2-3)이다. ‘심층면접’은 아동과 부모 및 친구들뿐 아니라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의 담임 교사와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를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부록 2-4). 실제 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한 기간은 2003년 8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두 달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을 연령과 취학 여부를 고려하여 “학령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① 초등학교 재학 아동, ②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③ 중고등학교 재학 아동, ④ 중고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세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학령전 아동의 인권 실태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고, 취학연령대 아동은 본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가족을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가능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유형(“외국인 가족” 유형)과 (2) 부모 중 한 사람은 외국인노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인인 유형(“국제결혼 가족”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를 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1-3>과 <표 1-4>는 조사결과이다(부록 1-1과 1-2 각각 참조). 학령기 아동 98명과 외국인 자녀를 둔 부모 128명이 조사되었다.

<표 1-3> 조사대상 1: 학령기 외국인노동자 아동
(단위: %)

(N)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8)	(42)	(9)	(25)	(22)
몽골	87.8	83.3	88.9	92.0	90.9
파키스탄	3.1	7.1	.0	.0	.0
방글라데시	3.1	2.4	.0	8.0	.0
카자흐스탄	2.0	4.8	.0	.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네팔	1.0	.0	11.1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4> 조사대상 2: 국내에 자녀가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족
(단위: %)

(N)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28)	(78)	(50)
몽골	38.3	60.3	4.0
필리핀	13.3	9.0	20.0
중국	7.8	1.3	18.0
(재중동포)	7.0	1.3	16.0
인도네시아	6.3	7.7	4.0
파키스탄	4.7	3.8	6.0
방글라데시	3.9	5.1	2.0
베트남	3.9	2.6	6.0
러시아	3.9	5.1	2.0
카자흐스탄	1.6	2.6	.0
스리랑카	1.6	1.3	2.0
태국	1.6	.0	4.0
미얀마	.8	.0	2.0
기타 나라	1.6	1.3	2.0
한국	10.9	.0	28.0
계	100.0	100.0	100.0

<표 1-5> 조사대상 3: 외국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단위: %)

(N)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620)	(377)	(243)
남자	52.6	53.8	50.6
여자	47.4	46.2	49.4
계	100.0	100.0	100.0

<표 1-6> 조사대상 4: 심층면접에 응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

이름	국적	나이	성별	아동취학상태	입국연도 (당시나이)	비고
1 오동투	몽골	43	여	딸(10):몽골학교	2000(7)	자녀에 대한 면접
2 니썸바트	몽골	12	남	한국학교	2000(9)	
3 안진	몽골	41	여	아들(12살): 한국학교재학	?	사례2 어머니
3 시주르	몽골	43	여	아들(15):취업했다가 귀국	2000(12)	자녀에 대한 면접
4 토오야	몽골	43	여	딸(14): 한국학교 다니다가 귀국	2002(13)	자녀에 대한 면접
5 아뻬쭈	몽골	13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전학	2002(12)	
6 어르길볼트	몽골	12	남	몽골학교	2000(9)	
7 별리	몽골	10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전학	2001(8)	
8 아마르트	몽골	16	남	몽골학교 다니다가 취업	2001(14)	
9 톱신	몽골	17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취업	1998(12)	
10 도우영	몽골	11	여	한국학교	2000(9)	
11 김민정	몽골	11	여	한국학교	1999(8)	
12 띠기오	몽골	14	여	몽골학교 다니다가 한국학교로 전학	2000(11)	
13 다래	몽골	15	여	한국학교 다니다가 몽골학교로 전학	2001(13)	
14 나란토야	몽골	12	여	상동	?	
15 오랑거	몽골	10	여	상동	2000(7)	
16 박동근	몽골	17	남	한국학교 다니다가 현재 미취학	2001(15)	
17 미야	방글라데시	38	남	딸(2살)	한국출생	
18 나지아	방글라데시	11	여	한국학교	2000(8)	
19 이채련	몽골	11	여	한국학교	1999(7)	
20 빠따	몽골	34	남	아들(11):한국학교	2000(8)	
21 전한배	몽골	11	남	한국학교	?	
22 고수정	몽골	10	여	한국학교	?	
23 사라	파키스탄	8	여	한국학교	한국출생	부모 면접
요셉	(국제결혼)	7	남	한국학교		
24 김대한	스리랑카	3	남	미취학(3살)	한국출생	부모 면접
	(국제결혼)					
25 따와	몽골	17	남	취업	1999 (14)	
26 와리프	방글라데시	18	남	취업	2000 (15)	
27 어용일혼	몽골	15	여	한국학교	2002(14)/	
빌궁	몽골	12	남		2000 (9)	
28 박재경	중국조선족	5	여	미취학(5살/2살)	한국출생	조선족 어머니(35)
박효민	(국제결혼)	2	여			면접
29 따시까	몽골	13	남	한국학교	2001(11)	
30 버기	몽골	17	남	한국학교	2001(14)	
31 어유나	몽골	15	여	한국학교	2000(12)	
32 박철오	몽골	18	남	몽골학교/한국학교 전학준비중	2001(15)	
33 정선희	몽골	17	여	한국학교	2000(14)	
34 정문희	몽골	15	여	한국학교	2000(12)	
35 김보람	몽골	12	남	한국학교	2000(9)	
36 오몽크	몽골	10	남	한국학교	2001(8)	

주: 인적사항에 기록된 이름은 면접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다.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부모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가족의 명단을 작성하였고,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삼았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서울),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코시안의 집(경기 안산),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경기 부천), 의정부 외국인근로자 선교 센터(경기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부산),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경남 창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경기·부산·경남 지방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협조를 받은 것은 <표 1-1>에 제시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거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취학 중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각 지역에 파견된 조사원이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받은 후, 교실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5>는 표본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초등학교 377명, 중학생 243명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부록 1-3 참조).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를 수행하면서 전형성(typicalness)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35가족(심층면접자는 3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표 1-6>에는 심층면접·참여관찰 조사대상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참여관찰을 통해서만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1~2). 첫째, 인권 문제란 “한 사람의 문제는 곧 전체의 문제다”라는 관점, 즉 “한 건의 인권 침해 사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zero tolerance)을 견지하는 것이 관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에서 특정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말해,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희소하여 표본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 사항은 조사 결과의 해석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준거점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인권침해 사례 0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 아동의 인권 수준’을 비교의 준거로 삼는 것이다. 특히 절대 0을 상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는 몇몇 항목에서는 ‘한국인 아동과 비교할 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즉, 차별 정도)를 아울러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의 ‘자기보고(self-reporting)식 인권 침해 집계’ 방식이 갖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장 또는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혹은 정확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하였지만, 그 가능성마저 없앨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사연구나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II.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권리

1. 인권, 아동 인권, 외국인 아동 인권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크게 자유권·평등권·사회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권 중 자유권은 사인(私人)간의 자유권과 공권력에 의해 자유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분석적으로 구분한다. 인권 중 평등권은 국적·인종·성별·종교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 중 사회권은 ‘국민(또는 公民) 자격(citizenship)을 갖추어야 보장 받는 권리’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2).

<표 2-1> 인권의 세 가지 영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생명권, 고문의 금지, 노예제도의 금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청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병력 등에 의해 고용, 채용,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족·임산부·어린이 보호, 의식주 생활을 누릴 권리,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문화·과학·예술 활동의 권리 등

<표 2-2>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영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 생존권, 학대나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극형금지 ○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외부의 위협이나 간섭·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복지와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 사회적·문화적 권리: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누릴 권리,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하며, 문화예술생활에 참여할 권리
○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 최대한도로 생존과 발달 보장, 건강과 영양상태 유지 및 질병치료의 우선적 배려,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상해·학대·방임 등으로부터 보호, 신체적·정신적 양육에 장애를 가져올 물질로부터 보호,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 유괴나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부모와 사회 및 국가로부터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 초등교육의 의무적 무상 제공, 중등교육의 발전 장려, 고등교육의 기회 개방,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부합되는 학교 규율 ○ 노동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최저고용연령, 고용시간

아동은 어른과 다른 없는 ‘인간’이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과 아울러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김중섭, 2002: 18~19). 즉, 아동은 ‘성장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아동은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갖지만, 투표권을 갖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술 담배를 할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고 활동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즉, 아동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의 보편성이 훼손된다. 아동이기 때문에 제약당하는 권리는 보통 아동 자신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미성년이라는 특성은 권리의 제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양육’ 및 ‘교육’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다. 즉,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정신적·신체적인 불완전으로 인해 일부 권리의 제약과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은 아동을 기본적인 인권 및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보호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는 아동 인권의 세 영역, 즉 자유권·평등권·사회권을 보편적 권리와 특별한 권리로 세분하여 보여준다. 표의 위쪽은 보편적 권리고, 아래쪽은 특별한 권리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내국인 아동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그 권리의 제약이 심하다. 특히, 사회권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편, 아동의 권리도 보편적 인권과 마찬가지로 ‘실정권’(實定權, positive rights)과 ‘도덕권’(道德權, moral rights)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정래, 2002: 32~33). 전자는 실정법에 특정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실정권은 관계법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를 지칭하는데, 한국 정부가 채택·서명·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실행력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대우(동등 대우의 원칙)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들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실정권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등 국내 아동관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들도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부여된 실정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자유권’과 ‘생존권’이 실정권에 해당된다.

한편, 도덕권은 비록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정권’에 앞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도덕권을 최고의 실정법인 헌법이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아동이라도 국민과 차별 대우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도덕권의 향유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복지권’이 도덕권에 해당된다. 예컨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실정법이 보장하건 않건 간에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권이다. 즉, 인간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도덕권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실정법에 의하여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받을 권리’는 형태상 실정권이다. 그러나 원리상 ‘교육받을 권리’는 도덕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국내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은 ‘실정권’으로 간주된다. 또한 비록 한국정부가 비준하지 않았지만 발효된 국제협약의 내용은 ‘도덕권’과 관련지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즉, 인권이란 법률이나 국제 조약 혹은 도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 규범을 준거로 국내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실태를 조명하려고 한다.

2. 국내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 인권’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에 의하여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 중의 일부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법제연구원, 1994: 20~21).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권리가 현실에 적용될 경우 내국인과는 달리 상당한 제한이 있다.

첫째, 외국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된다.

둘째, 대부분의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다만, 자유권 가운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등은 국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평등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장된다.

넷째, 외국인도 경제적 기본권을 가지기는 하나,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를 비롯하여 토지소유권·광업권 등 각종 재산권에 관해서도 현행법제도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다양한 제한을 받고 있다.

다섯째, 청구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일정한 기본권의 보장과 결부된 청구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들도 있다.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다수’ 및 ‘입국의 자유’ 등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법제연구원, 1994: 19~20).

첫째, 외국인이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

표결권 그리고 기타 정치적 활동권 등 '참정권'을 향유할 수 없는 근거는 단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구한다. 국민주권 원리가 당해 국민의 의사결정에 의거한 국가통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으로써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상의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셋째,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자를 입국시키는가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제관습법상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국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며 각국은 그 영토주권에 의거하여 자유로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며, 난민조약에 의하면 조약가입국은 난민이라고 인정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는 등 입국에 관한 국가의 재량권은 오늘날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체류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그러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신규입국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그러나 일단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법률인데, 외국인은 그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은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그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교수(E-1), 회화(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중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면, 그는 ‘자격외취업자’로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2003년 8월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생산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75%가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초과자, 자격외취업자 혹은 밀입국자로 구성된다.

합법 취업 생산기능직 종사자의 체류자격인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업(E-9)은 가족의 동반이 사실상 금지되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는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므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지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이지만, 그가 법을 위반한 주체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그의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및 사회권 중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헌법상의 이러한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재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은 외국인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질상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보장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도 당연히 이러한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수년 전이다.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한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69~79).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등 이미 인준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초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장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관할구청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국제법과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비준을 얻은 국제 조약(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990년 4월 10일 비준, 1990년 7월 10일 발효)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990년 4월 10일 비준, 1990년 7월 10일 발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1978년 12월 5일 비준, 1979년 1월 4일 발효) 등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년 11월 20일 비준, 1991년 12월 20일 발효) 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았으나 발효된 국제법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제69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003년 4월 1일 발효)은 국회가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각각의 주요 항목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가장 발전적으로, 실행력 있게, 종합적으로 천명한 권리 문서이다. 이 협약은 전문과 3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1991년 12월 20일 실행'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차별금

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4대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제1조에서 아동의 연령적 범주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최대한 포함하자는 국제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제약하는 기준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은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무엇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어른들에 의해서, 곧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나 지식에 근거해서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공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자유권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와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아동의 특별한 권리로서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은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아동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중되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권리인 생존권(제6조)과 아울러 학대나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를 갖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아동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사형이나 종신형 같은 처벌을 피하고,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둘째, 아동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권리(제12조)를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유(제13조)를 가진다.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제15조)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권의 보장은 행동과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와 병행되어야 한다. 즉, 아동은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받으며, 외부의 위협이나 간섭·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6조)를 가진다. 또한 아동에게 자신의 복지와 건강 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제17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은 양육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아야 한다(제6조). 또한 아동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충분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한 위생환경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리고 살며 질병 치료와 회복에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을 권리(제24조)를 갖고 있다.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7조)를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상해·학대·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같이 신체적·정신적 양육에 장애를 가져올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제33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제34조), 유괴나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35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부모와 사회 및 정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제7조)를 가지고, 부모나 후견인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제5조, 제18조)가 있다.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환경을 잃어버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제20조)가 있다. 국가는 아동의 보호와 발달을 위해 부모나 후견인을 도와야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시설 등을 개발하며(제18조), 난민이나 장애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책임(제22조, 제23조)을 갖고 있다.

2) 평등권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규약)’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은 특별한 권리로 제2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인권과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3) 사회권

‘아동권리협약’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사회적·문화적 권리’, 아동의 특별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은 고유한 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갖고 있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할 권리(제7조)를 가지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제8조)를 갖는다. 또 인종·언어·종교적 소수집단에 소속된 아동은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누릴 권리(제30조)를 가지고, 휴식과 여가를 즐

기고,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하며, 문화예술생활에 참여할 권리(제31조)를 갖는다.

둘째,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아동의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평화·관용·평등·우정 등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는 것”(제29조)이다. 아동은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제28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 규율도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부합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은 노동과 관련되어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교육에 방해되거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일”(제32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¹⁾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호의 강도도 높다. 그 중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균등대우의 원칙

이 협약의 제2부에서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 내에 있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복종해야 할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에 대하여, 성·인종·피부색·언어·종교 또는 신조·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이나 종족이나 사회의

1) 이 절은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3: 27~42)를 요약한 것이다.

출신·국적·연령·경제적 지위·재산·혼인상의 지위·출생 기타의 지위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이 협약 가운데 정해진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다.

2) 불법체류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보호규정은 이 협약의 중요한 특색이다. 원래 제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므로,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 의미가 있는 규정들이다. 제3부의 내용은 대체로 세계인권선언, UN인권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부각되어 왔다. 그것은 출입국관계법(immigration laws)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것, 노동자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의 귀결은, 이들 사정은 각각의 법률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며,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가) 출국의 자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에도 출국하는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제8조 제1항). 다만, 법에 의해 정해지고 국가의 안전, 공공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 협약 제3부에서 인정된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제한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이 규정은 국제인권규약(B) 규정과 같은 취지이다.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본국)을 포함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그 국가로의 입국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으므로(제79조 참조),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고용국이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생명권(제9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제10조), 노예·강제노동

의 금지(제11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생활·명예 및 신용의 보호(제14조) 등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어온 권리들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제인권협약들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 권리들은 불법체류 여부를 묻지 않고 보장된다.

다) 신체의 자유 등(제16조, 제17조 참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제16조 제1항),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다(제16조 제4항). 체포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될 때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체포의 이유가 고지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에 대한 피의 사실이 신속하게 고지되어야 한다(제16조 제5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도 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체포나 구금의 이유를 본국이나 그 외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제16조 제7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구금 또는 복역의 기간 동안 국민과 같이 그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제17조 제5항).

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8조, 제1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 앞에 관계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형사상 범죄의 확정 또는 민사상 권리 및 의무의 확정을 위해, 법률로 설치되고 전문적이며 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8조 제1항).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 형벌불소급의 원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 등도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고용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국어로 그 범죄와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의 통역원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참조).

마) 증명서, 여권의 보호(제21조): 법률에 기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에 의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분증명서, 또는 국가의 영역으로의 입국이나 체류, 거주를 인정하는 증명서 또는 노동허가서를 압수·훼손하는 것은 누구

에 의한 것이든 위법이다.

바) 강제퇴거(expulsion, 제2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제2항). 또한 추방의 결정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결정의 이유와 함께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다(제3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강제퇴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최종결정이 사법기관에 의해 선고되거나 국가안전상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사안의 재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재심사중에는 국외퇴거결정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제4항). 본국의 외교적 보호(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어느 때라도 본국 또는 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영사 또는 외교관의 보호와 원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할 때에는 관련 개인에게 지체 없이 이 권리가 고지되어야 하며, 추방국의 기관은 이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와 긴급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적용 가능한 그 국가의 법률 및 2국간 또는 다국간 조약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고용국에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향유한다(제27조 제1항). 적용된 법률에 의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급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는 그 급부에 대해 동일한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취급을 기초로, 불입한 각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제27조 제2항).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그 생명유지 또는 회복이 어려운 건강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모든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긴급 의료는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어떠한 비적법상태를 이유로 거부되지 않는다(제28조).

아) 자녀의 권리(제29, 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의 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의 모든 자녀는 당사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공립의 취학전 교육시설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부모의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비적법상태 또는 자녀 체류의 비적법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 제29조(자녀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0조(자녀교육)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자녀가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에 취학할 것을 원할 때,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체류 내지 취업이 비합법이거나 취업국에서 그 자녀의 체류가 비합법임을 이유로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자) 문화적 독자성의 존중(제31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cultural identity)의 존중을 보장하고, 그 본국과의 문화적 결합의 유지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원조 또는 권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26조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기타 단체의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결성권은 여기에서는 명시되고 있지 않으며, 결성권은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40조는 적법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된 제4부에 속하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는 보면 합법체류자만이 노동조합결성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카) 사전고지를 받을 권리: 이상적으로 본다면, 이주노동자는 일하려고 하는 국가의 언어에 대해 기초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며, 문화, 법, 사회 그리고 정치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과 일반적 생활조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협약 제33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본국, 고용국 또는 통과국 중 관계된 국가로부터 이주노동자권

리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권리, 입국의 조건, 관계국의 법률과 관행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 기타의 사항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청구할 때에는, 적절한 정보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37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전 또는 늦어도 고용국에 입국하는 때에 본국 또는 고용국으로부터, 그 입국에 적용되는 요건 및 특히 체류와 함께 종사하는 보수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 및 고용국에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 그리고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지될 권리를 가진다.

타) 그밖에도 제25조(근로조건에 대한 균등대우) 등의 규정이 있다.

3) 합법체류 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아래에서 열거되고 있는 권리들은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고용국(취업국)이 체류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주거선택이나 가족결합,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일시 출국의 권리(제38조): 고용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 및 노동의 허가에 영향을 받는 것 없이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사정에 따라서 모든 노력을 한다. 이때 고용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본국에서의 특별한 필요와 의무를 고려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같은 일시적 출국이 허가되는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될 권리를 가진다.

나) 이동, 주거선택의 자유(제3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고용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주거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다) 결사에 대한 권리(제40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의 보호 및 촉진을 위하여 단체 및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라)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제41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 제44조(가족의 재결합) 1. 당사국은 가족이 사회의 자연적·기초적 단위이고, 사회 및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합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배우자, 법률의 적용상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부양을 요하는 미성년 독신 자녀와의 동거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권한 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취업국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기타 가족에 대하여도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인정하도록 호의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제45조(가족의 권리)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다음의 각호에 정한 사항의 이용과 참가에서 취업국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 (a) 교육시설 및 교육 서비스. 그 시설과 및 서비스의 취학 요건 및 기타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 (b)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기관과 서비스의 이용. 단, 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c) 사회 및 보건 서비스. 단, 각 제도의 참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d) 문화활동사업
-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자국내 학교제도, 특히 자국 언어의 교육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자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
-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위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에 관하여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협력하여야 한다.
-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하여 특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마) 가족의 결합(제44조):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그 배우자 또는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혼인과 동등의 효과를 가진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로 미혼의 피부양자인 그 자녀와 재결합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동시에

그 권한의 범위내인 조치를 취한다(제2항). 이주노동자가 가족의 재결합을 하는 것은 고용국으로의 입국과 체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까닭에, 이를 합법체류 노동자에 한정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바) 직업선택의 자유(제52조)

4.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주요 영역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영역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각각의 내용과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2-3>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의 세 가지 영역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 신체적 자유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국적 취득의 권리
○ 표현의 자유		○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정보 접근의 권리		
○ 양육받을 권리	○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교육받을 권리
○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 신체적 자유권

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에서 아동의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박탈의 경우에도 그 기간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아동일 경우, 강제출국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 관련해서 이 조항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 표현의 자유권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의사표현뿐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3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 국적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아동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아동의 이러한 견해가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되고 존중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아동 및 청소년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무시 등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본인의 인권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의사표현이나 자기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언어상의 곤란, 인종적 차별 및 따돌림 등 여건상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다. 정보 접근권

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이라는 것이 아동에게는 유익해야 함

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및 그 아동을 다룬 프로그램의 교육적 역할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언어상의 곤란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라. 양육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의 제18조, 제23조, 제24조는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1조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부모가 경제적 여건상 모두 취업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양육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모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상황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계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아동 인권침해인 것이다. 또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받게 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리라고 본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의료문제와 관련해서 이 조항에 대한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불법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의료 혜택을 자유로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경우에도 질병

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관련해서 장애 및 기타 질병이 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8조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아동복지법’ 제9조 1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가족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마. 가족 재결합의 권리

먼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협약인 1949년의 제97호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약칭 이주노동자 협약)에는 이주노동자 가족의 결함권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해 만들어진 제86호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약칭 이주노동자권고)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제86호 권고의 제16조 제2항은 “이주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들 제한을 가능한 한 그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위 일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

국제노동기구 제86호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

- 제16조 1. 한 지역에 거주하도록 허가받은 이주노동자와 이주에 동행하였거나 후에 합류하도록 허가받은 가족은 가능한 한 그 국가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되어야 한다.
- 2. 이주고용이 제한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들 제한을 가능한 한
 - (a) 그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위 일정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b) 이주노동자 자신은 물론 이주에 동반하거나 후에 합류를 허락받은 처와 노동연령에 달한 자녀에게도 이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있다. 즉, 외국인노동자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의 결합과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권고가 이주노동자 협약과 같은 해에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1975년의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1975: 이주노동자보충협약)은 권리의 주체를 이전까지 이주노동자에 한정하던 것에서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회원국은 이주노동자의 결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제13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며(제1항), 적용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제2항).²⁾

— 국제노동기구 제143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 —

- 제13조 1.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 2. 협약이 적용되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모이다.
- 제12조 각 회원국은 국내조건 및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f)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이 자신의 국적과 민족 및 고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보존하려는 노력과 그 자녀가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원조 및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합법적 거주 2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1949년에 나온 제86호 권고가 5년을 상한으로 ‘가족 결합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든 합법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제13조)과 “이주노동자가 2년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제143호 협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설동훈 · 최홍엽 · 한건수, 2002: 50).

국제연합의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44조 2항에서도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결합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제143호 이주노동자보충협약과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모든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Aleinikoff, 2002: 39~41 참조), 한국 정부는 이 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게는 이동과 거주 및 출입국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항목으로서,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부모와의 결합을 위한 출입국 허가 신청시에 해당기관은 부모와 아동이 불법체류자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출산한 자녀를 모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가 이산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과 한국에 입국한지 몇 년 동안 모국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은 이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기적인 가족의 재결합의 권리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 제36조는 아동의 약취, 유괴, 유인, 매매, 거래금지 및 여러 형태의 착취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도덕적, 정신적, 지적, 신체적 측면을 비롯한 어떠한 측면에라도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제8조, 제9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은 어떠한 유해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의 유기, 매매, 상업적 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은 국제적 합의수준이 매우 높다. 출신국과 부모의 체류 자격에 의하여 아동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보장하고 있다.

아. 국적 취득의 권리

인권으로서의 국적 취득이 요구된다는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4조 3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아동의 성명과 국적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29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성명 및 국적취득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무국적으로 인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있으며 아동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짐으로써 의료혜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권리(복지 및 교육)를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휴식, 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권리의 존중만이 아니라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제적인 격차나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아동의 여가 활용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발전에 있어서 문화생활과 예술에 대한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아동 중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나,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여가를 즐기거나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 상대적인 소외감을 겪게 될 것이다.

차. 교육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초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은 국적에 대한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우선 교육받을 권리자체가 박탈당하기 쉽다. 불법체류자 가족이라는 이유에서 학교에 진학하는 것부터 쉽지 않으며, 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언어상의 문제나 학급 교우들과의 문제, 또는 학교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진학을 포기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30조와 제45조,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제3조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그 가족이 평등의 원칙 하에 교육받을 권리와 언어와 기술습득 등의 교육과정과 좋은 교육시설의 접근의 기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카. 노동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노동 착취 방지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교육권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용 연령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인노동자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많은 나라에서 아동이 자기 생계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적절한 노동이 아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아동의 '노동권'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유해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면 아동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노동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노동의 규제 속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장소나 업종이 유해한 환경의 업소일 경우 외국인노동자 아동 및 청소년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유해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Ⅲ. 국내 유입과 정착 및 귀국

1. 입국 경로

가. 한국행 결정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부모의 국제노동력이동에 따라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부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한 후 자녀들을 입국시키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자녀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가장 많은 이유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이지만, 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나이가 된 자녀들은 비록 한국에서는 미성년이지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입국시키기도 한다. 때로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 입국시켰다는 노동자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있고, 몇몇 경우는 자녀가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입국시켰다고 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데려오려고 할 때 자녀들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 물론 장기간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것이 전적으로 자녀들의 의사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 모두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님 중 한 분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본국에 남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했다는 아동들이 많다.

1998년 아버지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 후, 방글라데시에서 어머니와 남동생 두 명과 함께 살았다. 15살 때 '고등학교'를¹⁾ 졸업한 ○○○는 한국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두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방글라데시에서 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2000년 8월 공항에서 가족들과 올면서 헤어졌고, 홍콩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사례 #26).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보다 쉽게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몇 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아동들은 비교적 쉽게 결정한다.

2001년 14세에 몽골에서 입국한 ○○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었으나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는 한국이 궁금해서 오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사례 #30).

부모나 가족의 필요에 의해 자녀를 입국시킨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돌보거나 몸이 아픈 부모를 돕기 위한 경우도 있다. 11세에 몽골에서 입국한 여자아이(사례 #12)는 1년 동안 심장이 약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어머니들 간호했으며,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집안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위해 입국시킨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실제 방과 후 사교육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었다.

우리 아들을 계속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을 다시 몽골로 보냈는데, 내 마음으로는 진짜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영어(학원),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사례 #3, 몽골, 43세, 여성, 15살 아들을 입국시켰다가 학업을 계속 못시켜서 다시 몽골로 돌려보냄).

1) 방글라데시에서는 5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5년을 공부한 후, '중고등' 교육을 5년간 받는다. 15살이면 전문대학(직업훈련)이나 대학(college or university)에 진학한다.

반대로 본국에서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소년기인 자녀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응하기 어렵고, 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초등학교 이하인 자녀만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청소년인 자녀는 본국에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오빠는 몽골에 남았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오빠는 (한국에 와서) 한국학교에 들어가려 했는데요, 그럼 공부가 잘 안되잖아요. …… 학년도 안 맞고. 그래서 몽골에서 안 왔어요(사례 #14).

또한 몸이 아픈 자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국시킨 경우도 있는데, 12세에 입국한 몽골 여자아이(사례 #13)는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서 어머니가 치료해 주기 위해 입국시켰다고 한다.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본국에 남겨진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한국으로 입국시킨 경우도 있다.

부모님은 1996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2년 전(2001년)에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왔어요. 동생 둘(4살 된 여동생과 3개월 된 여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오라고 했어요. 돈만 있으면 몽골로 가고 싶어요. 몽골학교에서 잘려서 한국에 왔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서 그렇다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사례 #16, 몽골, 17세, 남, 15세 입국).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한국으로 올 때 한국의 언어, 문화, 자연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은 없었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오기도 한다. “한국에 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아이(사례 #10)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벌레가 많아서” 또는 “바퀴벌레가 너무나 커서 놀라”기도 하고 학교 급식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을 “먹지 못해” 고생하기도 한다.

부모님이나 가족과 재결합한다는 기쁨에 한국에 온 아동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뭐든지 다할 줄 알았지만,” 낯선 한국에 적응하면서 부모님들의 열악한 직업과 주거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여권과 비자의 종류

아동들은 개별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동반 여권을 사용한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관광이나 다른 상용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이다. 국가에 따라 아동들에게 여권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브로커를 통해 아동의 여권을 발급받은 비용은 미화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까지 든다. 실제 한 몽골인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여권 만들 때 너무 힘들어요. 어른들은 30달러만 내면 되는데 애들은 안 되니까 브로커한테 (미화로) 돈 2000에서 3000달러 줘요. 그래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 있는 경우 본국에 직접 가서 자녀를 데려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자녀를 입국시킨다. 브로커는 아동의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부모에게 인계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브로커는 의뢰 아동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 꾸며 동반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브로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여권을 통해 위장입국 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려면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몽골 노동자의 경우, 12세 자녀를 브로커의 동반자녀로 입국시키는데 미화로 3천 달러가 드는 반면, 본인의 이름으로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6천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소년은 브로커의 자녀로 위장 입국하는데 편도 항공료 포함 미화로 6,500달러를 지불했다.

한국에 먼저 가서 일하고 있던 아빠의 소개로 브로커를 만났어요. 나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권 만드는 거 비자 받는 거 브로커가

다 했어요. ○○ 대사관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사람 부부가 아빠, 엄마가 돼서 함께 왔어요. 홍콩에 들어서 마카오에도 하루 구경 갔다 왔어요. 그 사람 부부와 딸(4살)과 같이 홍콩 구경도 하고, 한국에 왔어요. 도착한 다음 날 호텔에서 아빠 만났어요. 아빠가 그 사람에게 6천5백 달러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났어요. …… 아빠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준 거예요. 1년 반 동안 일해서 빌린 돈 다 갚았어요 (사례 #26, 방글라데시 소년, 15세에 입국).

위에서 본 사례의 소년은 브로커의 자녀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본명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소년은 방글라데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국한 두 친구가 있는데, 모두 14, 15세에 브로커를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였다.

이와 같은 경우, 후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된다. 브로커는 아동을 부모에게 인계한 후 본인은 다시 출국하기 때문에 아동을 신분을 증명할 아무런 신분증이나 서류도 없이 한국에 남게 된다. 이처럼 신분증이 없는 아동이 후에 출국하거나 학교에 입학 하려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 출국하거나 입학하려면, 법무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아 그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브로커가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서 여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이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의 경우 출입국 기록 자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대사관을 통해 본국 정부에 의뢰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다.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출국할 수는 있지만, 입학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갖추 수 없으므로 어렵게 된다.

브로커가 아동을 입국시킨 후 그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다른 아동을 출국시킨 사례도 있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여권의 사진을 바꾸는 정도의 위조는 흔하게 발견되고 있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부모 중 한 명이 귀국해

서 다시 자녀를 동반해서 입국하는 경우와 떨어져 있던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입국해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몽골의 경우 자녀들의 여권을 발급받고 동반 출국하는 데 현지에서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정착과정

가. 입국 초기 정착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나 나중에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의 경우 모두 비슷한 정착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지만, 부모와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장 근무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관광이나 쇼핑을 마친 후, 자신들끼리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재회한 후 짧은 여행이나 서울의 놀이공원 같은 곳을 방문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구입한 후, 부모는 다시 아침부터 밤까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모국 친구들이나, 일요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함께 다니는 교회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몇 달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본 아동도 있다. 짧게는 4개월에서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아동도 있다.

처음 5개월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몽골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몽골학교에서 한국어 배워서 한국학교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어요(사례 #30, 몽골, 남, 17세, 2000년 14세 때 입국).

나. 한국어 학습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부모나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한국어 교실, 몽골학교와 같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들의 교육은 간단한 표현을 가르치고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몽골 아동들은 몽골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지만 지역이 떨어져 가기 힘들거나 다른 국가에서 온 아동들은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나 방과 후 교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후 한국학교에 입학하려 하는데,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온 경우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부모가 대부분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의 모국어 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모국어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 대학을 나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다.

한국에 3년 전(12세)에 처음 와서 1달 몽골학교에 다녔는데요. 별로 배우는 게 없어서 그만 다니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한국말 배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갔어요. 5학년 때 회장을 했어요. 부모님은 대학교까지 다니라고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사례 #31, 몽골, 15세, 2000년 12세 때 입국).

(방글라데시에) 가고 싶은데요. 학교 숙제도 많고 하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거기 계셔서 방학 때 가보고는 싶은데요. 아무래도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만 빼고는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니까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요(사례 #18).

몽골 말보다 한국말이 더 편해요. 부모님과 얘기할 때 둘 다 섞어서 해요. 나중에 한국에 있고 싶어요. (왜 그러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좀 편해. 몽골은 형편이 안 좋잖아요. 춥고. 한국은 날씨도 따뜻하고 …… 엄마, 아빠는 몽골에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근데도 나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여기 이모네가 있거든요. 나는 이모네서 지내고 엄마, 아빠는 몽골에 가고 그래도 되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려고 해요(사례 #15).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 아들(15세) 계속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을 다시 몽골로 보냈는데, 내 마음으로는 진짜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학원 다니고, 컴퓨터 학원, 영어, 학교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은 한국에 안 살고 싶다는 말 없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도 두 번 세 번 맞았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하고, 맞고 울면서 왔을 때도, “엄마한테 얘기 안하고 혼자 왜 그렇게 고생했어?”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가 몽골로 보낼 거잖아”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고 싶어서 참았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못함) (사례 #3).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 자녀들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보고 싶어한다. 본국 환경이 한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진 한국사회에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차피 몽골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딸애를 몽골로 보낼 거고, 우리도 아마 1년쯤, 2년쯤 있다가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고향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엄마, 아빠도 연세가 너무 많으니까, 좀 가야 돼요. 우리 막내딸이 “나는 한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오래 오래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요. (부모님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당연히 안 되죠. 아빠, 엄마 따라와 가지고 …… 자기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그냥 얘기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사례 #1).

외국인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모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미취학 청소년인 경우 모국어 사용률은 다소 높았다. 그 다음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했다. 한국어 사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 부모들은 그 자녀들과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주로 '모국어'(62.3%)를 사용하는 반면 국제결혼 가족은 '한국어'(69.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부모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단위: N, %)

	외국인 청소년					외국인 부모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5)	(41)	(8)	(25)	(21)	(107)	(61)	(46)
모국어	62.1	56.1	62.5	56.0	81.0	39.3	62.3	8.7
두 언어를 섞어서	29.5	36.6	37.5	32.0	9.5	26.2	29.5	21.7
한국어	8.4	7.3	.0	12.0	9.5	34.6	8.2	6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모들은 아동에게 한국의 말과 글, 문화를 익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모국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보다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배울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적 희망만 갖고 있다.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에 더 열성인 이유는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부모의 바람 때문이다. 실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들도 초기에는 자녀들이 빨리 미국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어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외국인노동자 부모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야 자녀들이 모국어를 모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모국의 말과 글을 가르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몽골인 학교처럼 몽골어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런 프로그램

램이 없는 국가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기 전에는 배울 기회가 없다.

우리 딸은 한국어를 더 잘해요. 진짜 한국 사람처럼 해요. 지금 몽골어는 잘 못하고, 읽기만 읽는데, 쓰는 건 좀 힘들어해요. 한국어 쓰는 거는 잘하고, 몽골사람인데 애가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지금 나이는 어리니까, 자기 나라로 가면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어차피 피가 몽골 피가 들어갔잖아요(사례 #1).

자녀들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모국인 동료들과 자주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면 같은 국가 출신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들을 가르쳐 주고 익숙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랑 만나서)같이 방글라데시 얘기도 하고. ○○도 방글라데시 히스토리(history) 같은 거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절 같은 거나. 내가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 ○○한테 가르쳐줄 거예요. 한국 사니까 여기 생활 잘 해야 되지만 방글라데시도 중요해요(사례 #17).

<표 3-2>는 외국인 부모와 국제결혼 부모에게 그 아동의 모국 문화 학습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한 응답 결과이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에게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려주는지, 그리고 모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모국에 대한 이야기나 명절 및 기념일을 챙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한 가정의 경우 부인이 대부분 한국인이지만, 본국으로 귀국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가족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

면에 외국인 가족의 경우 그 자녀가 언젠가는 모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그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표 3-2> 외국인 아동의 모국 문화 학습

(단위: N, 점수)

	전체 (99)	외국인 가족 (63)	국제결혼 가족 (36)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중요 정도	84.7	89.3	77.5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62.8	70.6	49.5
모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	62.0	69.3	49.5

주: 출신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점수화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약간 그런 편이다”에 33.3점, “꽤 그런 편이다”에 66.7점, “아주 많이 그렇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부모들은 자녀들이 모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 비록 모국어는 잘 못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연구자: ○○가 여기서 계속 커서 방글라데시 말도 잘 못하고 한국 사람처럼 되는 게 섭섭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 아버지: 상관없어요. 우리 지금 한국 너무 좋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 여기서 계속 학교 다니면서 닥터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한국말 배워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방글라데시 돌아가면 ○○는 한국말 잘하니까 한국말 가르치는 거 하면 거기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사례 #17).

다. 상대적 빈곤감

한국에 처음 도착한 자녀들은 본국에 비해 발전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감탄

한다. 한국에 먼저 이주노동을 하러 온 부모를 통해 들었던 한국의 모습을 실제 확인하고 놀란다. 그러다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한국에도 빈부 차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한국 친구들과 자신들의 생활을 비교하게 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 우와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게 한국이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다 우리랑 비슷하게 산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용돈을 한 달에 3~4만원 받아요.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래요. 한국 친구들도 1~3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랑 다 비슷하죠(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학교 수업에서도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야 할 때 어려운 가정형편을 느낀다. 컴퓨터와 관련된 숙제를 제출할 때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다른 한국학생처럼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빈부차를 인식한다.

음 학교에서는 크게 불편한 게 이제는 없어요. 근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숙제 같은 거 나오면 다른 애들은 컴퓨터로 뽑아서 내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써서 내요. 저희 반에 컴퓨터 없는 애가 세 명 정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불편해요. 학교에 컴퓨터실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래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거든요.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치다 고치다 결국 포기했어요(사례 #18).

상대적 박탈감이나 경제적 곤궁함은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이다.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들이 갖고 있는 비싼 물건들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단칸방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 사생활이 없다는 불편이 있다.

방 하나에 엄마아빠랑 언니랑 같이 살아요. 불편하죠. 전에는 방이 두 개였거든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꾸중하시면 방문 잠가버리고 그래도 엄마가 아무 말도 안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방 하나니까 뭐 엄마가 만

날 참견하죠. 엄마가 공부하라고 자꾸 잔소리해요. 엄마는 옆에서 티브이보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책보는 척 하면서 귀는 티브이(TV)보고 있어요. 읽어도 읽어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3. 귀국·송환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아동을 돌보느라 부인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결혼한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각자 자신들이 입국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갚아야 하거나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3-3>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경험

(단위: N, %)

	전체 (87)	외국인 가족 (49)	국제결혼 가족 (38)
있다	18.4	14.3	23.7
없다	81.6	85.7	76.3
계	100.0	100.0	100.0

<표 3-4>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경험

(단위: N, %)

	전체 (71)	외국인 가족 (42)	국제결혼 가족 (29)
있다	78.9	81.0	75.9
없다	21.1	19.0	24.1
계	100.0	100.0	100.0

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2.5%가 ‘함께 살고 싶어서’, 17.9%가 ‘본국에서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12.5%가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래에 언급한 방글라데시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본국으로 보낼 수 없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전형이다.

(2001년 12월에 딸을 출산한 방글라데시인 부부의 사례) ○○ 때문에 우리 와이프 계속 삼 년째 일 안하고 있어요. ○○ 봐야되니까. 나중에 학원이나 이런 데도 보낼 거예요. 지금은 안 보내고 있는데 뭐 먹고사는 거 때문에 안 보내는 거 아니구요. 아직 어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좀 크면 와이프도 돈 벌어야 되는데……(사례 #17).

<표 3-5> 자녀를 모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

(단위: N, %)

	전체 (56)	외국인 가족 (34)	국제결혼 가족 (22)
함께 살고 싶어서	62.5	50.0	81.8
본국에서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17.9	23.5	9.1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12.5	17.6	4.5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1.8	2.9	.0
기타	5.4	5.9	4.5
계	100.0	100.0	100.0

부모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아동을 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귀국하거나 본국에서 친척이 입국해서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부모 중 한 명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 체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친척들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동료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흔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국으로 아동을 보내는 일은 필리핀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필리

핀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거의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 필리핀 노동자 사회에서는 자녀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부모의 의뢰를 받아 자녀를 동반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관행의 심각성을 깨달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동반해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보증한 사람들이 부모의 위임장을 갖고 아동을 동반해 출국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2년에 불법체류 자진등록을 한 후 자진등록자에 대해서는 부모이외의 사람이 아동을 데려갈 수 있도록 선처하였다. 부모의 위임장에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확인을 해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는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법무부가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재접수하면서, 4년 미만 체류자에게는 합법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4년 이상 체류자는 강제추방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즉, 2003년 10월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합법화 대상자는 아동만 출국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부모가 휴가를 얻어 동반 출국할 수도 있으나, 합법화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이외의 사람이 아동만 데리고 출국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그래서 미등록노동자들은 자녀를 출국시키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10월에 자녀를 출국시킨 베트남 부모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산부인과에서 아동을 데리고 출국할 사람이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사관에서 아동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만들었다.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약 160만원 정도였다. 이 비용에는 아동을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주는 수고비 약 1,000달러, 서류 만드는데 드는 비용, 브로커의 수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2년 초까지 필리핀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비용을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씩 주고 아동을 출국시켰는데, 불법체류 자진신고 및 등록 이후에는 서류 작성 등에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게 되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비행

기표를 사주는 정도의 비용 약 40만원 내지 50만원만 들고도 아동을 출국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9~11월에 합법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브로커를 이용해야만 되게 되었으므로,²⁾ 자녀를 출국시킬 경우 다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접수 및 합법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자녀'의 사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다. 첫째, 부모가 2003년 3월 31일 기준 불법체류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① '만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부모가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하고(근로기준법상 취업 불가능), ② '만 17~18세 자녀'에게는 부모가 합법화될 경우에만 부모 동의하에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하며, ③ 만 18세 이상 자녀의 경우 그의 불법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비전문취업' 사증을 발급하였다. 둘째, 부모가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 인 경우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① 자녀와 함께 출국하면, 부모는 입국이 보장되지만, 자녀는 재입국이 불가능하였고, ② 자녀를 국내에 두고 부모만 출국 후 재입국하면 부모는 '비전문취업' 사증을 받아 합법화 가능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셋째, '부부 중 한 사람은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이고, 다른 한 사람은 3년 이상이거나 4년 이상인 경우' 자녀의 사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중 3년 미만인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 받고, ② 아동의 여권이 별도로 없고, 불법체류기간 3년 이상인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여권을 분리 발급받은 후,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부모를 통해 '방문동거' 사증을 받는다.

IV.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

1. 시간대별 생활 패턴

가. 평일 낮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등교한다. 아동들은 부모님과 별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낮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가 자녀와 쉽게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때로 어린 동생을 돌보기도 한다. 부모가 일찍 출근한 경우 취학아동들은 알아서 아침을 챙겨 먹고 등교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동생이 있는 경우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기도 한다. 몇몇 아이는 부모 몰래 등교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기도 한다.

비교적 학교에 적응을 잘하던 아이였어요. 성숙해서 아이들도 잘 챙겼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아이였는데 결석을 자주 했어요. 물어보면 집에서 아기 봤다고 그러는데, 또 친구들 말로는 놀이터에서 봤다, 이마트(E-Mart)에서 봤다 그래요(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의 취학 아동들은 평일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한다. 그러나 입국 초기에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아동들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 짧게는 몇 달 동안 길게는 1년을 집에서 지낸 아동도 있다.

새벽 6시 정도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 밤늦게 돌아 올 때까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아마 4개월 정도를 방에서만 지낸 것 같아요. 숨이

막혀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길도 모르고 나갈 수 가 없었어요(몽골 아동, 13세, 노동일보 2002년 12월 18일).

나. 평일 방과후 부모퇴근 전

방과후 취학아동들의 생활은 한국 학생들과 비슷하다. 사교육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한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나 주위에 모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주로 함께 어울린다. 어린 동생을 둔 아동은 보육시설에서 동생 데리고 오기, 돌보고 놀아 주기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간단한 가사 일을 돕기도 한다. 살고 있는 지역에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운영하는 공부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공부방에 가서 숙제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나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잠깐 놀다가 태권도 가요.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배고프면 용돈으로 빵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사먹지요. 내가 라면도 끓일 수 있어요. 엄마가 7시쯤에 집에 오니까 밥은 엄마가 해요(사례 #36, 몽골, 10세, 남, 8세 입국).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집안 일 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요(사례 #12, 14세, 몽골, 여, 2000년 11월에 입국).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¹⁾가 있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자녀들의 사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들은 영어학원과 컴퓨터 학원 등을 주로 다니며 몇몇 아이들은 수학,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있다.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많은 학원을 보내고 싶어한다.

1) 경제적인 여유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중 입국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았거나, 또는 입국시 벌린 돈을 모두 갚아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경우를 말한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엄마 일 돕든지 텔레비전 봐요. 시험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데요. 시험 때 아니면 텔레비전 많이 봐요. 만화도 많이 보고 '쥬얼리'(댄스그룹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쥬얼리 나오는 것도 많이 봐요. 텔레비전은 학원 가기 전에, 갔다와서 틈나는 대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사례 #18).

다. 평일 저녁

아동들은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저녁시간이면 부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로 TV를 보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아동들은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으며 때로 피곤한 부모님을 위해 안마를 하거나 집안 일을 도우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부모가 저녁시간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부모의 퇴근이 늦을 경우 자신들이 저녁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다. 주로 부모가 아침 일찍 준비해 놓고 출근하거나 주말에 한꺼번에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먹는다. 같은 또래의 한국 아동들에 비해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는 일등 가사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저녁시간대에 자녀들만 집에 있는 경우, 식사문제, 학업문제, 자녀들의 안전문제 등이 심각한 현실이다.

<표 4-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학원 또는 일이 끝난 후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모국인 친구(28.9%), 부모님(23.3), 한국인 친구(18.9%), 혼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은 대체로 부모(30.0%)와 모국인 친구(22.5%) 및 한국인 친구(22.5%)와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고, 중등학교 청소년들은 한국인 친구(28.0%), 모국인 친구(24.0%) 및 부모님(24.0%) 등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의 경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모국인 친구와 제3국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부모의 보살

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에 미취학한 청소년은 모국인 친구(47.6%)와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으며, 부모(14.3%)와 같이 또는 혼자(14.3%)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방과후 같이 지내는 사람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0)	(40)	(4)	(25)	(21)
모국인 친구	28.9	22.5	25.0	24.0	47.6
부모님	23.3	30.0	.0	24.0	14.3
한국인 친구	18.9	22.5	.0	28.0	4.8
혼자	12.2	10.0	.0	16.0	14.3
형제, 자매	4.4	10.0	.0	.0	.0
제3국인 친구	3.3	.0	25.0	.0	9.5
기타	8.9	5.0	50.0	8.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들이 동생을 돌보거나 스스로 식사를 준비해 먹는 일에 대해 안쓰러워하는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본국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동생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보통 하루에 12~14시간씩 일하기도 했어요. 야근이나 잔업을 하고 늦게 오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저녁밥 먹고 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 다 준비해 놓는데, 애들이 따뜻하게 끓여 먹어야지. 엄마가 없을 때 차가운 채로 그냥 먹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애들보다 우리나라 애들이 일은 잘해요. 청소나 주방 일도 잘 도와주고, 식사도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 먹어요. 우리는 인생을 자기들이 배워야 돼요. 한국에서는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애들 다 키워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8살 때부터 다 배워요. (옆에 있던 다른 몽골 여성이) 나는 8살 때 아래 동생들 다 돌봐주고 그랬어요(사례 #3).

라. 주말과 휴일의 생활

아동들은 주말과 휴일에 부모와 함께 공동체(communit²⁾) 활동에 참여하거나, 장을 보고, 종교 활동을 한다. 어떤 아동은 부모가 외출한 뒤 집에 혼자 남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며, 어떤 아동은 주변 친구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인 아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 바빠요. 요즘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 같아요. 되게 바빠요. 통역도 하고 교회에서 율동 찬양도 해요. (예전에는) 서울로 놀러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우리 아이는 집에서 나오기 싫어해요. 재미없다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요(몽골 아동 부모).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하고 놀고 있어요. 아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 타고 있대요(몽골 아동 엄마).

2. 부모-자녀 관계

외국인 아동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경우 외국인 아동들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사소한 일로 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부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가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가별로 교민회 형식의 공동체를 많이 형성한다. 이들은 주말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미사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모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저녁밥은 제가 해요. 엄마 아빠도 힘드시지 않아요? 사실은 몽골에서 제가 밥했어요. 몽골에서는 원래 어릴 때부터 애들이 부모님 다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가끔 ‘한국 애들은 부모님 잘 안 도와주니?’ 하고 묻기도 해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이 그 부모에게 갖고 있는 불만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만 강요한다’ 27.1%, ‘용돈을 적게 받는다’ 18.6%,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와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공부만 강요한다’(27.6%, 40.0%)가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 불만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는 것과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학교 미취학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타를 제외하고는 용돈을 적게 받는 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표 4-2> 부모에 대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단위: N, %)

	전체 (70)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29)	미취학 (3)	취학 (20)	미취학 (18)
공부만 강요한다	27.1	27.6	.0	40.0	16.7
용돈을 적게 받는다	18.6	17.2	.0	20.0	22.2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13.8	.0	15.0	5.6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8.6	.0	33.3	5.0	22.2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	6.9	33.3	5.0	11.1
기타	40.0	51.7	66.7	30.0	27.8

불만의 대부분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데서 비롯된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잠든 시간에야 퇴근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관여하지 못한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문제들이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만 하느라 한국어나 한국

생활에 대해 자녀들에 비해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저는 지각을 많이 해서 일찍 자요. 밤 9시나 10시에 자는데, 엄마, 아빠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에 와요.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있으면 가끔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요. 근데 가끔은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말이요. 잘 안 통해요. 엄마, 아빠는 한국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몽골에서는 공부를 많이 어렵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한다고 걱정해요(실제 한국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학이 쉽다고 부모들은 말한다). (부모님께 제일 불만이 뭐냐고 물으니) 엄마가 회사 때문에 바빠서 학교 모임에 못 오는 게 싫어요. 어머니 회의 같은 거 할 때요(사례 #10).

초등학생에 비해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산 데다가, 한국에 와서 부모와 재결합한 이후에도 바쁜 부모의 직장 일로 대화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 학생들에 비해 한국학교나 사회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모와 5년 간이나 떨어져 살다가 2001년 15세에 한국에 입국한 ○○은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가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온 경우이다. 한국에서 낳은 동생들 때문에 바쁜 엄마와 공장 일로 늦게 들어오는 아빠와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연구자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극구 거절했다.) 돈만 있으면 몽골로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말 안 해요. 낮에 밖에 있다가 6시쯤 집에 들어가요. 엄마는 아기들 때문에 집에 있는데, 아빠는 새벽에 들어 올 때도 있고, 공장에서 늦게 와요(사례 #16).

부모님은 저에게 공부 안하고 놀러 다니지 마. 놀다가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빠는 너무 혼내요. 서울에 있는 몽골 친구들은 늦게 들어가도 안 혼내요. 솔직히 12시는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몽골에 있을 때는 관심 같은 거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괜히 관심 많은 척 해요.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애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 집에서 잘 안 해요. 우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늦게 집에 가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못 물어봐요(사례 #3, 43세 몽골인 어머니).

외국인 청소년들의 그 부모에 대한 불만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외국인 청소년들은 그 부모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불만들은 있지만, 한국에서 고생하는 부모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표 4-3> 부모에 대한 만족도

(단위: N, 점수)

	외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5)	(41)	(8)	(24)	(22)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87.5	88.6	91.6	87.5	84.1

주: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3. 친구와 이웃

가. 친구 사귀기와 놀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아동은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입국 초기에는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 혹은 부모님과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주변 한국인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외국인 아동의 놀이는 또래 한국인 아동과 다르지 않다. 주변 한국인 아동들이 노는 방식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각 출신국의 놀이를 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우리는 공기,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훌라후프 이런 거 하고 놀아요. 우리나라 놀이는 잘 안 해요. 한국 애들은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기도 너무 힘들어서 애들한테 말도 안 했어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실제 아동들 간에 문화 간 교류가 적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친구들 사이의 놀이를 한국 아동이 주도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은 한국 아동들의 놀이 문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또래 한국인 아동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에 능숙한 것에 비하여 외국인 아동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용 능력도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아동들은 호기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아동들은 무료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잘 찾아다닌다. 방과후나 주말에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찾기도 하고,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한국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다. 물론 이러한 방문을 통해 한국 가정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빈부차에 의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형제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 여가 시간을 형제자매와 보내게 되고 부모 또한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 이성교제

청소년기의 아동은 이성교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고민하기도 한다.

우리는 남녀 합반이에요. 관심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예쁘다고 그러면서 잘해 줬어요. 지금은 남자친구는 없고 여자친구는 많아요. 만약에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엄마는 안 그러는 데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는 되게 화내요. 아빠는 무조건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반대해요. 외국에 왔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사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우리 반 애들이 몰래 사귀라고 해요. 친구들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요. 컴퓨터 버디버디(메신저)로 사귀고 그래요. 저도 조금 있으면 버디아이디 생겨요. 처음에 버디아이디 신청할 때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필요해요. 저는 못 만들잖아요. 조금 있다가 친구가 만들어 준대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학생이나 모국 학생들과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듯 하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근로청소년들은 이성 친구를 만날 기회가 더 적은 편이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성이 없다면 휴일에 만나야 하는데, 학교에 다니는 동년배 친구들과는 생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 몇몇 근로청소년들은 일요일에 동네 공원에서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볼링을 치면서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다. 이웃

아동들은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거나 친한 편이다. 부모님은 일자리 정보나 고국 소식을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같은 나라 출신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몽골인이나 조선족 노동자들은 집중적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이웃이 많다. 다른 국가 출신들도 직장을 구할 때나 집을 구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웃으로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아동들 또한 어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히 같은 나라 출신 이웃들

과 가깝게 지낸다.

어른들에 비해 비교적 한국어에 능한 아동들은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역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

제가 입학시킨 아동이 며칠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어요. 왜 학교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아이는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몽골에서 왔는데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니까 내가 같이 쇼핑다니고 놀러도 갔어요. 손님은 어떻게 전철 타는지 잘 모르잖아요.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내가 통역해서 (물건)값도 많이 깎았어요." 하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뒤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외국인상담소 상담활동가).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았어요. 월급 받게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도망갔어요. 그 나쁜 사장님 꼭 잡아야 돼요. 우리 아빠 돈 못 받으면 우리 어떡해요(사례 #35, 몽골, 12세).

부모나 어른들의 문제를 통역하는 아동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어떤 대우를 받는 지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가 있는 반면에 외국인 아동의 주변에 있는 한국인 중 대다수는 아동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편이다. 아동들은 주로 거주지 근처의 가게주인, 교회 등의 한국인들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 서울의 한 교회는 인근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급식비를 지급하는 일요일에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이 교회에 많이 출석한다. 교회 측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교회 활동에 참가시키며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넓히려고 하나 한국인 중고등학생들의 바쁜 사교육 일정 때문에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제 친구 엄마는 저를 아주 좋아하나 봐요. 옛날에 우리랑 같은 집에 살았는데요, 저한테 돈도 주고 그랬어요. 저는 돈 안 쥐도 되는데 아줌마

가 자꾸만 도와줬어요(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는 지역 상황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한다.

보람이요? 이사갔어요. 먼데 시골루요. 개네 엄마가요, 우리 동네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나쁘다고 외국인 없는 데로 이사간 댔대요. 영원히 안 온대요. 인제는 보람이 못 봐요. 어쩔 수 없죠 뭐. 보람이 엄마는 외국인이 싫대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표 4-4>는 외국인부모들이 그 자녀들과 관련된 이웃들의 태도를 점수화한 결과이다.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61.7점,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 양육의 견해를 보임’ 57.8점, ‘자녀에게 중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56.5점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가족보다는 국제결혼 가족에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4-4>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단위: N, 점수)

	전체 (81)	외국인 가족 (46)	국제결혼 가족 (35)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61.7	57.6	67.1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양육의 견해를 보임	57.8	54.2	62.2
자녀에게 중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56.5	52.2	61.8

주: 이웃 사람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25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50점, “대체로 찬성한다”에 7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4. 의료와 건강

외국인 아동들은 불법체류 상황인 부모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먹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거나, 외국인무료진료소를 이용한다. 자녀들의 예방접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은 부모님과 같이 의료공제조합에 가입(직계혈육이라고 인정되는 만12세 이하의 소아 1인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협력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편입되어 보험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다.

<표 4-5> 아동의 예방 접종 시기 준수 여부

(단위: N, %)

	전체 (100)	외국인 가족 (56)	국제결혼 가족 (44)
제 때에 맞추었다	62.0	46.4	81.8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38.0	53.6	18.2
계	100.0	100.0	100.0

자녀에게 예방주사를 제 때에 접종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 외국인 가족은 53.6%가 제때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81.8%가 제때에 맞추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국제결혼 가족의 부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자녀가 아플 경우 외국인 가족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70.0%) 반면,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 4-7>에 의하면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68.6%,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1.6%,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봐’ 5.9% 등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 가족은 기타를 제외하고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33.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25.0%로 나타났다.

<표 4-6> 아동이 아플 때 병·의원 이용의 용이성 여부

(단위: N,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07)	(60)	(47)
예	57.0	30.0	91.5
아니오	43.0	70.0	8.5
계	100.0	100.0	100.0

<표 4-7>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

(단위: N,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63)	(51)	(12)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60.3	68.6	25.0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23.8	21.6	33.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봐	4.8	5.9	.0
기타	11.1	3.9	41.7
계	100.0	100.0	100.0

<표 4-8> 자녀가 아픈 경우 주로 찾는 곳

(단위: N,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112)	(64)	(48)
병·의원	59.8	39.1	87.5
약국	23.2	34.4	8.3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21.9	2.1
친구 및 친척	.9	.0	2.1
기타	2.7	4.7	.0
계	100.0	100.0	100.0

<표 48>는 외국인 자녀가 아픈 경우, 그 부모들이 주로 찾아가는 곳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병·의원’ 59.8%(국제결혼 가족의 경우 87.5%가 병·의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약국’ 23.2%,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애들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아프면 우리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 너무 좋아졌어요. 의료보험카드 나왔으니까. 한 달에 5천 원씩 내고 자기 이름으로 카드가 나와요. 지금은 전에 비해 50% 가격에 병원에 가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배가 아픈 줄 알았는데 어디가 아프지 확실하지 않아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 내가 말을 못하니까, 5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길, 5만원이 몽골에서 내 한달 정도 월급인데, 나한테 5만원 받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병이 걸린 거 같다는 걱정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2주 동안 치료했는데, 아무 것도 필요한 거 아니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사례 #1).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아직도 잘 걷지 못하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엄마가 마사지 해주고 그래요. 개인 병원에 갔는데 100만원이 들었어요. 약 받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주사도 2번 맞았거든요. 치료는 돈이 들어서 못해요. 아직도 아파요(사례 #12).

얼마 전에 우리 ○○(2살된 딸) 수술했어요. 맹장수술 했는데 그때 돈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외국인노동자 카드 있어서 이거 가져가면 조금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어요. 30퍼센트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보험 되는데 아무 병원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 맹장 터졌을 때 이 근처에 ○○병원에 데려갔어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카드 있으니까 조금 할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병원에 돈 많이 내야 돼요. ○○ 때문에 나는 백만원 냈어요. 백만원 내고 그 영수증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갖다 내면 나중에 디스카운트되는 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받으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한달, 두달 그렇게 기다리면 나중에 돈 줘요. 시간 꽤 많이 걸려요. ○○도 백만원 중에 40만원 정도 디스카운트 되니까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현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없으면 병원 가기 힘들겠다는 연구자의 질문에) 맞아요.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백만원 없어요. 나는 여기 온지 오래됐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돈 백만원 줄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은 그만한 돈 없

어요. 백만원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정말 아프면 여기 저기 돈 빌리든지 해야 되는 거고. 못 구하면 병원 못 가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 많이 빌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안 빌려 주기도 좀 어려워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달 월급 받아 돈 자기 나라에 보내고 하면 돈 많이 못 모으니까 병원 갈 돈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들 빌려줘야 하니까 누구 아프고 이런 일 있으면 다들 돈 집에 안 보내고 서로 빌려주고 그래요. 먼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돈 빌려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사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사례 #17).

5.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초등학교 취학만이 차별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있다(38.9%)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 초등학교 미취학, 중등학교 취학·미취학에서는 모두 차별이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 유무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1)	(36)	(5)	(23)	(17)
있다	51.9	38.9	100.0	56.5	58.8
없다	48.1	61.1	.0	43.5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교 친구'(14.6%), 학교 선생님(9.8%), 버스·택시 운전자(7.3%),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의 경우, 학교 친

구라는 응답이 2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도 학교 친구라는 응답과 학교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각각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한국인들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표 4-10>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한국인(복수 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41)	(14)	(4)	(13)	(10)
학교 친구	14.6	21.4	.0	23.1	.0
학교 선생님	9.8	7.1	.0	23.1	.0
버스, 택시 운전자	7.3	14.3	.0	.0	10.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9	.0	25.0	7.7	.0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2.4	.0	25.0	.0	.0
상점 주인	2.4	7.1	.0	.0	.0
이웃 주민	2.4	7.1	.0	.0	.0
기타	70.7	71.4	50.0	61.5	90.0

학교에서 차별의 경험이 많은 것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의 경험 때문이다. 교사들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은 학교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보충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측의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차별을 느끼게 되는 듯 하다.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노동자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 중학교부터는 정규학생이 아니라 청강생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경우도 있는 듯 하다.

V. 정규교육 수혜 희망

1. 진학에 대한 태도

가. 진학 희망

<표 5-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에 대한 희망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교'(60.2%), '대학원 박사과정'(16.1%), '중학교 이하'(9.7%), '고등학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학한 청소년의 경우도 같은 순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4년제 대학까지가 50.0%,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5.0%로 나타났다. 중등학교 미취학 청소년들은 '4년제 대학' 57.1%, '중학교 이하'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 62.3%, '2년제 전문대학'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인 아동에 비해, '중학교 이하' 내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높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은 다소 낮지만,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외국인 아동들의 진학 희망이 양극화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서울에는 일하는 애들 많아요. 서울에 몽골학교 있는데 14~15세 되면 다 학교에 안가고 일하고 있어요. 애들은 지금 돈 벌어서 몽골에 가서 좋은 학교 간다고 그래요. 몽골에서는 요, 돈 많으면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어요. 2년 동안 벌어서 돈 많아지면 몽골에 가서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학년 내려서 들어갈 수도 있고 월반 할 수도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나이에 맞게 학교 다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학교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아마 다 다닐 걸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방글라데시에서 15세에 노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의 한국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다.

<표 5-1> 아동이 희망하는 교육수준

(단위: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3)	(39)	(8)	(25)	(21)	(613)	(373)	(24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4.3	.0	25.0	.0	9.5	1.3	1.3	1.3
중학교 이하	9.7	7.7	.0	12.0	14.3	1.3	1.9	.4
고등학교	6.5	2.6	12.5	8.0	9.5	9.1	9.1	9.2
전문대학(2년제)	1.1	2.6	.0	.0	.0	11.9	11.0	13.3
대학교(4년제)	60.2	71.8	50.0	48.0	57.1	62.3	61.7	63.3
대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4.7	4.6	5.0
대학원 박사과정	16.1	15.4	12.5	28.0	4.8	9.3	10.5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희망하는 교육수준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3)	(39)	(8)	(25)	(21)
중학교 이하	12.2	18.9	.0	8.0	9.5
고등학교	15.6	10.8	28.6	16.0	19.0
전문대학(2년제)	1.1	2.7	.0	.0	.0
대학교(4년제)	55.6	62.2	42.9	56.0	47.6
대학원 석사과정	3.3	.0	.0	8.0	4.8
대학원 박사과정	6.7	5.4	14.3	12.0	.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5.6	.0	14.3	.0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2>는 외국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응답자 중 55.6%가 4년제 대학교까지 다니기를 희망하고, 15.6%가 고등학교까지, 12.2%가 중학교 이하까지는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으며, 미취학 자녀들(14.3%, 19.0%)만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5-1>과 <표 5-2>를 비교하면,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비해 국내에서 받기를 원하는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실적 진학 가능성

현실적인 여건상 외국인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4년제 대학'(47.8%), '중학교 이하'(18.5%), '고등학교'(13.0), '대학원 박사과정'(1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표 4-3). 그러나 중등학교에 취학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4년제 대학교' 다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초등학교에 미취학한 외국인 아동들은 '고등학교'(42.9%), '4년제 대학교'(28.6%)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중등학교에 미취학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4년제 대학교'(47.6%), '중학교 이하'(3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교'(45.4%), '고등학교'(28.3%), '2년제 전문대학'(12.4%)의 순으로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희망 교육수준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진학 희망을 설정하고 있다.

<표 5-4>에 제시한, 한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한 자녀는 39.8%였고, 중학교 이하 19.3%, 고등학교까지가 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등학교로 갈수록 고학력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표 5-3>과 비교하면, 자신의 현실적 기대교육수준에 비해 '한국에서의 현실적

기대교육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3> 아동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

(단위: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2)	(39)	(7)	(25)	(21)	(611)	(368)	(243)
학교를 전혀 다닐수 없다	3.3	2.6	.0	4.0	4.8	.2	.3	.0
중학교 이하	18.5	15.4	14.3	12.0	33.3	3.4	3.5	3.3
고등학교	13.0	12.8	42.9	12.0	4.8	28.3	32.1	22.6
전문대학(2년제)	3.3	5.1	.0	4.0	.0	12.4	10.6	15.2
대학교(4년제)	47.8	53.8	28.6	44.0	47.6	48.1	45.4	52.3
대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4.6	5.4	3.3
대학원 박사과정	12.0	10.3	14.3	20.0	4.8	2.9	2.7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4> 외국인 아동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교육수준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2)	(39)	(7)	(25)	(21)
중학교 이하	19.3	18.4	.0	16.7	28.6
고등학교	18.2	18.4	40.0	20.8	9.5
전문대학(2년제)	3.4	5.3	20.0	.0	.0
대학교(4년제)	39.8	47.4	40.0	33.3	33.3
대학원 석사과정	3.4	.0	.0	8.3	4.8
대학원 박사과정	10.2	2.6	.0	20.8	14.3
학교를 전혀 다닐수 없다	5.7	7.9	.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표 5-5>는 외국인 부모와 국제결혼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는지를 질문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교'(67.7%), '대학교 박사과정'(12.1%), '고등학교'(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순으로, 국제결혼 가족은 4년제 대학교 다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다니기를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4년제 대학까지가 51.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19.3%, 대학원 박사과정 14.8%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6). 그리고 중등학교로 갈수록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더 원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표 5-5>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단위: N, %)

	전체 (99)	외국인 가족 (57)	국제결혼 가족 (42)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3.0	3.5	2.4
중학교 이하	3.0	3.5	2.4
고등학교	9.1	15.8	.0
전문대학(2년제)	2.0	.0	4.8
대학교(4년제)	67.7	70.2	64.3
대학원 석사과정	3.0	.0	7.1
대학원 박사과정	12.1	7.0	19.0
계	100.0	100.0	100.0

<표 5-6>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자녀의 국내 교육수준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4)	(41)	(7)	(25)	(21)
중학교 이하	6.8	10.8	.0	8.0	.0
고등학교	19.3	10.8	16.7	32.0	20.0
전문대학(2년제)	2.3	5.4	.0	.0	.0
대학교(4년제)	51.1	59.5	66.7	36.0	50.0
대학원 석사과정	3.4	.0	16.7	4.0	5.0
대학원 박사과정	14.8	13.5	.0	20.0	15.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2.3	.0	.0	.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최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자녀들의 학원 수업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인 노동자중에 몽골학교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입학시킨 후, 방과후에 학원을 보낸다.

1993년 생인 ○○이는 방과후에 학원을 3군데 다니고 있다. 부모님은 몽골학교는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 다 모아 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며 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를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싶다고 하는 부모는 ○○이를 속셈학원, 피아노 학원, 컴퓨터 학원에 보내면서, 한 달에 약 24만원을 지출한다. 방은 좁지만 ○○이를 위해 피아노를 들여다 놓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도 사 주었다(사례 #19).

우리 애도 학원 많이 보내요. 윤선생 영어교실 한달에 8만원 내야 돼요. 수학은 한 시간에 5천원, 몽골 선생님 따로 해야죠(몽골인 가정교사를 말함), 피아노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작년에는 컴퓨터(학원)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예하고 싶다고 해서 서예도 보냈어요(사례 #3).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노력은 때로 좌절로 이어진다. 두 딸을 입국시켜서 3년간 학원 공부를 시켰으나 국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본국으로 보낸 경우도 있다.

딸 둘을 3년 전에 데리고 왔어요. 큰애는 지금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서, 스무 살 됐는데, 몽골에서 졸업하고 왔는데, ……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한국에 데려와서 졸업했으니까, 한국어 학원 다니다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면, 마음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됐어요. 왜냐면, 첫째, (몽골)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받아줄 수가 없대요. 한국에 공부하는 거 12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못) 받았어요. 둘째, 비자 때문에, 비자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안(못) 받았어요. 그래서 3년 조금 학원 보내다가, 몽골에 보냈고, 9월 14일부터 중국으로 보내서 공부시키기로 되어 있어요(사례 #2).

VI. 학생 청소년의 생활

1. 학교 입학

200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체류가정의 어린이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식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보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이 실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외국인의 아동이 입학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불법체류가정의 아동이 입학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이므로 시행령 개정이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선 학교에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입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권적인 배려 차원에서 입학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는 듯 하다. 실제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길 원했다.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는 교육부 지침이 공문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은 듯 했다. 학교장들은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입학할 수 있는 것이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역시 학교장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가정의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상당히 꺼려하며 다른 학교로 문의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학교가 한 학교뿐일 경우에는 미룰 대상이 없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입학할 허가하지만, 학구가 겹쳐 미룰 수 있는 경우라면 이 학교는 저 학

교로, 저 학교는 이 학교로 서로 미루어 부모와 아동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러 갔을 때 교장선생님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랑 동생이랑 번갈아 쳐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한 명이라든 모르지만 둘 다 받을 수는 없다고 거절했어요. 우리가 한국어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사례 #31).

제가 아동을 데리고 학교에 입학시키러 갔을 때,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개정된 시행령 등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득해야 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감선생님이 현관까지 나오시더니, 주변에 다른 학교도 많으니까 다음에는 제발 다른 학교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외국인상담소 상담활동가).

(○○○엄마) 일단 우선 불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불법이니까 ○○○도 학교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외국인노동자의 집 ○○○선생님 때문에 다닐 수 있었어요. 엄마가 불법사람이어서 학교에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처음에 가도 그러고 두 번째 가도 그러고, ○○○ 이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가 많이 부탁을 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갔는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애기 그냥 집에 있으면 말도 못해 공부도 못해. 안되잖아요. 겨우 겨우 받아줬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도 돈 안내고 학교 다녀요. 소풍갈 때 ○○○ 돈 쓰라고 만원 이만원 가져가도 선생님은 아빠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신다고 돈 안 받고 ○○○한테 다 사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백원짜리 하나 안 받았어요. 학원에서만 돈 드는 거예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자아이의 어머니)

처음에 학생을 받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공문도 없이 아이들 받았다가 경고 받을까봐 우려했어요.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안 받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 학교장 책임이에요(경기지역 중학교 교장 선생님).

또한 중학교에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규 교육을 다른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받고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한국의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아동들은 정규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있는데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력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규에 없으니까 졸업장을 줄 수 없어요. 2년 전 첫 학생을 받았는데, 지금은 3학년이에요. 애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걱정이예요. 지금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입학한 애들은 졸업장을 줘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몽골에서 서류를 못 갖고 와요. 불법이니까, 불법체류자라 그런지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서류를 못 가져와요. 실제 학생들은 반년만 지나면 한국어 잘해요(경기지역 중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반 아이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나와도 공식적으로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청강생이니까 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도 다른 아이들과 별도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등수를 매길 때 열외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경기지역 중학교 담임교사).

<표 6-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N, %)

	전체 (19)	외국인 가족 (14)	국제결혼 가족 (5)
한국말을 잘 못해서	31.6	35.7	20.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21.1	28.6	.0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	5.3	.0	20.0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5.3	7.1	.0
기타	36.8	28.6	60.0
계	100.0	100.0	100.0

아동의 권리 중 '교육권'은 아동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표 6-1>은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응답자 중 '한국말을 잘 못해서

' 31.6%,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21.1%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들에게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학교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많은 교육청 단위로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예비반 성격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2. 학교 생활의 적응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장애아를 위해 개설한 특수반에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규 학급에서 특별한 지도 없이 일반 학생들의 교과를 따라가야 한다.

<표 6-2>는 외국인 청소년들과 한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한국인 청소년과 외국인 청소년들 모두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가르침 정도나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및 교육적 차원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점수가 높았다.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보다 중등학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인 청소년들은 중등학교 보다 초등학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문제점들로 등장할 수 있는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의 비사교적 행위나, 싸움, 학생 폭력배, 공부방해, 학교의 비안전성 등의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동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표 6-2> 아동의 학교생활 평가

(단위: N, 점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48)	(30)	(18)	(605)	(365)	(240)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75.0	71.0	82.4	73.0	82.7	58.8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71.6	71.0	72.9	69.3	77.0	57.5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67.4	65.6	70.4	56.3	61.8	47.9
학생 성적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61.0	55.1	71.1	50.0	56.1	40.8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56.8	50.0	66.7	43.5	47.3	37.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43.5	45.6	39.6	40.9	38.0	45.3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43.0	46.4	37.3	19.7	17.7	22.7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전혀 사귀려 하지 않는다	42.8	44.4	39.6	34.7	38.4	29.1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38.6	41.7	33.3	42.9	41.2	45.4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38.6	38.1	39.6	34.4	35.5	32.8

주: 1) 학교생활에 대한 점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2) 외국인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이 표에서 제외되었다.

<표 6-3>은 외국인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부모들은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29.8%,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1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의 경우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결혼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우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에 제시된 것처럼, 외국인 부모가 취학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도움으로는 전체적으로 ‘한국어와 한글교육’ 64.1%, ‘방과 후 프로그램’ 14.1%,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과 국제결혼 가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외국인 가족은 ‘한국어와 한글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국제결혼

의 가족은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학비지원의 순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6-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걱정 사항

(단위: N, %)

	전체 (57)	외국인 가족 (41)	국제결혼 가족 (16)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34.1	31.3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29.8	36.6	12.5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것 같아서	19.3	19.5	18.8
모국어를 잊을 까봐	1.8	.0	6.3
기타	15.8	9.8	31.3
계	100.0	100.0	100.0

<표 6-4> 학생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

(단위: N, %)

	전체 (64)	외국인 가족 (46)	국제결혼 가족 (18)
한국어와 한글 교육	64.1	71.7	44.4
방과 후 프로그램	14.1	17.4	5.6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9.4	4.3	22.2
학비지원	4.7	2.2	11.1
기타	7.8	4.3	16.7
계	100.0	100.0	100.0

가. 학습 따라가기

입국 초기에 있는 아동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 외국인 청소년들의 학업적응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외국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여부이다. 또한 외국인 부모들의 한국어 실력은 외국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6-5> 아동과 부모의 한국어 실력

(단위: 점수)

	외국인 청소년					외국인 부모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8)	(40)	(6)	(23)	(19)	(106)	(59)	(47)
듣기	58.5	64.0	60.0	59.4	47.6	56.6	45.6	68.9
읽기	51.6	55.3	53.3	62.3	31.7	42.9	26.9	59.9
말하기	50.4	55.8	55.6	53.6	33.3	48.4	35.6	64.5
쓰기	48.1	50.9	55.5	62.5	23.3	36.7	20.0	53.8

주: 한국어 실력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점, “별로 잘못함”에 33.3점, “대체로 잘함”에 66.7점, “매우 잘함”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외국인 청소년과 외국인 부모의 경우,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듣기의 영역으로 각각 58.5점, 56.6점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중등학교 미취학의 경우가 다른 세 가지 분류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 부모인 경우에도 외국인 가족이 국제결혼 가족보다 언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표 6-5>를 통해 알 수 있다.

처음에 1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제 생각에는 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를 좀 배운 다음에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입학하기 전에 공부했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떨리고 무서웠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하고 음. 음 그랬어요. 애들이 웃을 때 저는 몰라서 웃지도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저거는 의자고 저거는 나무고. 저거 뭐지 알아? 저거는 하늘이야 하고 가르쳐 줬어요. 나중에 말 잘하니까 친구들 관심이 없어졌어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말로 하니까 저는 계속 네. 네 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싫어서 아빠한테 교회 안 간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싫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때)

입국).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한국어도 늘고 학습능력도 향상되지만 한국 친구들에 비하여 성적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실제 한국어 구사 능력 때문에 학습을 못 따라 가는 것뿐인데 학생의 학습 능력 전체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아동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공부 잘 했어요. 글씨도 잘 쓴다고 칭찬 받고요. 교장선생님도 들어와서 제 공책 보며 칭찬해 주시고, 다른 반 선생님도 일부러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제 공책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을 못해서 그런지 성적도 나빠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때 입국).

부모들도 자녀들의 성적이 본국에서 있을 때보다 낮게 나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았거나 안정된 직장에 있었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한국학교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많다.

성적표 받을 때 정말 힘들어요. 나쁘게 나오면 아빠한테 혼나요. 지금은 한국애들처럼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냐고 하세요. 기말고사 때만 성적표 보여드려요. 중간고사 때는 안 보여드리죠. 보여드리면 일년에 두 번 혼나잖아요(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한국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과목들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한다.

<표 6-6>은 학교에서 겪는 괴로운 일들에 대하여 조사한 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미숙한 한국어(30.0%),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든 점(26.0%), 그리고 낮은 성적(16.0%)의 순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각각 32.3%)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의 경우 낮은 성적(36.8%)과 미숙한 한국어(26.3%)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6>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고충(복수 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0)	(31)	(19)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	26.0	32.3	15.8
낮은 성적	16.0	3.2	36.8
한국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놀림, 구타	12.0	16.1	5.3
친구 사귀기가 힘들	8.0	6.5	10.5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0
기타	24.0	29.0	15.8

학생들은 특정 교과는 더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주로 한국학생들이 미리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은 한국사 관련 과목들이 그러하다.

국어랑 사회가 좋아요. 국사는 정말 어려워요. 옛날 거 있잖아요. 단군만 알아요. 그 다음은 아무 것도 몰라요(사례 #35, 몽골, 12세, 남, 9세 입국).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별도로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선의로 진행된 특별수업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못하는 몽골학생에게 개별 교습을 하기 위해 ‘특수반’ 교사가 자원해서 가르친 경우에도, 외국인 학생은 특수반에 편성되는 학생(정신지체 학생, 학습장애, 시각장애, 정서장애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자신이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게 된 사실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눈치로 알아요. 딱 보고. 처음에 오자마자 저를 ‘특수반 선생님’하고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개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반에

온 것일 뿐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서울 지역 초등학교 특수반 교사).

그런가 하면 일부 아동은 특정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인 남학생은 자연 시간에 동물의 암수를 배우고 새끼를 낳는 것을 배울 때 몽골에서 직접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활발히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학생은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고, 다음 학기에 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서 학급 친구들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활동은 외국인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애들 앞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도 그랬구, 국어시간에는 책 내용을 다른 애가 읽으면 제가 방글라데시 말로 하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셨거든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기도 했었어요. 저는 국어가 제일 재미있어요. 국어 저 잘해요. 그리구요 한자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배우면 나중에 분명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학원 다니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 처럼요. 그런데 엄마 돈 없어요. 그래서 안가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저는 학교 다니면서 1년 반만에 상장 하나 받았어요. 영어 숙제 잘 했다구요. 저요 몽골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등 했어요. 5학년 공부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런 생각도 해요. 한국 애들은 되게 좋겠다. 한국어니까 못 알아듣는 말도 없고, 내가 한국 애라면 1등 할텐데. 학원 안 다녀도 1등 할텐데……(사례 #33, 몽골, 17세, 여, 14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경우, 책(31.3%)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27.5%), 한국인 친구(25.0%),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2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설 학원(7.5%), 비디오 또는 오디오 교재(3.8%)는 매우 미미하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공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7> 외국인 아동이 공부할 때 도움 받는 대상(복수 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0)	(37)	(4)	(22)	(17)
책	31.3	35.1	50.0	27.3	23.5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	27.5	37.8	.0	22.7	17.6
한국인 친구	25.0	27.0	50.0	27.3	11.8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	22.5	27.0	.0	27.3	11.8
TV 프로그램	11.3	8.1	25.0	9.1	17.6
사설 학원	7.5	5.4	.0	9.1	11.8
비디오 또는 오디오 교재	3.8	5.4	.0	.0	5.9
기타	1.3	2.7	.0	.0	.0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7.5	5.4	.0	9.1	11.8

<표 6-8> 아동이 숙제 할 때 도움 받는 사람

(단위: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67)	(42)	(25)	(619)	(376)	(243)
부모님	37.3	35.7	40.0	39.4	56.4	13.2
친구	19.4	14.3	28.0	25.0	10.6	47.3
형제·자매	10.4	11.9	8.0	17.8	17.8	17.7
학교 선생님	9.0	9.5	8.0	1.8	1.9	1.6
학원 또는 과외 선생님	6.0	9.5	.0	5.5	5.3	5.8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5	4.8	4.0	-	-	-
기타	4.5	7.1	.0	4.0	2.1	7.0
없다	9.0	7.1	12.0	6.5	5.9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인 청소년 질문지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표 6-8>은 숙제를 하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외국인 청소년과 한국인 청소년 모두 부모님(37.3%, 39.4%), 친구(19.4%, 25.0%), 형제·자매(10.4%, 17.8%)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청소년 초등학교(37.3%), 중등학교(40.0%) 그리고 한국인 청소년 초등학교(56.4%) 모두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청소년 중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친구(47.3%)로 나타났다.

한국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학습을 위해 교사들이 자원해서 보충학습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다.

저는 아이들이 빨리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한 시간씩 한글 읽기 쓰기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은 꽤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걸 아이들 엄마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걱정이예요. 한글을 빨리 떼야 할 텐데(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일반 학급에서 같이 교육할 때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학업을 따라오기 힘들 뿐더러, 학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을 따라오지 못해 교실에서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건들을 통해 학교를 떠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만 두 명의 학생을 위해 보충반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교육청 단위별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교우관계

많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한국 학교에 가게 되면 학년을 낮추어 들어간다. 실제 나이보다 2~3 학년 낮추기도 한다. 따라서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실질적 연령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우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2~3살 어린 같은 반 한국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거나, 어린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와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담임 교사 중에는 나이를 낮추어 학년을 정한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학급 친구들에게 ‘형’으로 부르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나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배려였다. 실제 자신 보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표 6-9>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쉽다’ 36.4%, ‘대체로 쉬운 편이다’ 33.0%). 그러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1.6%, 9.1%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일 경우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것은 아래 표에서 제시되듯이 미취학 외국인 아동인 경우 다른 친구들이 학교를 간 사이에 혼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외국인 아동의 신체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처음 한국 와서 5개월 정도 집에만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왔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다들 동생이라 너무 어리고, 재미가 없었어요. 별로 안 친했어. 같이 다니던 몽골 친구랑 수업에 빠져서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친구가 욕했어요. 선생님이랑 싸우고 친구가 학교 나와서, 혼자 다니기 싫어서 같이 나왔어요(사례 #30, 몽골, 남, 17세, 2001년(14세))

입국).

일년 전에 몽골학교에서 한국말 배우다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들어가서 6학년으로 나왔어요. 같은 학교에 몽골 친구는 없었어요. (한국친구는 있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친구들이요? 3살 어린 어린애들이랑 어떻게 친구해요? 친구들 없었어요. 따(왕따)였어요.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어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놀리지도 못했어요 (사례 #16).

<표 6-9>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88)	(37)	(4)	(25)	(22)
매우 쉽다	36.4	37.8	.0	40.0	36.4
대체로 쉬운 편이다	33.0	43.2	25.0	32.0	18.2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21.6	18.9	.0	16.0	36.4
매우 어렵다	9.1	.0	75.0	12.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10>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점(복수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1)	(29)	(4)	(21)	(17)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39.4	34.5	25.0	28.6	64.7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24.1	25.0	19.0	17.6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	24.1	25.0	9.5	.0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8.5	10.3	.0	4.8	11.8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예 멀리한다	8.5	3.4	.0	19.0	5.9
기타	22.5	31.0	25.0	23.8	5.9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로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39.4%로 가장 높았다(표 6-10). 그 다음으로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자신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 다음으로 한국인 청소년이 자신을 멀리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학급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회장 부회장은 학기마다 새로 뽑구요. 반장 부반장은 한 달에 한번 씩 뽑아요. 그런데 저는 회장 부회장에 나가기 싫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를 안 뽑아주면 어떡해요. 창피하잖아요. 싫어요. 저는 안 나갈 거예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외국인 청소년들은 학급임원을 맡아 본적이 없는 경우(64.8%)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인 청소년들은 좀더 많은 학생들이 학급임원을 맡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청소년들은 반장과 부반장을 맡아 본 학생의 비율이 31.4%와 30.1%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청소년들의 경우 반장과 부반장을 맡아본 학생의 비율은 5.6%, 1.9%로 한국인 청소년과는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성격에 따라 학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도 있다. 초등학교부터 한국에서 다녀 언어에 문제가 없고 성적도 뛰어난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우도 있다.

<표 6-11> 학교에서 학급임원을 맡은 경험(복수 응답)

(단위: N, %)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4)	(38)	(16)	(617)	(376)	(241)
없다	64.8	73.7	43.8	43.3	33.5	58.5
부서 부장	7.4	2.6	18.8	22.5	22.3	22.8
분단장	5.6	5.3	6.3	14.9	20.5	6.2
반장	5.6	5.3	6.3	31.4	43.6	12.4
부반장	1.9	.0	6.3	30.1	37.0	19.5
기타	18.5	18.4	18.8	8.4	7.7	9.5

그러나 많은 이주노동자 가정 아동들은 빈곤한 가정형편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이 단칸방이나 지하실 방에서 최소한의 살림으로 5~6명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들의 집을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만난 아이들도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다가 집에 가보자는 말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일기장을 읽었던 한 몽골인 어머니는 자녀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우리 집에는 …… 돈벌러 왔으니까 방 하나 짜리인데, 지하방이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 아파트 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일기 쓰는 것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집이 좀…… 다른 친구네 집에 가면, 아파트에 살고, 부자고, 아빠도 직장에 다니고, 차 운전도 하고……(사례 #1).

한국인 친구와의 교우 관계는 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로 집중된다.

우리 집 동네에 친구들, 한국 사람 10명 정도 같이 놀아요. 여자애들이랑, 어린 남자애들이랑, 어린이 대공원 쪽에 사는데요. 거기에 동네 몽골 사람들 많거든요. 동네 몽골 친구들이랑도 놀아요. 한국 남자애가 1명 놀렸는데, 지금은 안 놀려요. 애들이 처음에 제가 몽골밥 먹는 거,

애들이 보면서 ‘너네 밥이 이상해’ 이러면서, 놀린 건 아니고,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너네 밥도 이상해’ 이러고 말았어요(사례 #14).

한국에 와서 유치원 다니고 한국 학교에 2년간 다녔어요. 같은 학교에 몽골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개네는 남자애들이라서 별로 안 친했어요. 여기(몽골학교)에 안 오면 동네친구들, 몽골 친구들이랑 놀고, 집안일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한국 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서 만난 적 있어요. 한국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네 집에는 놀러가고 같이 놀아요(사례 #15, 10세, 몽골 여자아이, 3년 전 입국).

<표 6-12>는 외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의논할 수 있는 친구들을 나라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모국인 친구 수는 평균 5.52명, 한국인 친구 수는 평균 4.01명, 제3국인 친구 수는 평균 1.24명으로 나타났다. 취학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의 평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취학 청소년들의 모국인 친구수와 한국인 친구수의 평균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취학 청소년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6-12> 외국인 아동의 한국내 평균 친구 수

(단위: N, 명)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7)	(30)	(4)	(24)	(19)
모국인 친구	5.52	5.47	7.00	5.58	5.21
한국인 친구	4.01	4.27	2.60	5.10	2.29
제3국인 친구	1.24	.74	2.75	2.05	.25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들 중에는 한국인 여학생과 교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와 면접 중에 한국 여자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영화를 보러 간 청소년도 있었다. 여자 친구를 만난 지 백일이 된 이 청소년(사례 #9)은 백일

기념으로 영화를 같이 보러 갔다. 한국 학교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한 몽골 청소년은 자신의 장래 계획을 얘기하면서 몽골에 돌아가 대학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서, 계속 한국에 왔다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계획을 말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며 웃었는데, 한국인 여자친구 때문인 듯 했다.

몽골 학생 중에 몽골학교에 다니면서 한국학교로의 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때로 불량 청소년들과 함께 다니기도 한다.

3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몽골학교를 1년 반 정도 다녔고요. 이번 주에 서류가 다 끝나면 한국학교 중3으로 들어가려구요. 엄마, 아빠가 한국학교 다니길 위해서 1년 전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 뒤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1년 전에 한국애들이랑 놀았어요. 이제는 안 놀아요. 나쁜 애들이었어요. 학교 안 다니고…… 놀이터에 앉아있는데, 여자애들이 와서 담배 달라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몽골 친구들 10명 정도랑 한국 애들이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놀았어요. 그런데 집이 멀어서 많이는 못 만났어요. 놀 때는 돈이 없다고 우리한테 내라고 해서, 만날 우리가 돈 냈어요. 3개월 동안 같이 놀다가 이제 안 놀아요. 한국애들이랑은 친해지고 싶어도 못 친해요(사례 #32, 몽골, 남, 18세, 2000년 15세 때 입국,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준비).

몇몇 아동들은 한국 친구들이 자신들이 돈을 쓰면 같이 놀아주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땅한 친구가 없는 아동들, 특히 청소년들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한국친구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친구들은요, 돈 있으면 놀아주고,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사례 #12).

다.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들 중 상당수는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은 학생들과의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급식을 먹을 때 음식 문화의 차이로 외국인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해 주기도 한다.

선생님이 공부시간에 말이 틀리면 가르쳐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학교친구들보다 전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랑 듣는 거 쓰는 거 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대답할 때 어쩔 때 까먹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처음 왔을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무작정 외웠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안녕 하세요 밖에 몰랐어요. 처음 왔을 때 교감선생님한테도 안녕 하세요 밖에 못했어요. 그러다 4개월만에 다 배웠어요. 그때 1학년 때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었는데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 선생님은 준비물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교장선생님은 좋아요. 조회 끝나고 교실에 들어 갈 때 교장선생님이 ‘공부 잘해라’하고 말 하셨어요. 3학년 선생님은 제가 ‘원인과 결과’ 잘 몰라서 공부 끝난 다음에 친구 몇 명이랑 남아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선생님 좋아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 입국).

6학년까지는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중학교 들어와서는 선생님이 제가 외국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안하고 그러면 똑같이 맞고 똑같이 대해요. 특별한 대우보다는 모르고 똑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알고 잘해주면 애들이 재만 잘해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몇 명만 알아요. 다른 선생님은 몰라요. 어쨌든 선생님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1세 입국)

3학년 때 선생님이 급식 먹을 때 남겨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은 잘 먹는데 처음에는 급식에서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지금도

멸치 같은 건 남겨요. 3학년 때 조금 먹고 남기면, 배고프다고 선생님께서 뭐 사주셨어요(사례 #11).

우리 학교는 다 급식으로 점심을 먹잖아요. 제가 미리 못 먹는 음식 있다고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음식 나오는 날에는 급식날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돼지고기라고. 먹지 말라고. 만약에 짜장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돼지고기 햄 들어있으니까 선생님이 소고기 짜장 제 걸로 따로 시켜주기도 하구요. 그래서 별로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아요(사례 #18).

몽골인 학생의 경우 한국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경우 한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교사가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한국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받아들였을 때,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들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가 한국어를 못해 개인지도가 필요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를 자신이 맡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개별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교사들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경제 형편도 고려해서 학교에 내야 할 소풍비용이나 학교 운영지원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다.

소풍 갈 때, 10만원이 드는데, 비싸다고 못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공짜로 가게 해 줬어요(사례 #15).

선생님이 따로 한국말은 안 가르쳐 줬어도 다른 건 도와줬어요. 급식돈 내주고, 공부, 문제집 도와주고(사례 #30).

<표 6-13> 교사에 대한 만족도

(단위: N, 점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60)	(39)	(21)	(610)	(369)	(241)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평균	88.6	88.5	88.9	71.7	79.6	59.5

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의 점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표 6-14> 교사에 대한 불만의 내용(복수 응답)

(단위: N,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40)	(26)	(14)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	15.0	7.7	28.6
공부만 강요한다	10.0	11.5	7.1
자주 때린다	5.0	3.8	7.1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2.5	3.8	.0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2.5	3.8	.0
기타	65.0	69.2	57.1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외국인 청소년의 88.6%, 한국인 청소년의 71.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 15.0%, ‘공부만 강요한다’ 10.0%, ‘자주 때린다’ 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공부만 강요한다’가 11.5%, 중등학교의 경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6-15>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4)	(36)	(18)
있다	14.8	11.1	22.2
없다	70.4	75.0	61.1
모르겠다	14.8	13.9	16.7
계	100.0	100.0	100.0

<표 6-16> 교사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8)	(4)	(4)
심한 체벌	50.0	50.0	50.0
부당한 차별 대우	12.5	.0	25.0
기타	37.5	50.0	25.0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거의 없는 것(7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4.8%로 약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가 <표 6-16>이다. 심한 체벌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한 차별 대우라는 응답이 12.5%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는 37.5%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 심한 체벌(50.0%, 50.0%)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6-17> 교사가 한국인 학생들과 달리 대한 경험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54)	(38)	(16)
있다	16.7	7.9	37.5
없다	83.3	92.1	62.5
계	100.0	100.0	100.0

<표 6-18> 교사가 외국인 아동을 차별한 이유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8)	(3)	(5)
외국인이라서	75.0	100.0	60.0
공부를 잘 못해서	12.5	.0	20.0
기타	12.5	.0	20.0
계	100.0	100.0	100.0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의 경우에 '있다'는 응답이 37.5%로 초등학교의 경우(7.9%)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7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공부를 잘 못해서'라는 응답이 12.5%로 조사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에서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부를 잘 못해서'(20.0%)와 '기타'(20.0%)라는 응답은 중등학교에서만 나타났다.

많은 교사들이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입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서운한 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인 아동들 여럿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동들을 면접할 때, 옆에 있던 한 몽골 아동이 “저기 빈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하는 선생님의 말투를 비꼬면서 흉내내자, 모든 아이들이 웃는 일이 있었다. 학교에 처음 간 날 선생님의 태도를 흉내 낸 것이다.

선생님은 말로만 도와준다고 그래요. 급식이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밥이랑 김치, 고기만 먹어요. 지난 번예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해서 한번 먹었다가 토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냅뒀요(사례 #12).

(한국아이들이 놀리거나 시비를 걸어)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은 몇번 혼내다가,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사례 #12).

실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의 면접에서 지적된 애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이 없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개별지도를 할 수 없고, 이들이 수업 진도를 따라 오지 못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 둘째, 학부모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 학부모와 상의할 일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올 수 없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셋째, 초등학생의 경우 준비물을 거의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넷째, 학교에 들어온 후에는 학교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장기 무단결석을 하기도 한다. 행정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많은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는데, 무단결석의 경우 집안 일을 하거나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못 오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등교를 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은 등교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과 정상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데 이런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중요

한 문제로 제기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 학업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와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실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몇몇 학생들은 교사들이 말로만 도와준다고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겪는 놀림과 따돌림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3. 놀림과 따돌림

외국인 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놀림의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인과 인종적 특성이 다른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많은 경우 신체적 차이 특히 피부색과 관련해서 놀림을 받았다. 검은 피부를 가진 동남아 출신 아동은 피부색 때문에 ‘깜둥이’나 ‘아프리카’라고 놀림 받거나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놀림 받은 경험이 많다.

학교에서 외국인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의 비율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표 6-20>에서 나타났다.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서’(46.7%), ‘특별한 이유 없이’(40.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33.3%)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서’라는 응답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중등학교에서는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가 3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6-1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60)	(38)	(22)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30.0	28.9	31.8
그런 적 없다	70.0	71.1	68.2
계	100.0	100.0	100.0

<표 6-20>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이유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30)	(18)	(12)
외국인이라서	46.7	61.1	25.0
특별한 이유 없이	40.0	50.0	25.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3.3	33.3	33.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6.7	5.6	8.3
건방지다고	3.3	.0	8.3
잘하는 것이 없어서	3.3	.0	8.3
기타	3.3	5.6	.0

<표 6-21>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한 피해

(단위: 점수)

	외국인 청소년			한국인 청소년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전체	초등 학교	중등 학교
	(59)	(33)	(19)	(605)	(365)	(240)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23.1	19.7	28.6	17.0	22.4	8.9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	15.0	15.2	14.7	15.1	16.6	13.0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4.4	13.6	15.8	25.9	25.1	27.1

주: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점수는 “전혀 없었다”에 0점, “1~2번”에 50점, “3번 이상”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난 학기에 겪은 일들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에 23.1점으로 세 질문 문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에는 한국인 청소년 25.9점으로 세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1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는 질문에는 외국인 청소년 15.0점, 한국인 청소년 15.1점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왔을 때 5, 6학년 오빠들이 많이 놀렸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학교 가기도 싫고 만날 울고 그랬어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친구들은 놀리는 일이 없어요. 저보고 놀리고 하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에요.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5학년, 6학년 오빠들이 저한테 막 욕하고 실내화 주머니로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르고 그랬어요. 저번에요 6학년, 중학생 오빠들이 놀렸어요. 아프리카 감동이라구요. 그런데 우리 반 회장이요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오빠들 학교에서 불러서 혼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안 그랬어요. 친구들은요 방글라데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 있는 거 다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학교 친구 생일인데요 케익 사왔잖아요. 같이 나눠 먹으라구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케익 있냐구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냐구요. 그래서 말했어요. 다 있다가구요. 그 친구랑 싸우지는 않았어요(사례 # 18).

피부색을 상징으로 하는 인종 차별과 경제력에 근거한 민족 또는 국가 차별은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같은 학급에서 공부한 미국인 백인 학생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상이한 대우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에게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의 현실을 경험케 한다.

(혹시 같은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네. 있어요. 그 친구는 미국사람이에요. 개는 미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얼굴이 하얗잖아요. 미국사람이니까. 애들이 개는 많이 안 놀렸어요. 개는 미국말도 잘하니까 별로 놀림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개는 근데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구 몇 달 다니다 미국 갔다가 다시

와서 몇 달 있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같은 외국인인데 개는 저보다는 놀림을 덜 받는 것 같아요(사례 #18, 방글라데시, 11세, 여, 8세에 입국).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몽골 출신 아동은 주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거나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놀림을 받는다. 또한 한국에 돈 벌러 온 불법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죄책감 없이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저희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니네 나라에 차 있어? 그래서 다 있어. 다 있어. 하면서 신경질 났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 없는 나라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는 나라 봤어?(사례 #18, 방글라데시, 11살, 여, 8세 입국).

거지라고 놀려요. 짹 남자애가 저보고 거지라고 놀려서 울었어요. 남자애들이 자주 놀렸어요(사례 #15, 몽골, 10세, 여, 7세 입국).

친구들이 '너 몽골에서 왔지? 한국에 왜 왔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랬어요(사례 #34, 몽골, 15세, 여, 12세 입국).

피부색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기도 한다.

2학년 때요, 여자 친구가요, 제가 연필 세트를 샀었는데요. 그 다른 친구가 한 명 봤어요. 제 연필 세트를 훔쳐 가는 걸,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왜 훔쳐갔냐고. 그 친구가 거짓말했어요. 한 훔쳐갔다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봐야 막 싸우고 좋을 거 없으니까. 그래도 저는 좀 억울했어요. 제가 얼굴이 까맣고 그래서 우습게 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좀 서러웠어요(사례 #18).

○○초등학교 5학년에 다녀요. (몽골학교를 3년 다니다가 한국 학교에 온지) 2달 됐어요. (같은 반 친구들이) 동생들이라서(실제 14세 여자아이임) 별로 안 친해요. 애기도 안 하구요. 무시해요. 귀걸이 끼면 달라고 하고, 안 준다고 하면 여러 명에서 협박해요. 선생님은 동생들이니까 니가 봐줘라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만나면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없다고 하면 “맞고 싶냐” 이래요. 내가 맨날 참으면서 웃으면서 대하니

까 무시해요. 집에 가는 길에 만나거든요. 그럼 여자애들이 돈 달래요. 남자애들은 청소하는데 빗자루로 머리 때리고, “몽골 새끼 거지, 우리나라에서 돈 벌지 말고 니네 몽골로 가” 이래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은 몇 번 혼내다가,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은 손을 봐줬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때리면 안 되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씨팔년, 씨팔 눈을 어따 두고 다녀!” 이래요(사례 #12, 14세 몽골 여학생, 11세 입국).

몽골, 몽골 하면서 막 밀치고 놀렸어요(사례 #10, 몽골, 11세, 여, 9세 입국).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계단에서 아이들에게 밀려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 몽골인 학생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학생은 한국 학교에서 나와 몽골 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사건이 한국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였는지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지만, 부모나 학생 모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학생은 사건 자체를 말하지 않았고, 부모는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 사건이 한국인 아동들에 의해 집단 따돌림을 받던 아이가 계단에서 떠밀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의도적인 외국인 기피나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국 학생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을 지도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 싸움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예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나 교사들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한국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문화교육, 문

화간 이해교육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한국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 몽골 학생의 경우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원(元)의 고려 침공과 대몽항쟁과 같은 주제를 공부할 때, 한국 학생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기도 한다.

사회시간에 몽골에 대해 선생님이 말했어요. 몽골이랑 한국이랑 싸워서 몽골이 졌다고 하니까요. 애들이요, 몽골이 졌으니까……. 음……, 그거 뭐라고 하지? 애들이 무시하고, 너네 몽골이 우리 한국보다 더 낮다고 그래요(사례 #12, 14세 몽골 여학생, 2001년 입국).

몸집이 큰 남학생들은 때로 방과후에 놀이터나 골목에서 주변의 불량배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기도 한다. 몇몇 경우는 돈을 빼앗기기도 한다. 특히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크고 한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몽골인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

한국에서 나쁜 거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집 위에 사는 형들이 이리와 보라고 해서 갔는데, 돈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때렸어요. 발로 막 차구요. (한국)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괴롭혀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 괴롭힌 한국애들 반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학교 관뒀어요(사례 #7).

한국 중학교에 다니다가 싸우고 나왔어요. (한국) 여학생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와서 왜 여자 꼬시냐고 시비 걸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한국학교에 한달 다니다가 관뒀어요(사례 #9).

집 근처 동네에서 한국애들하고 맨날 싸웠어요. 한국애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가!” 그래요. 외국인이라서 가라는 가봐요. …… 지하철에서 몽골말 하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고, 몽골서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뭐하냐? 몽골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사례 #5).

방과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모국인 친구들과 돌아다니다 지역의 불량 청소년들과 시비가 붙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역시 동일 시간대에 지역을 돌아다니는 불량 청소년들과 조

우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요, 롯데리아에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그랬어요. …… 화장실에서 ……저랑요, 친구랑 손 씻는데 그 애들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저랑 친구가 몽골말로 얘기하는 거 보구요. “외국인이야!” 이러면서, 왜 화장실 보냐(구경하냐)고 막 놀렸어요. 그리구요, 중학생 언니들이, 3번이나 돈 달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막 뒤지려고 했어요. 없다고 하구선, 가니까 뒤에서 막 욕했어요(사례 #14).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피해 아동은 전체의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가족·친척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한국인 친구(27.6%), 성직자, 교사, 모국인 친구(각각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과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 모두 가족·친척이라는 응답이 각각 44.4%,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2>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경험

	(단위: N, %)		
	전체 (32)	초등학교 (19)	중등학교 (13)
있다	93.8	94.7	92.3
없다	6.3	5.3	7.7
계	100.0	100.0	100.0

상담자 중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가족·친척이라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국인 친구 11.5%, 한국인 친구와 교사 각각 7.7%,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과 성직자가 각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3> 피해를 상담한 사람(복수 응답)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29)	(18)	(11)
가족·친척	48.3	44.4	54.5
한국인 친구	27.6	38.9	9.1
성직자	13.8	16.7	9.1
교사	13.8	16.7	9.1
모국인 친구	13.8	11.1	18.2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10.3	16.7	.0
제3국인 친구	10.3	11.1	9.1
기타	17.2	16.7	18.2

<표 6-24> 가장 도움이 된 상담자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26)	(16)	(10)
가족·친척	53.8	56.3	50.0
모국인 친구	11.5	12.5	10.0
한국인 친구	7.7	6.3	10.0
교사	7.7	6.3	10.0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3.8	6.3	.0
성직자	3.8	6.3	.0
기타	11.5	6.3	20.0
계	100.0	100.0	100.0

<표 6-25>는 상담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물어 본 것이다. 48.0%가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8.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의 경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87.5%로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25> 상담의 도움 정도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25)	(16)	(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0	6.3	2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2.0	6.3	22.2
약간 도움이 되었다	48.0	50.0	44.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28.0	37.5	11.1
계	100.0	100.0	100.0

<표 6-26>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단위: N,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24)	(18)	(6)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29.2	27.8	33.3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2	38.9	.0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8.3	5.6	16.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4.2	5.6	.0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4.2	5.6	.0
야단 맞을 것 같아서	4.2	.0	16.7
기타	20.8	16.7	33.3
계	100.0	100.0	100.0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가 <표 6-26>이다. 그 이유로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9.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로 8.3%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취학의 경우에는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취학과 중등학교 취학의 경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 경우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집에 와서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가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부모의 마음만 아프게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한테 그런 문제는 제일 먼저 얘기해요. 엄마한테도 처음에는 얘기했었는데요. 엄마는 딸이 학교에서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다가는 별로 애들이 놀린 얘기는 안 해요(사례 #18).

학교에서 아이들간에 벌어지는 놀림과 따돌림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지구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 민족간의 이해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와 가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실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해야 할 새로운 사회의 전조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여러 민족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VII. 근로청소년의 생활

1. 외국인 청소년의 취업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취업하는 문제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아동인권 협약과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모두 이해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청소년들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경우와 부모와 재결합한 후, 학업을 계속하려 했는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내는 자녀들이 차선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첫째,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5년을 공부한 후, '고등학교'(high school)라 부르는 중고등 교육을 5년간 받는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서 15세가 되면 대학(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부모가 한국에 노동이주를 한 경우, 15세가 된 자녀들을 노동이주 시키는 경우는 방글라데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추가 입국시킨 경우, 한국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기간이나 학교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때 청소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 몽골인 남학생은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자 일을 시작했는데, “엄마 혼자 일하는 게 미안해서 도와드리려고” 일을 시작했다. 대부분 15세 이상의 몽골 청소년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몽골인 학교에서 몽골어를 가르치는 한 면접대상자는 15살이 넘는 몽골 아동 중 약 120명 정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2. 취업실태

근로 청소년들은 정식 취업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었다. 직장을 구했을 때는 정식으로 취업해서 일하지만 직장을 쉬게 되면 친구들 소개로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다. 직장을 구할 때 나이를 정직하게 말하면 구할 수 없을 듯해서 체격이 큰 청소년은 나이를 19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자는 고용주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자녀들 중 상당수는 브로커가 여권을 갖고 귀국하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표 7-1> 현재 직업과 구직 희망 여부

	전체	(단위: N, %)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58)	(22)	(2)	(16)	(18)
전업 직업이 있다	13.8	4.5	.0	.0	38.9
파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9.1	.0	.0	11.1
없다, 전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17.2	.0	100.0	25.0	22.2
없다,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5.2	9.1	.0	6.3	.0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56.9	77.3	.0	68.8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1>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현재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질문의 응답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현재 직업 없으며 취업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직업은 없지만 전업직업을 구한다 17.2%, 전업 직업이 있다 13.8%, 파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없다,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5.2%로 나타났다. 취학 청소년의 경우는 대부분 현재도 직업이 없으며, 취직할 생각이 없다(77.3%, 68.8%)고 응답했으나, 취학중인 중등학교 청

소년의 경우 25.0%는 현재 직업이 없지만, 전업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학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전업이나 파트타임의 직업이 있거나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미취학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이 있거나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종류를 질문한 것이다. 이 질문에 응답으로 학생이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장노동자(20.7%), 실업자(6.9%), 그냥 논다(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취학과 중등학교 취학에서는 학생이라는 응답이 각각 50.0%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학교 미취학의 경우에는 공장 노동자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7-2> 현재 하는 일

	전체 (58)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20)	(3)	(17)	(18)
학생	27.6	50.0	.0	35.3	.0
공장노동자	20.7	5.0	.0	11.8	50.0
실업자	6.9	5.0	33.3	5.9	5.6
그냥 논다(구직 노력 없음)	5.2	10.0	.0	5.9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3.4	.0	.0	11.8	.0
건설노동자	3.4	.0	.0	.0	11.1
간병인	1.7	.0	.0	5.9	.0
농림축산업노동자	1.7	.0	33.3	.0	.0
기타	29.3	30.0	33.3	23.5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직종과 노동조건

가. 전업 취업자

노동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정착하자마자 바로 직장을 구한다.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 외국인노동자처럼 동료들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임금이 성인에 비해 적은 경우도 많다. 연구자가 만난 청소년 노동자들은 주야간 교대 근무시 야간작업을 하는 것이 특히 힘들다고 했다. 일을 마치고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대부분 낮에 숙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는 방글라데시에서 ‘중고등’ 학교를 마친 후 브로커를 통해 15세에 한국에 입국했다. 안산지역의 플라스틱 사출(射出, injection) 공장에 취업해서 3년 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소년은 키도 작고 어려 보였지만, 한국인 고용주는 특별히 나이를 묻거나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에 당연히 18세 이상으로 생각했고, 아버지의 친구인 방글라데시인의 소개를 부모의 동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마련해 준 단칸방(원룸)에서 함께 일하는 방글라데시인과 살고 있다.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함께 있는 경우가 없다. 회사에는 한국인 사장과 부장 2명과 자신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노동자 2명만 있다. 일은 12시간씩 주간과 야간을 교대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한 달에 80만원을 받다가 지금은 120만원을 받고 있다. 월급에서 90만원을 아버지에게 주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는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아버지를 방문해서 함께 지낸다.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코피를 흘리곤 했다.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오전에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하다(사례 #26).

친구들이랑 놀다가(1년 동안) 8개월 전에 1달 동안 일했어요. 미싱공장에서 시다(보조자, helper)로 일했어요. 친구들이 소개해 줬는데, 매일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80만원 받았어요(사례 #8).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적응을 못한 청소년들은 부모도 취업하기를 원하고 청소년들도 일자리를 갖기를 원한다.

12살에 몽골에서 입국한 ○○은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한 달만에 아이들과 싸움하고 학교를 나왔다. 시비 거는 아이를 때렸다가 싸움이 커져서 학교를 관두고 집에서 놀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전단지를 붙이기도 했고,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도 일했다. 지금은 ○○금속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 지퍼 만드는 공장인데 일은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한 달에 80만원을 받고 있다. 시다(helper)로 일할 때도 80만원을 받았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다. 일 시작할 때 사장님에게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사례 #9).

몽골 청소년들은 체격이 커서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 실제 몽골 청소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고용주들은 그들의 나이를 물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 아들(15세)이 몸이 너무 커서 학교에 못 갔어. (무슨 뜻이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사실은 여권이 없어서 못 간 건데, 여권이 있었더라도 몸이 너무 커서…… 어떤 학교를 한 번 다니려고 했는데, 애들이 “몇 살이냐?”고 놀라고 해서, 그래서 일 하러 갈 때도 19살이라고 이야기하게 시켰어. (옆에 있던 다른 몽골 여성이 대화에 끼어 들면서) 나도 아기가 여기 16살인데 키가 크니까 20살이라고 해서 공장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아저씨들이 “너 결혼했어? 와이프(wife)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했대요(사례 #3).

나. 파트타임 취업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전단 돌리기, 스티커 붙이기, 주유소 주유원과 같은 일들을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해 낮다. 또한 정규직 외국인노동자들이 주거 공간과 식비를 보조받는데 비해 이들은 시간이나 작업량에 따라 계약된 임금 외에는 수입이 없다.

아마르는 13살 때 한국에 왔다. 부모님은 1999년에 입국했다. 아는 누나(브로커인 듯)랑 같이 입국했다(사례 #8).

처음에는 몽골학교에 다녔는데 1년 후에 그만 뒀어요. 내가 학교 다니러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온 거니까. 일한 지는 한 일년 됐어요. 한달 정도 하다가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돈 많이 주는 데서는 한 달에 160만원도 받았어요. 지금은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해요. 하루에 2000장 정도를 붙이는데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가 넘어야 끝나요. 아르바이트라서 하루에 4만원 받아요. 이 교회 다니는 몽골 애 중에 5명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 15살이고 한 명만 16살이에요. 봉투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고 한 80만원 받았어요. 너무 무거운 것을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그만 두었어요(2001년 입국, 13세 입국, 현재 16세).

4. 고충

가. 학습욕구

근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다.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몽골 남자 청소년도 몽골에 가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밤에 매형에게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나. 방황과 청소년 문제

15세 이상의 근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성인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서 찾아 온 아이 중에 17살 된 몽골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학교를 몽골학교만 다니고,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한 달 반 전에 몽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를 몽골 학교 이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7살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성인의 복장과, 성인의 외모를 갖추는데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른이 보기에, 센터에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기에 썩 좋진 않았죠. 그래서 어른들이 몽골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분명히 아이들인데도 화장을 하고 오고, 아이들이 성인 같은, 그러니까 애답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게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 문화가 아니라, 어른들로 방치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19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이 낳는 문제로 상담하러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를 보고 ‘청소년 문제’라고 봐야겠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늦게 까지 다 일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에 안 다니고, 그런 게 교육적 방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서울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어린 자녀보다는 12살 이후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규적이든 비정규적이든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생각에 정말 심각한 것은 어린 아이들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보다도 청소년기에 접어든 12살 이후 14살에서 17살 내지는 18살 되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아이들이 자의 내지는 타의에 의해서든 직업현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 중 한 친구가 이번 주부터 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한다고 연락이 왔고, 매번 점심시간마다 전화가 오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 타고 오라고 해서 누가 데려다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우선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는 노동현장에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하는 것, 그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데 엄마, 아빠가 설득하기를 “우리 3월에 몽골에 갈 거다,” “가서 공부하면 된다,”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는 벌써 2년을 놀았거든요. 그동안 부모는 무엇을 했는지, 부모는 교육을 위해 애쓰지 않아요. 분명히 ○○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서울지역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활동가).

VIII.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보장 대책

외국인노동자 아동 인권 중에서 평등권과 자유권의 영역은 출신국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부모의 나라로 보내지고 있다. 양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의 영역 중 학습권의 보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그 원인을 구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아동들이 한국인 아동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따돌림당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그 각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아동의 양육권 보장

부모가 모두 외국인노동자인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하도록 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부모는 아이의 출산을 한국주재 자국 공관에 신고하여 영사의 확인을 받은 후 출생증명서를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합법적 체류를 허가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가 미등록노동자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출생신고를 하기 힘들다.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통지의무 때문에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호적법 제4장 '신고'의 제2절 '출생'에 따르면, 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서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신고 기간을 넘기더라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녀를 출생신고 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보내면 외국인등록 절차와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출국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와 범칙금을 고려하여, 상당수 외국인노동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신생아 때 본국으로 보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다.

2.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2003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에 걸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록 조치 이후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그 부모의 체류자격 변동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다. 본 조사연구 대상의 대부분인 불법체류자 아동은 제도 개선 노력(고용허가제 실시)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등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는 교체순환(rotation) 정책을 취하고 있어 가족단위 이주가 허용되지 않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단위 이주자들이 허가받은 사증 기간이 끝나면 모두 출국할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앞으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거나 극히 소수의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국적·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2003년 1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는 중학교까지의 취학이 보장되고

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있으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한국 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정부가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에게도 국내 학교를 개방했고, 2003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까지 했지만, 30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중 ‘취학연령대 아동’ 1천여 명 중 205명만 취학하고 있을 뿐이다(표 1-1 참조). 취학연령대 불법체류자 아동 중 약 80%는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¹⁾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취학 허가가 났지만,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를 입학시키느냐 마느냐는 실제로 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학교측에선 종종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 자녀를 받기를 꺼려한다. 즉, 현장에서는 아직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행정지침이 겹돌고 있다. 학교장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행정지침에 의해 학생들의 입학을 결정하고 싶어 한다. 학교장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행정지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입학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아동의 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3년 9~11월에 합법화되어 취업비자를 받은 가족의 아동 중에서 취학하지 못한 아동이 있는지 점검하여 교육제도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 출생한 어린이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자체가 없는 탓에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약 2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취학전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일부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한겨레 2003·9·25 참조).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제도권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나 사회에 외국인노동자 아동을 위한 기본적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학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가가 외국인노동자 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후견 교사를 붙여주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요컨대, 체류자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미취학인 아동 및 학생의 취학을 촉구해야 하며, 언어·문화의 차이로 인한 취학차별을 배제하고 수용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모든 아동들이 체류자격·국적의 유무 등을 이유로 해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실정법으로 보장된 것이며, 각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자의적 행정처분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것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이 출신국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재학중인 아동을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하는 행위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즉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신중하고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 아동 또는 그 가족이 강제 출국 대상이 된 경우, 그 시점을 학기가 종료한 시기로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한다(移住労働者と連帶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2002 참조).

한편,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아동기를 보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아시아지역 일꾼으로 키운다는 자세를 가질 준비도 하여야 한다.

3. 국제이해교육의 강화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아동 중에는 한국 친구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신국별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수를 조사하여, 같은 국가 출신 아동들의 만남과 상호 교류 주선,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 학교에 취학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국내 거주 외국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식 초등학교·중학교’에 취학하는 것 등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²⁾ 아동과 부모의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좋다.

셋째, 한국학교에 취학하게 될 경우,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실제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동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맞게 학년을 배정 받아 일정 기간 학습을 한 후, 수학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학년을 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제이해교육 교과과정(curriculum)을 개발해야 한다(이삼열 외, 2003).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다문화 교

2) 저소득층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 개설 시도는 있었으나 이내 좌절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은 2003년 7월 25일 저소득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 3월 서울 대학로 국제교육진흥원 건물 안에 ‘지구촌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촌학교는 외국인 교사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매일 해당국 교과, 한국어, 음악, 체육 등을 지도하는 ‘다중언어 학교’인데, 국내 외국인학교는 등록금이 비싸고 일반 초등학교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에 꺼려 저소득층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한겨레 2003·7·26). 그러나 국제교육진흥원은 2003년 10월 연간 5~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하기 힘들고, 수요자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일요 지구촌학교’로 바꿨다고 발표하였다. 매일 문을 여는 ‘정식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로 번듯하게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에만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요 학습동아리’로 전락하였다(한겨레 2003·10·27).

육, 인권존중, 세계화(globalization)와 관련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단위 교육청에서 교재와 교수법 등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재³⁾ 중에서 우수 교재를 선정하여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에 인종·민족 차별에 대한 내용 포함
-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고민과 연구, 교육 필요
-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 혹은 우수성을 강조한 교육은 필히 재고해야 함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사례를 찾아보고, 어려운 생활상을 이해하도록 함

외국인노동자 아동이 한국 학교에 가서 따돌림당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인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와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에 녹아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분위기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든 상황이다(Seol and Han, 2004).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부모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인 가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인인 국제결혼 가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 있으면 국적취득과 사회보장, 교육 등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다른 외모나 피부색 등에 따른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질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가 감당해야 할 변화의 추세를 고려한 다문화·다인종·다민족과 관련된 교육 방안이 교육행정과 현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개발한 국제이해교육 중학교 교재가 출판되었고, 고등학교 교재는 인쇄중이다(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1, 2004).

참고문헌

- 김정래. 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 김중섭 편. 2002.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진주지역 사례연구』. 오름.
- 문화일보. 2002. 「불법체류자와 ‘교육의 그늘’」. 《문화일보》 2002·12·19.
-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노동력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겨울):819~849.
- 박충환. 1994.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작업장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 학위 논문.
- 법무부. 2000a. 「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 법무부 보도자료 2000년 5월 24일.
- 법무부. 2000b. 『외국인을 위한 출입국관리 안내: 입국·체류·출국』.
- 새천년민주당 외국인보호대책기획단. 2000. 『외국인노동자 보호대책 보고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a.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b.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pp. 16-28.
- _____. 2001a. 「차별과 연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창작과비평》 29(2): 358~374.
- _____. 2001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53~87.
- _____. 2002a.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통일 준비」. 호산 김경동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직업과 노동의 세계』. 박영사. Pp. 289~310.

-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53~68.
- _____. 2002c.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봄):200~223.
- _____. 2002d.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 세계》 2:345~356.
- _____. 2002e. 「왜 한국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지 않는가?」. 《아웃사이더》 9:158~174.
- _____. 2003a.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Pp. 76~99.
- _____. 2003b. 「인권규범의 전지구화와 외국인력 정책」. 화양 신용하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사회발전연구』. 나남출판. Pp. 391~418.
- _____. 2003c.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국제노동재단.
- 설동훈·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사상》 14(3):28~52.
- 설동훈·최홍엽·한건수. 2002.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효성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심은정. 2002.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차별」. 《문화일보》 2002·12·18.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중심으로』. 내일을 여는 책.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 침해의 현장보고』.
- _____.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01. 『더불어 사는 세상배우기』.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_____. 2004 『국제이해교육 고등학교 교과서(가제)』. 일조각.
- 유명기. 1995. 「외국인노동자 차별의 구조」. 《녹색평론》 21: 69~82.
- _____. 2002a.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 _____. 2002b. 「외국인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12~35.
- UNDP 한국대표부. 1999. 『인간중심의 세계화: 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9』.
- _____. 2000. 『인권과 인간개발: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0』.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복지동향》 53:69~79.
- 이란주·노대명. 2000. 「세계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인권: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찾아서」. 《황해문화》 29:295~321.
- 이삼열·전숙자·정두용·조남심·한경구·허숙·김다원·박상용·김종훈. 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사람 생각.
- 이왕준. 2000.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희망과 건강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
- 이육정. 1994.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 2000. 「'한국취업'과 중국 조선족의 사회 문화적 변화: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임현진·설동훈. 200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 전수현. 2002.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 서울대

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정금자. 2000.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pp. 508~521.

조성원. 2000.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홍엽. 2000. 「UN 이주근로자 권리조약과 한국의 이주근로자」. 한국인권재단 편, 『21세기의 인권 II』. 한길사. pp. 795~841.

PD 리포트. 2003. 「학교에 가고 싶어요!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 《EBS PD 리포트》 2003·2·27.

한국법제연구원. 1994. 『외국인의 법적 지위: 해설과 법령』. 한국법제연구원.

한금섭. 2003.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의 문제」. 《복지동향》 53:17~19.

한현숙. 1997. 「한국 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199~221.

_____. 1997. 「외국인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문제논집》 13:99~130.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移住労働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2002. 『多民族・多文化共生社会に向けて: 包括的外国人政策の提言, 2002年版』. 東京: 移住労働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김경미 역. 2002.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서: 포괄적 외국인 정책의 제언, 2002년판(일본)』. 민중사.)

Aleinikoff, T. Alexander. 2002.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 Geneva,

-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Asian Migrant Centre. 1999. *Asian Migrant Yearbook 1999: Migration Facts, Analysis and Issues in 1998*. Hong Kong: AMC.
- Bauer, Joanne R., and Daniel A. Bell (Eds.). 1999.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Robin. 1987. *The New Helots: Migrant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 Corrigan, Philip. 1977. "Feudal Relics or Capitalist Monuments? Notes on the Sociology of Unfree Labour." *Sociology* 11(3):435~463.
- Gurowitz, Amy. 1999. "Mobilizing International Norms: Domestic Actors, Immigrants, and the Japanese State." *World Politics* 51:413~445.
- Han, Geon-Soo. 2003. "African Migrant View on Korean Culture and Society." *Korea Journal* 43(1), in press.
- Joppke, Christian. 1998. "Why Liberal States Accept Unwanted Immigration." *World Politics* 50:271~293.
- Kershaw, Sarah. 2001. "Union Drive Collides With Korean Grocers." *New York Times*, February 15, 2001. (Available from <http://www.nytimes.com/2001/02/15/nyregion/15GROC.html>. Internet; accessed February 16, 2001).
- Linard, André. 1998. *Migration and Globalization: The New Slaves*. Brussels: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 McGuire, William J., and Claire V. McGuire. 1988. "Content and Process in the Experience of Self."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97~144.
- Miles, Robert. 1987. *Capitalism and Unfree Labour: Anomaly or Necess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Portes, Alejandro, and Rubén G. Rumbaut.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epublic of Korea. 1998. *Tenth Periodic Report of States Parties Due in 1998*:

- Republic of Korea*. 01/04/98. CERD/C/333/Add.1.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_____. 2002. *Eleve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Rumbaut, Rubén G, and Alejandro Portes. 2001. *Ethnicities: Children of Immigrants in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ol, Dong-Hoon, and Geon-Soo Han. 2004. "Foreign Migrant Work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 *Harvard Asia Quarterly* 7(2).
- Seol, Dong-Hoon, John D. Skrentny, and Catherine Lee. 2002.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s: A Comparison of Migrant Workers and Women's Rights in South Korea." Pp. 139~163 in *Korean Studies Forum*, Volume 1, edited by Hyuk-Rae Kim.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Soysal, Yasemin N. 1994. *The Limits of Citizenship*.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1-1. 조사 결과: 외국인 아동 조사

A. 응답자의 신상정보

A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남자	52.0	47.6	77.8	48.0	54.5
여자	48.0	52.4	22.2	52.0	4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2.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1987	19.4	.0	.0	24.0	59.1
1988	13.3	4.8	.0	12.0	36.4
1989	10.2	9.5	.0	20.0	4.5
1990	12.2	9.5	22.2	24.0	.0
1991	17.3	28.6	33.3	8.0	.0
1992	12.2	16.7	33.3	8.0	.0
1993	7.1	11.9	11.1	4.0	.0
1994	5.1	11.9	.0	.0	.0
1995	2.0	4.8	.0	.0	.0
1996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3.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방글라데시	3.1	2.4	.0	8.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카자흐스탄	2.0	4.8	.0	.0	.0
몽골	87.8	83.3	88.9	92.0	90.9
네팔	1.0	.0	11.1	.0	.0
파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A4.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모국	98.8	100.0	100.0	100.0	94.1
제3국	1.2	.0	.0	.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5.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입국시기를 알려주십시오.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0)	(40)	(7)	(23)	(20)
1998	2.2	2.5	.0	.0	5.0
1999	2.2	.0	.0	4.3	5.0
2000	21.1	27.5	14.3	26.1	5.0
2001	27.8	25.0	28.6	34.8	25.0
2002	26.7	30.0	.0	17.4	40.0
2003	20.0	15.0	57.1	17.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6.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2)	(9)	(25)	(20)
서울특별시	51.0	35.7	66.7	56.0	70.0
인천광역시	4.2	2.4	11.1	4.0	5.0
대전광역시	1.0	.0	11.1	.0	.0
울산광역시	1.0	.0	.0	4.0	.0
경기도	38.5	54.8	11.1	36.0	20.0
충청북도	1.0	.0	.0	.0	5.0
경상남도	3.1	7.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 가족 관계

B1. 당신은 현재 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0)	(8)	(25)	(22)
아버지	69.5	75.0	62.5	68.0	63.6
어머니	81.1	87.5	100.0	76.0	68.2
형제 자매	29.5	45.0	25.0	28.0	4.5
할아버지	.0	.0	.0	.0	.0
할머니	1.1	.0	.0	4.0	.0
기타 가족 친척	7.4	5.0	.0	12.0	9.1
아버지의 친구	3.2	7.5	.0	.0	.0
어머니의 친구	3.2	7.5	.0	.0	.0
기타	12.6	5.0	.0	16.0	27.3

B2. 당신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위: 명)

계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98)	(42)	(9)	(25)	(22)
3.23	3.46	3.29	3.00	3.00

B3. 당신의 아버지는 현재 어떤 일을 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8)	(25)	(20)
비해당	10.6	12.2	25.0	12.0	.0
공장노동자	52.1	56.1	25.0	60.0	45.0
건설노동자	26.6	14.6	37.5	20.0	55.0
기 타	10.6	17.1	12.5	8.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4. 당신 아버지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한국	3.1	2.4	.0	4.0	4.5
방글라데시	3.1	2.4	.0	8.0	.0
중국 조선족	1.0	.0	.0	.0	4.5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이란	.0	.0	.0	.0	.0
가나	1.0	2.4	.0	.0	.0
몽골	81.6	78.6	88.9	88.0	77.3
네팔	2.0	.0	11.1	.0	4.5
파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3.1	7.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5. 당신의 어머니는 현재 어떤 일을 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0)	(9)	(25)	(22)
비해당	6.3	.0	.0	16.0	9.1
공장노동자	66.7	82.5	44.4	52.0	63.6
건설노동자	3.1	.0	11.1	8.0	.0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1.0	.0	11.1	.0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6.3	5.0	11.1	8.0	4.5
상점주인	2.1	5.0	.0	.0	.0
실업자	5.2	2.5	11.1	8.0	4.5
주부	2.1	.0	.0	4.0	4.5
기타	7.3	5.0	11.1	4.0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6. 당신 어머니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8)	(42)	(9)	(25)	(22)
한국	1.0	2.4	.0	.0	.0
방글라데시	3.1	2.4	.0	8.0	.0
인도네시아	1.0	.0	.0	.0	4.5
카자흐스탄	1.0	2.4	.0	.0	.0
몽골	85.7	81.0	88.9	92.0	86.4
네팔	2.0	.0	11.1	.0	4.5
파키스탄	3.1	7.1	.0	.0	.0
러시아	1.0	.0	.0	.0	4.5
우즈베키스탄	1.0	2.4	.0	.0	.0
기타나라	1.0	2.4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7. 당신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9)	(6)	(22)	(21)
공장, 상가, 식당, 여관 등	10.2	15.4	16.7	.0	9.5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	11.4	7.7	16.7	22.7	4.8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등	2.3	5.1	.0	.0	.0
지하, 반지하방	14.8	10.3	.0	18.2	23.8
옥탑방	6.8	7.7	.0	4.5	9.5
단독주택	17.0	12.8	50.0	18.2	14.3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15.9	15.4	16.7	9.1	23.8
아파트	14.8	17.9	.0	18.2	9.5
기숙사	1.1	.0	.0	4.5	.0
기타	5.7	7.7	.0	4.5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8. 당신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6)	(41)	(8)	(25)	(22)
1개	47.9	46.3	37.5	60.0	40.9
2개	39.6	36.6	50.0	28.0	54.5
3개	12.5	17.1	12.5	12.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65	1.71	1.75	1.52	1.64

B9. 당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4)	(22)
0명	5.3	.0	12.5	8.3	9.1
1명	21.1	9.8	25.0	25.0	36.4
2명	31.6	34.1	25.0	25.0	36.4
3명	27.4	39.0	25.0	16.7	18.2
4명	14.7	17.1	12.5	25.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5	2.63	2.00	2.25	1.64

B10. 당신은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5)	(21)
모국어	62.1	56.1	62.5	56.0	81.0
한국어	8.4	7.3	.0	12.0	9.5
두가지 언어를 섞어서	29.5	36.6	37.5	32.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B11.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78)	(36)	(5)	(21)	(16)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전혀 없음	6.4	2.8	40.0	.0	12.5
	이따금 있음	2.6	2.8	.0	.0	6.3
	종종 있음	23.1	13.9	20.0	47.6	12.5
	자주 있음	26.9	33.3	20.0	23.8	18.8
	항상 있음	41.0	47.2	20.0	28.6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4	79.9	45.0	70.2	71.9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 경우	전혀 없음	5.9	6.3	50.0	.0	.0
	이따금 있음	1.5	.0	.0	.0	7.1
	종종 있음	14.7	12.5	.0	16.7	21.4
	자주 있음	22.1	9.4	25.0	33.3	35.7
	항상 있음	55.9	71.9	25.0	50.0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0.2	85.2	43.8	83.3	75.0
가족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 경우	전혀 없음	.0	.0	.0	.0	.0
	이따금 있음	1.4	.0	.0	5.3	.0
	종종 있음	8.6	6.1	.0	10.5	14.3
	자주 있음	22.9	21.2	25.0	15.8	35.7
	항상 있음	67.1	72.7	75.0	68.4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8.9	91.7	93.8	86.8	83.9

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점수화는 “전혀 없음”에 0점, “이따금 있음”에 25점, “종종 있음”에 50점, “자주 있음”에 75점, “항상 있음”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B12. 다음과 같은 태도에 대해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0)	(30)	(7)	(19)	(14)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적으로 고려	전적으로 반대한다	10.0	13.3	14.3	.0	14.3
	대체로 반대한다	17.1	16.7	28.6	21.1	7.1
	대체로 동의한다	35.7	26.7	28.6	31.6	64.3
	전적으로 동의한다	37.1	43.3	28.6	47.4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6.7	66.7	57.2	75.4	59.5
친척만이 도와줄 수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11.9	10.3	20.0	10.5	14.3
	대체로 반대한다	22.4	24.1	20.0	15.8	28.6
	대체로 동의한다	37.3	44.8	20.0	26.3	42.9
	전적으로 동의한다	28.4	20.7	40.0	47.4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0.7	58.6	60.0	70.2	52.4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	전적으로 반대한다	20.0	14.8	.0	21.1	35.7
	대체로 반대한다	29.2	29.6	40.0	31.6	21.4
	대체로 동의한다	23.1	25.9	.0	36.8	7.1
	전적으로 동의한다	27.7	29.6	60.0	10.5	3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2.8	56.8	73.3	45.6	47.6

주: 태도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B13.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5)	(41)	(8)	(24)	(22)
매우 만족	54.7	63.4	50.0	50.0	45.5
만족	23.2	9.8	50.0	33.3	27.3
약간 만족	15.8	22.0	.0	8.3	18.2
보통	5.3	4.9	.0	8.3	4.5
약간 불만	1.1	.0	.0	.0	4.5
불만	.0	.0	.0	.0	.0
매우 불만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7.5	88.6	91.6	87.5	84.1

주: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B14. 당신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0)	(29)	(3)	(20)	(18)
용돈을 적게 받는다	18.6	17.2	.0	20.0	22.2
공부만 강요한다	27.1	27.6	.0	40.0	16.7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8.6	6.9	33.3	5.0	11.1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8.6	.0	33.3	5.0	22.2
내 생각을 무시한다	11.4	13.8	.0	15.0	5.6
기타	40.0	51.7	66.7	30.0	27.8

C. 언어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C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40)	(6)	(23)	(19)
말하기	매우 잘 못함	17.0	10.0	16.7	17.4	31.6
	별로 잘 못함	30.7	30.0	33.3	17.4	47.4
	대체로 잘함	36.4	42.5	16.7	52.2	10.5
	매우 잘함	15.9	17.5	33.3	13.0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0.4	55.8	55.6	53.6	33.3
듣기	매우 잘 못함	5.8	8.1	.0	8.7	.0
	별로 잘 못함	31.4	16.2	60.0	26.1	57.1
	대체로 잘함	44.2	51.4	.0	43.5	42.9
	매우 잘함	18.6	24.3	40.0	21.7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8.5	64.0	60.0	59.4	47.6
읽기	매우 잘 못함	14.0	13.2	20.0	4.3	25.0
	별로 잘 못함	33.7	26.3	20.0	30.4	55.0
	대체로 잘함	36.0	42.1	40.0	39.1	20.0
	매우 잘함	16.3	18.4	20.0	26.1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1.6	55.3	53.3	62.3	31.7
쓰기	매우 잘 못함	18.2	15.8	.0	8.3	40.0
	별로 잘 못함	35.2	26.3	66.7	29.2	50.0
	대체로 잘함	30.7	47.4	.0	29.2	10.0
	매우 잘함	15.9	10.5	33.3	3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8.1	50.9	55.5	62.5	23.3

주: 한국어 실력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점, “별로 잘못함”에 33.3점, “대체로 잘못함”에 66.7점, “매우 잘함”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C2. 당신의 모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1)	(38)	(7)	(24)	(22)
말하기	매우 잘 못함	6.6	5.3	14.3	4.2	9.1
	별로 잘 못함	13.2	13.2	14.3	8.3	18.2
	대체로 잘함	29.7	34.2	42.9	20.8	27.3
	매우 잘함	50.5	47.4	28.6	66.7	4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4.7	74.6	61.9	83.3	69.7
듣기	매우 잘 못함	2.3	5.3	.0	.0	.0
	별로 잘 못함	16.3	7.9	60.0	17.4	20.0
	대체로 잘함	24.4	28.9	20.0	13.0	30.0
	매우 잘함	57.0	57.9	20.0	69.6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8.7	79.8	53.3	84.1	76.7
읽기	매우 잘 못함	7.0	10.5	.0	4.2	5.0
	별로 잘 못함	24.4	23.7	50.0	20.8	25.0
	대체로 잘함	27.9	42.1	25.0	12.5	20.0
	매우 잘함	40.7	23.7	25.0	62.5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7.4	59.7	58.3	77.8	71.7
쓰기	매우 잘 못함	12.8	16.2	20.0	4.2	15.0
	별로 잘 못함	27.9	32.4	20.0	20.8	30.0
	대체로 잘함	22.1	29.7	40.0	16.7	10.0
	매우 잘함	37.2	21.6	20.0	58.3	4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1.2	52.3	53.3	76.4	61.7

주: 모국어 실력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점, “별로 잘못함”에 33.3점, “대체로 잘못함”에 66.7점, “매우 잘함”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C3. 당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골라 주십시오.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39)	(8)	(25)	(21)
중학교 이하	9.7	7.7	.0	12.0	14.3
고등학교	6.5	2.6	12.5	8.0	9.5
전문대학(2년제)	1.1	2.6	.0	.0	.0
대학교(4년제)	60.2	71.8	50.0	48.0	57.1
대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대학원 박사과정	16.1	15.4	12.5	28.0	4.8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4.3	.0	25.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3-1. 당신은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골라 주십시오.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39)	(8)	(25)	(21)
중학교 이하	12.2	18.9	.0	8.0	9.5
고등학교	15.6	10.8	28.6	16.0	19.0
전문대학(2년제)	1.1	2.7	.0	.0	.0
대학교(4년제)	55.6	62.2	42.9	56.0	47.6
대학원 석사과정	3.3	.0	.0	8.0	4.8
대학원 박사과정	6.7	5.4	14.3	12.0	.0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5.6	.0	14.3	.0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4.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2)	(39)	(7)	(25)	(21)
중학교 이하	18.5	15.4	14.3	12.0	33.3
고등학교	13.0	12.8	42.9	12.0	4.8
전문대학(2년제)	3.3	5.1	.0	4.0	.0
대학교(4년제)	47.8	53.8	28.6	44.0	47.6
대학원 석사과정	2.2	.0	.0	4.0	4.8
대학원 박사과정	12.0	10.3	14.3	20.0	4.8
학교를 전혀 다닐수 없다	3.3	2.6	.0	4.0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4-1.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2)	(39)	(7)	(25)	(21)
중학교 이하	19.3	18.4	.0	16.7	28.6
고등학교	18.2	18.4	40.0	20.8	9.5
전문대학(2년제)	3.4	5.3	20.0	.0	.0
대학교(4년제)	39.8	47.4	40.0	33.3	33.3
대학원 석사과정	3.4	.0	.0	8.3	4.8
대학원 박사과정	10.2	2.6	.0	20.8	14.3
학교를 전혀 다닐수 없다	5.7	7.9	.0	.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5.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7)	(25)	(21)
중학교 이하	3.2	4.9	.0	4.0	.0
고등학교	10.6	7.3	14.3	24.0	.0
전문대학(2년제)	3.2	7.3	.0	.0	.0
대학교(4년제)	57.4	56.1	71.4	52.0	61.9
대학원 석사과정	4.3	2.4	14.3	4.0	4.8
대학원 박사과정	21.3	22.0	.0	16.0	33.3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5-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4)	(41)	(7)	(25)	(21)
중학교 이하	6.8	10.8	.0	8.0	.0
고등학교	19.3	10.8	16.7	32.0	20.0
전문대학(2년제)	2.3	5.4	.0	.0	.0
대학교(4년제)	51.1	59.5	66.7	36.0	50.0
대학원 석사과정	3.4	.0	16.7	4.0	5.0
대학원 박사과정	14.8	13.5	.0	20.0	15.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2.3	.0	.0	.0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6. 당신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3)	(40)	(7)	(25)	(21)
공장노동자	7.5	5.0	.0	12.0	9.5
사무원	7.5	7.5	28.6	4.0	4.8
판매원	.0	.0	.0	.0	.0
기능공, 컴퓨터	9.7	10.0	.0	4.0	19.0
프로그래머					
간호사, 물리치료사,	1.1	.0	.0	4.0	.0
영양사					
기업경영자	6.5	5.0	.0	4.0	14.3
전문기술자	3.2	.0	.0	4.0	9.5
교사, 교수	10.8	17.5	14.3	8.0	.0
변호사, 판사, 법률가	14.0	17.5	28.6	8.0	9.5
의사	16.1	22.5	.0	20.0	4.8
기타	23.7	15.0	28.6	32.0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7.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6)	(36)	(7)	(22)	(21)
매우 낮다	11.6	5.6	28.6	4.5	23.8
다소 낮은 편이다	22.1	33.3	.0	9.1	23.8
다소 높은 편이다	47.7	50.0	42.9	59.1	33.3
매우 높다	18.6	11.1	28.6	27.3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7.8	55.6	57.2	69.7	49.2

주: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33.3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66.7점, “매우 높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D. 친구 관계

D1. 한국에서 개인적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단위: %, 명)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7)	(30)	(4)	(24)	(19)
모국인 친구수					
0명	2.6	3.3	.0	.0	5.3
1~2명	20.8	20.0	25.0	16.7	26.3
3~5명	35.1	36.7	.0	45.8	26.3
6~10명	41.6	40.0	75.0	37.5	4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52	5.47	7.00	5.58	5.21
한국인 친구수					
0명	20.5	12.1	40.0	23.8	28.6
1~2명	31.5	39.4	40.0	14.3	35.7
3~5명	17.8	15.2	.0	19.0	28.6
6~10명	30.1	33.3	20.0	42.9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1	4.27	2.60	5.10	2.29
제3국인 친구					
0명	69.0	77.8	50.0	52.6	87.5
1~2명	15.5	14.8	25.0	15.8	12.5
3~5명	6.9	3.7	.0	15.8	.0
6~10명	8.6	3.7	25.0	15.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24	.74	2.75	2.05	.25

D2.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66)	(31)	(1)	(18)	(16)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친구	전혀 없다	50.0	54.8	.0	50.0	43.8
	약간 있다	28.8	25.8	.0	27.8	37.5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21.2	19.4	100.0	22.2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5.6	32.3	100.0	36.1	37.5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전혀 없다	38.1	41.4	.0	41.2	33.3
	약간 있다	39.7	41.4	50.0	29.4	46.7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22.2	17.2	50.0	29.4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1	37.9	75.0	44.1	43.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36.9	34.5	.0	50.0	33.3
	약간 있다	36.9	34.5	33.3	27.8	53.3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26.2	31.0	66.7	22.2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4.6	48.3	83.3	36.1	40.0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45.2	46.4	.0	47.1	43.8
	약간 있다	33.9	35.7	.0	29.4	37.5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21.0	17.9	100.0	23.5	1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7.9	35.7	100.0	38.2	37.5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32.4	37.9	33.3	15.0	43.8
	약간 있다	23.5	31.0	.0	25.0	12.5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44.1	31.0	66.7	60.0	4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5.9	46.6	66.7	72.5	50.0

주: 친구가 몇 명 정도인가에 대한 점수화는 “전혀 없다”에 0점, “약간 있다”에 50점,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D3.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7)	(4)	(25)	(22)
매우 쉽다	36.4	37.8	.0	40.0	36.4
대체로 쉬운 편이다	33.0	43.2	25.0	32.0	18.2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21.6	18.9	.0	16.0	36.4
매우 어렵다	9.1	.0	75.0	12.0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3-1.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1)	(29)	(4)	(21)	(17)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21.1	24.1	25.0	19.0	17.6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39.4	34.5	25.0	28.6	64.7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14.1	24.1	25.0	9.5	.0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예 멀리한다	8.5	3.4	.0	19.0	5.9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8.5	10.3	.0	4.8	11.8
기타	22.5	31.0	25.0	23.8	5.9

D4. 당신은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39)	(4)	(25)	(20)
있다	78.4	82.1	75.0	84.0	65.0
없다	21.6	17.9	25.0	16.0	3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4-1. 당신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6)	(30)	(3)	(21)	(12)
모국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10.6	6.7	.0	14.3	16.7
한국 아이들과 구별되기 싫어서	7.6	10.0	33.3	.0	8.3
한국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36.4	33.3	33.3	42.9	33.3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용이하도록	31.8	40.0	.0	28.6	25.0
기타	21.2	26.7	33.3	14.3	16.7

D4-2.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8)	(31)	(3)	(21)	(13)
본래 이름	48.5	32.3	66.7	52.4	76.9
한국 이름	45.6	61.3	33.3	38.1	23.1
내가 좋아하는 별명	4.4	3.2	.0	9.5	.0
내가 싫어하는 별명	1.5	3.2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4-3. 당신은 본래 이름과 한국어 이름 중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7)	(31)	(3)	(21)	(12)
본래 이름	56.7	35.5	33.3	66.7	100.0
한국 이름	43.3	64.5	66.7	3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5. 당신은 현재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7)	(36)	(5)	(25)	(21)
다닌다	71.3	94.4	60.0	88.0	14.3
다니지 않는다	28.7	5.6	40.0	12.0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5-1. 당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미취학	미취학
(N)	(20)	(3)	(17)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10.0	33.3	5.9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15.0	.0	17.6
한국말을 잘 못해서	20.0	.0	23.5
학교 가기가 겁이 나서	5.0	33.3	.0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35.0	.0	41.2
기타	15.0	33.3	11.8
계	100.0	100.0	100.0

D6. 당신은 교과 공부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한다면 누구(무엇)의 도움으로 공부하십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0)	(37)	(4)	(22)	(17)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7.5	5.4	.0	9.1	11.8
책	31.3	35.1	50.0	27.3	23.5
TV 프로그램	11.3	8.1	25.0	9.1	17.6
비디오 또는 오디오 교재	3.8	5.4	.0	.0	5.9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	22.5	27.0	.0	27.3	11.8
한국인 친구	25.0	27.0	50.0	27.3	11.8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교육	27.5	37.8	.0	22.7	17.6
사설 학원	7.5	5.4	.0	9.1	11.8
기타	1.3	2.7	.0	.0	.0

D7.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58)	(22)	(2)	(16)	(18)
전업 직업이 있다	13.8	4.5	.0	.0	38.9
파트타임 직업이 있다	6.9	9.1	.0	.0	11.1
없다, 전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17.2	.0	100.0	25.0	22.2
없다,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5.2	9.1	.0	6.3	.0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56.9	77.3	.0	68.8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7-1.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58)	(20)	(3)	(17)	(18)
공장노동자	20.7	5.0	.0	11.8	50.0
건설노동자	3.4	.0	.0	.0	11.1
농림축산업노동자	1.7	.0	33.3	.0	.0
식당 주방, 청소, 서빙	3.4	.0	.0	11.8	.0
간병인	1.7	.0	.0	5.9	.0
학생	27.6	50.0	.0	35.3	.0
실업자	6.9	5.0	33.3	5.9	5.6
그냥 논다	5.2	10.0	.0	5.9	.0
기타	29.3	30.0	33.3	23.5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8. 당신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3)	(29)	(3)	(22)	(19)
다닌다	61.6	79.3	.0	77.3	26.3
다니지 않는다	38.4	20.7	100.0	22.7	7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8-1.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75)	(34)	(6)	(19)	(16)
매우 만족	50.7	58.8	50.0	47.4	37.5
만족	20.0	17.6	16.7	31.6	12.5
약간 만족	12.0	11.8	.0	.0	31.3
보통	13.3	8.8	16.7	15.8	18.8
약간 불만	1.3	.0	16.7	.0	.0
불만	.0	.0	.0	.0	.0
매우 불만	2.7	2.9	.0	5.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9. 당신은 학교·학원 또는 일이 끝난 후에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90)	(40)	(4)	(25)	(21)
혼자	12.2	10.0	.0	16.0	14.3
한국인 친구	18.9	22.5	.0	28.0	4.8
모국인 친구	28.9	22.5	25.0	24.0	47.6
제3국인 친구	3.3	.0	25.0	.0	9.5
부모님	23.3	30.0	.0	24.0	14.3
형제, 자매	4.4	10.0	.0	.0	.0
기타	8.9	5.0	50.0	8.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D10. 당신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8)	(40)	(3)	(23)	(22)
1시간 미만	11.4	15.0	.0	.0	18.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2.7	20.0	.0	30.4	22.7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4.8	10.0	.0	17.4	22.7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2	10.0	.0	17.4	4.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5.9	22.5	66.7	13.0	.0
5시간 이상	25.0	22.5	33.3	21.7	3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 학교 생활

E2. 당신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64)	(41)	(23)
1시간 미만	23.4	24.4	21.7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31.3	34.1	26.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8.8	22.0	13.0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7	4.9	4.3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8	2.4	17.4
5시간 이상	14.1	12.2	17.4
계	100.0	100.0	100.0

E3. 당신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으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67)	(42)	(25)
부모님	37.3	35.7	40.0
형제, 자매	10.4	11.9	8.0
친구	19.4	14.3	28.0
학교 선생님	9.0	9.5	8.0
학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	6.0	9.5	.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5	4.8	4.0
기타	4.5	7.1	.0
없다	9.0	7.1	12.0
계	100.0	100.0	100.0

E4. 다음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48)	(30)	(18)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8.3	13.3
	대체로 반대한다	14.6	10.0
	대체로 동의한다	43.8	43.3
	전적으로 동의한다	33.3	33.3
	계	100.0	100.0
	평균	67.4	65.6
		70.4	

주: 학교에 대한 사정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48)	(30)	(18)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전혀 사귀려 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8.3	30.0	25.0
	대체로 반대한다	32.6	26.7	43.8
	대체로 동의한다	21.7	23.3	18.8
	전적으로 동의한다	17.4	20.0	12.5
	계	100.0	100.0	100.0
	평균	42.8	44.4	39.6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6.3	9.7	.0
	대체로 반대한다	12.5	12.9	11.8
	대체로 동의한다	31.3	32.3	29.4
	전적으로 동의한다	50.0	45.2	58.8
	계	100.0	100.0	100.0
	평균	75.0	71.0	82.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10.6	16.1	.0
	대체로 반대한다	6.4	3.2	12.5
	대체로 동의한다	40.4	32.3	56.3
	전적으로 동의한다	42.6	48.4	31.3
	계	100.0	100.0	100.0
	평균	71.6	71.0	72.9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43.2	39.3	50.0
	대체로 반대한다	15.9	17.9	12.5
	대체로 동의한다	22.7	21.4	25.0
	전적으로 동의한다	18.2	21.4	12.5
	계	100.0	100.0	100.0
	평균	38.6	41.7	33.3

주: 학교에 대한 사정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48)	(30)	(18)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45.5	46.4	43.8
	대체로 반대한다	13.6	14.3	12.5
	대체로 동의한다	20.5	17.9	25.0
	전적으로 동의한다	20.5	21.4	18.8
	계	100.0	100.0	100.0
	평균	38.6	38.1	39.6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3.3	35.7	29.4
	대체로 반대한다	24.4	14.3	41.2
	대체로 동의한다	22.2	25.0	17.6
	전적으로 동의한다	20.0	25.0	11.8
	계	100.0	100.0	100.0
	평균	43.0	46.4	37.3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2.6	23.3	50.0
	대체로 반대한다	23.9	30.0	12.5
	대체로 동의한다	23.9	33.3	6.3
	전적으로 동의한다	19.6	13.3	31.3
	계	100.0	100.0	100.0
	평균	43.5	45.6	39.6
학생 성적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9.8	15.4	.0
	대체로 반대한다	17.1	19.2	13.3
	대체로 동의한다	53.7	50.0	60.0
	전적으로 동의한다	19.5	15.4	26.7
	계	100.0	100.0	100.0
	평균	61.0	55.1	71.1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11.4	15.4	5.6
	대체로 반대한다	36.4	38.5	33.3
	대체로 동의한다	22.7	26.9	16.7
	전적으로 동의한다	29.5	19.2	44.4
	계	100.0	100.0	100.0
	평균	56.8	50.0	66.7

주: 학교에 대한 사정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 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2)	(33)	(19)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전혀 없었다	78.8	78.8	78.9
	1~2번	13.5	15.2	10.5
	3번 이상	7.7	6.1	10.5
	계	100.0	100.0	100.0
	평균	14.4	13.6	15.8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	전혀 없었다	78.0	75.8	82.4
	1~2번	14.0	18.2	5.9
	3번 이상	8.0	6.1	11.8
	계	100.0	100.0	100.0
	평균	15.0	15.2	14.7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전혀 없었다	68.5	72.7	61.9
	1~2번	16.7	15.2	19.0
	3번 이상	14.8	12.1	19.0
	계	100.0	100.0	100.0
	평균	23.1	19.7	28.6

주: 학교에서의 경험 평균에 대한 점수화는 “전혀 없었다”에 0점, “1~2번”에 50점, “3번 이상”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6.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60)	(38)	(22)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30.0	28.9	31.8
그런 적 없다		70.0	71.1	68.2
계		100.0	100.0	100.0

E6-1. 왜 한국인 학생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30)	(18)	(12)
외국인이라서	46.7	61.1	25.0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3.3	33.3	33.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6.7	5.6	8.3
잘하는 것이 없어서	3.3	.0	8.3
건방지다고	3.3	.0	8.3
특별한 이유 없이	40.0	50.0	25.0
기타	3.3	5.6	.0

E6-2.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32)	(19)	(13)
있다	93.8	94.7	92.3
없다	6.3	5.3	7.7
계	100.0	100.0	100.0

E6-2.1. 당신이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29)	(18)	(11)
가족, 친척	48.3	44.4	54.5
모국인 친구	13.8	11.1	18.2
한국인 친구	27.6	38.9	9.1
제3국인 친구	10.3	11.1	9.1
교사	13.8	16.7	9.1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10.3	16.7	.0
성직자	13.8	16.7	9.1
신고전화(경찰·검찰)	.0	.0	.0
기타	17.2	16.7	18.2

E6-2.2. 여러 상담자 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26)	(16)	(10)
가족, 친척	53.8	56.3	50.0
모국인 친구	11.5	12.5	10.0
한국인 친구	7.7	6.3	10.0
교사	7.7	6.3	10.0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3.8	6.3	.0
성직자	3.8	6.3	.0
기타	11.5	6.3	20.0
계	100.0	100.0	100.0

E6-2.3. 그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25)	(16)	(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0	6.3	22.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12.0	6.3	22.2
약간 도움이 되었다	48.0	50.0	44.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28.0	37.5	11.1
계	100.0	100.0	100.0

E6-3.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24)	(18)	(6)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2	38.9	.0
야단 맞을 것 같아서	4.2	.0	16.7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29.2	27.8	33.3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8.3	5.6	16.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4.2	5.6	.0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4.2	5.6	.0
기타	20.8	16.7	33.3
계	100.0	100.0	100.0

E6-4.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25)	(18)	(7)
학교 가기가 두려웠다	28.0	33.3	14.3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섭거나 싫었다	8.0	.0	28.6
정신적 불안이나 악몽에 시달렸다	28.0	27.8	28.6
가출을 하였다	4.0	5.6	.0
기타	32.0	33.3	28.6
계	100.0	100.0	100.0

E6-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집단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훈화·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0)	(28)	(10)
있다	23.7	28.6	10.0
없다	47.4	46.4	50.0
모르겠다	28.9	25.0	40.0
계	100.0	100.0	100.0

E7. 당신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5)	(35)	(20)
매우 만족	50.9	48.6	55.0
만족	14.5	14.3	15.0
약간 만족	25.5	28.6	20.0
보통	7.3	5.7	10.0
약간 불만	1.8	2.9	.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평균	84.2	83.3	85.8

주: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점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E8. 당신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괴로운 일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0)	(31)	(19)
미숙한 한국어	30.0	32.3	26.3
친구 사귀기가 힘들	8.0	6.5	10.5
낮은 성적	16.0	3.2	36.8
한국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놀림, 구타당하는 것	12.0	16.1	5.3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4.0	6.5	.0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	26.0	32.3	15.8
기타	24.0	29.0	15.8

E9.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60)	(39)	(21)
있다	41.7	35.9	52.4
없다	58.3	64.1	47.6
계	100.0	100.0	100.0

E10. 당신은 학교 시설물(컴퓨터 ·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7)	(39)	(18)
있다	71.9	71.8	72.2
없다	28.1	28.2	27.8
계	100.0	100.0	100.0

E11. 당신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60)	(39)	(21)
매우 만족	60.0	59.0	61.9
만족	16.7	17.9	14.3
약간 만족	18.3	17.9	19.0
보통	5.0	5.1	4.8
약간 불만	.0	.0	.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평균	88.6	88.5	88.9

주: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의 점수화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E12. 당신이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40)	(26)	(14)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	15.0	7.7	28.6
공부만 강요한다	10.0	11.5	7.1
자주 때린다	5.0	3.8	7.1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2.5	3.8	.0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2.5	3.8	.0
기타	65.0	69.2	57.1

E13. 당신은 학교 선생님께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4)	(36)	(18)
있다	14.8	11.1	22.2
없다	70.4	75.0	61.1
모르겠다	14.8	13.9	16.7
계	100.0	100.0	100.0

E13-1. 당신이 학교 선생님께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8)	(4)	(4)
심한 체벌	50.0	50.0	50.0
부당한 차별 대우	12.5	.0	25.0
기타	37.5	50.0	25.0

E14.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당신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취학	중등학교 취학
(N)	(54)	(38)	(16)
있다	16.7	7.9	37.5
없다	83.3	92.1	62.5
계	100.0	100.0	100.0

E14-1. 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부당하게 차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8)	(3)	(5)
외국인이라서	75.0	100.0	60.0
공부를 잘못해서	12.5	.0	20.0
기타	12.5	.0	20.0
계	100.0	100.0	100.0

E15. 당신은 학교에서 학급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취학
(N)	(54)	(38)	(16)
없다	64.8	73.7	43.8
반장	5.6	5.3	6.3
부반장	1.9	.0	6.3
각 부서 부장	7.4	2.6	18.8
분단장	5.6	5.3	6.3
기타	18.5	18.4	18.8

F. 가치관과 태도

F1.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0)	(4)	(19)	(12)
한국에서는 경제적 기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1.5	26.7	25.0	15.8	16.7
	대체로 반대한다	40.0	36.7	50.0	52.6	25.0
	대체로 동의한다	26.2	30.0	.0	15.8	41.7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6.7	25.0	15.8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3.1	38.9	41.7	43.9	52.8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약화시킨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7.9	50.0	50.0	33.3	10.0
	대체로 반대한다	29.3	17.9	50.0	33.3	50.0
	대체로 동의한다	24.1	25.0	.0	22.2	30.0
	전적으로 동의한다	8.6	7.1	.0	11.1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5	29.8	16.7	37.0	46.7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0.5	39.3	50.0	27.8	9.1
	대체로 반대한다	30.5	25.0	50.0	33.3	36.4
	대체로 동의한다	23.7	25.0	.0	22.2	27.3
	전적으로 동의한다	15.3	10.7	.0	16.7	2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1.2	35.7	16.7	42.6	57.6

주: 견해에 대한 동의정도의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0)	(4)	(19)	(12)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경제적 기회면에서 평등하게 대우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5.0	33.3	50.0	10.5	25.0
	대체로 반대한다	36.7	40.7	50.0	31.6	33.3
	대체로 동의한다	23.3	14.8	.0	42.1	16.7
	전적으로 동의한다	15.0	11.1	.0	15.8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8	34.6	16.7	54.4	47.2
나의 모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9.5	27.6	50.0	16.7	50.0
	대체로 반대한다	34.4	51.7	50.0	22.2	8.3
	대체로 동의한다	19.7	6.9	.0	33.3	33.3
	전적으로 동의한다	16.4	13.8	.0	27.8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1.0	35.6	16.7	57.4	33.3
한국인들은 검은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45.0	63.0	66.7	22.2	33.3
	대체로 반대한다	23.3	7.4	33.3	44.4	25.0
	대체로 동의한다	18.3	22.2	.0	16.7	16.7
	전적으로 동의한다	13.3	7.4	.0	16.7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3.3	24.7	11.1	42.6	44.4
한국인들은 흰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3.8	34.5	.0	5.3	33.3
	대체로 반대한다	34.9	27.6	100.0	31.6	41.7
	대체로 동의한다	30.2	27.6	.0	42.1	25.0
	전적으로 동의한다	11.1	10.3	.0	21.1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9	37.9	33.3	59.7	30.6

주: 견해에 대한 동의정도의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2. 당신은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5)	(32)	(3)	(16)	(14)
욕설, 헐박, 모욕	전혀 없다	49.2	46.9	100.0	56.3	35.7
	별로 없다	13.8	12.5	.0	12.5	21.4
	가끔 있다	21.5	34.4	.0	12.5	7.1
	자주 있다	12.3	3.1	.0	18.8	28.6
	매우 자주 있다	3.1	3.1	.0	.0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5	25.8	.0	23.4	37.5
돈, 물건 빼앗김	전혀 없다	71.7	75.0	100.0	73.3	58.3
	별로 없다	20.0	15.6	.0	13.3	41.7
	가끔 있다	1.7	3.1	.0	.0	.0
	자주 있다	5.0	3.1	.0	13.3	.0
	매우 자주 있다	1.7	3.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1.3	10.9	.0	13.3	10.4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전혀 없다	69.0	62.5	50.0	75.0	87.5
	별로 없다	6.9	6.3	50.0	.0	12.5
	가끔 있다	15.5	18.8	.0	18.8	.0
	자주 있다	6.9	9.4	.0	6.3	.0
	매우 자주 있다	1.7	3.1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6.4	21.1	12.5	14.1	3.1
신체적 폭행	전혀 없다	80.0	80.0	100.0	81.3	76.9
	별로 없다	5.0	6.7	.0	.0	7.7
	가끔 있다	5.0	3.3	.0	12.5	.0
	자주 있다	10.0	10.0	.0	6.3	15.4
	매우 자주 있다	.0	.0	.0	.0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1.3	10.8	.0	11.0	13.5
강간, 성폭행	전혀 없다	90.5	90.3	100.0	82.4	100.0
	별로 없다	4.8	6.5	.0	5.9	.0
	가끔 있다	.0	.0	.0	.0	.0
	자주 있다	1.6	3.2	.0	.0	.0
	매우 자주 있다	3.2	.0	.0	11.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6	4.0	.0	13.2	.0

주: 한국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한 점수화는 “전혀 없다”에 0점, “별로 없다”에 25점, “자주 있다”에 75점, “매우 자주 있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3. 당신은 자신이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81)	(36)	(5)	(23)	(17)
있다	51.9	38.9	100.0	56.5	58.8
없다	48.1	61.1	.0	43.5	4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F3-1. 당신을 차별하는 한국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41)	(14)	(4)	(13)	(10)
학교 선생님	9.8	7.1	.0	23.1	.0
학교 친구	14.6	21.4	.0	23.1	.0
이웃 주민	2.4	7.1	.0	.0	.0
상점 주인	2.4	7.1	.0	.0	.0
버스, 택시 운전자	7.3	14.3	.0	.0	10.0
목사, 신부님 등 성직자	2.4	.0	25.0	.0	.0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상담원	4.9	.0	25.0	7.7	.0
기타	70.7	71.4	50.0	61.5	90.0

F4.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0)	(27)	(4)	(18)	(11)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 않다	13.3	11.1	50.0	11.1	9.1
	다소 중요하다	36.7	44.4	.0	44.4	18.2
	매우 중요하다	50.0	44.4	50.0	44.4	7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68.3	66.7	50.0	66.7	81.8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중요하지 않다	10.6	13.8	25.0	5.6	6.7
	다소 중요하다	18.2	17.2	50.0	16.7	13.3
	매우 중요하다	71.2	69.0	25.0	77.8	8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0.3	77.6	50.0	86.1	86.7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중요하지 않다	19.0	22.2	50.0	11.8	16.7
	다소 중요하다	17.2	14.8	.0	11.8	33.3
	매우 중요하다	63.8	63.0	50.0	76.5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2.4	70.4	50.0	82.4	66.7
부모, 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중요하지 않다	16.4	17.9	50.0	11.8	8.3
	다소 중요하다	21.3	28.6	.0	17.6	16.7
	매우 중요하다	62.3	53.6	50.0	70.6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0	67.9	50.0	79.4	83.3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중요하지 않다	49.2	53.6	50.0	58.8	25.0
	다소 중요하다	31.1	32.1	.0	17.6	58.3
	매우 중요하다	19.7	14.3	50.0	23.5	1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5.3	30.4	50.0	32.4	45.8

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느끼는 정도에 대한 점수화는 “중요하지 않다”에 0점, “다소 중요하다”에 50점, “매우 중요하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0)	(27)	(4)	(18)	(11)
자녀를 갖는 것	중요하지 않다	33.3	45.8	50.0	25.0	16.7
	다소 중요하다	27.8	25.0	50.0	31.3	25.0
	매우 중요하다	38.9	29.2	.0	43.8	5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52.8	41.7	25.0	59.4	70.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중요하지 않다	13.1	17.9	25.0	5.9	8.3
	다소 중요하다	23.0	32.1	25.0	5.9	25.0
	매우 중요하다	63.9	50.0	50.0	88.2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5.4	66.1	62.5	91.2	79.2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70.9	72.0	50.0	81.3	58.3
	다소 중요하다	5.5	4.0	.0	.0	16.7
	매우 중요하다	23.6	24.0	50.0	18.8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4	26.0	50.0	18.8	33.3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	13.6	19.2	.0	16.7	.0
	다소 중요하다	25.4	34.6	33.3	11.1	25.0
	매우 중요하다	61.0	46.2	66.7	72.2	7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3.7	63.5	83.3	77.8	87.5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다	7.7	10.0	.0	10.0	.0
	다소 중요하다	7.7	6.7	.0	15.0	.0
	매우 중요하다	84.6	83.3	100.0	75.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8.5	86.7	100.0	82.5	100.0

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느끼는 정도에 대한 점수화는 “중요하지 않다”에 0점, “다소 중요하다”에 50점, “매우 중요하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5.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1주 일에 몇 일 정도 다음 증상을 느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3)	(30)	(4)	(17)	(12)
슬프다고 느낀다	거의 없었다	50.8	56.7	100.0	41.2	33.3
	가끔 있었다	23.8	20.0	.0	23.5	41.7
	종종 있었다	17.5	13.3	.0	23.5	25.0
	자주 있었다	7.9	10.0	.0	11.8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5	25.6	.0	35.3	30.6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느꼈다	거의 없었다	60.0	65.5	66.7	62.5	41.7
	가끔 있었다	20.0	13.8	33.3	6.3	50.0
	종종 있었다	13.3	13.8	.0	18.8	8.3
	자주 있었다	6.7	6.9	.0	12.5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2.2	20.7	11.1	27.1	22.2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거의 없었다	45.2	50.0	66.7	47.1	25.0
	가끔 있었다	22.6	26.7	.0	.0	50.0
	종종 있었다	16.1	13.3	.0	23.5	16.7
	자주 있었다	16.1	10.0	33.3	29.4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4	27.8	33.3	45.1	36.1
우울했다	거의 없었다	50.8	65.5	66.7	37.5	33.3
	가끔 있었다	17.5	6.9	33.3	18.8	33.3
	종종 있었다	20.6	13.8	.0	31.3	26.7
	자주 있었다	11.1	13.8	.0	12.5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0.7	25.3	11.1	39.6	35.6

주: 1주일간 느낀 감정에 대한 점수화는 “거의 없었다”에 0점, “가끔 있었다”에 33.3점, “종종 있었다”에 66.7점, “자주 있었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6.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N)		(61)	(28)	(5)	(16)	(12)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82.0	78.6	80.0	75.0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4.9	7.1	.0	6.3	.0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4.9	3.6	20.0	6.3	.0
	정말로 그렇다	8.2	10.7	.0	12.5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3.1	15.5	13.3	18.8	.0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0	9.7	40.0	.0	11.1
	별로 그렇지 않다	11.7	9.7	20.0	6.7	22.2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18.3	16.1	20.0	20.0	22.2
	정말로 그렇다	60.0	64.5	20.0	73.3	4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6.1	78.5	40.0	88.9	66.7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3	44.8	60.0	40.0	28.6
	별로 그렇지 않다	28.6	31.0	20.0	20.0	35.7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22.2	17.2	20.0	26.7	28.6
	정말로 그렇다	7.9	6.9	.0	13.3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2.3	28.7	20.0	37.8	38.1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48.3	46.4	75.0	40.0	54.5
	별로 그렇지 않다	27.6	28.6	.0	26.7	36.4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15.5	14.3	25.0	20.0	9.1
	정말로 그렇다	8.6	10.7	.0	13.3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2	29.8	16.7	35.6	18.2
내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5.8	53.6	40.0	33.3	45.5
	별로 그렇지 않다	11.9	7.1	20.0	20.0	9.1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30.5	32.1	20.0	20.0	45.5
	정말로 그렇다	11.9	7.1	20.0	26.7	.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2	31.0	40.0	46.7	33.3

주: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동의의 점수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33.3점, “부분적으로 사실이다”에 66.7점, “정말로 그렇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부록 1-2. 조사 결과: 외국인 부모 조사

A. 응답자의 신상정보

A1~A5. 성별, 출생년도, 국적, 학력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성별	남자	38.3	46.2	26.0
	여자	61.7	53.8	74.0
출생년도	21~30세	19.5	15.4	26.0
	31~40세	68.8	71.8	64.0
	41~50세	11.7	12.8	10.0
국적	한국	10.9	.0	28.0
	방글라데시	3.9	5.1	2.0
	중국 조선족	7.0	1.3	16.0
	중국 한족	.8	.0	2.0
	인도	.0	.0	.0
	인도네시아	6.3	7.7	4.0
	이란	.0	.0	.0
	가나	.0	.0	.0
	카자흐스탄	1.6	2.6	.0
	몽골	38.3	60.3	4.0
	미얀마	.8	.0	2.0
	네팔	.0	.0	.0
	나이지리아	.0	.0	.0
	파키스탄	4.7	3.8	6.0
	필리핀	13.3	9.0	20.0
	러시아	3.9	5.1	2.0
	스리랑카	1.6	1.3	2.0
	태국	1.6	.0	4.0
	우즈베키스탄	.0	.0	.0
	베트남	3.9	2.6	6.0
	기타 나라	1.6	1.3	2.0
학력	중학교 이하	4.8	6.6	2.0
	고등학교	40.5	36.8	46.0
	전문대학(2년제)	23.0	22.4	24.0
	대학교(4년제)	28.6	34.2	20.0
	대학원 석사과정	3.2	.0	8.0
계		100.0	100.0	100.0

A7. 귀하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2)	(76)	(36)
1991	1.8	1.3	2.8
1992	1.8	1.3	2.8
1993	1.8	.0	5.6
1994	2.7	1.3	5.6
1995	4.5	2.6	8.3
1996	9.8	6.6	16.7
1997	11.6	13.2	8.3
1998	8.0	7.9	8.3
1999	12.5	14.5	8.3
2000	17.0	17.1	16.7
2001	11.6	13.2	8.3
2002	8.9	11.8	2.8
2003	8.0	9.2	5.6
계	100.0	100.0	100.0

A8, A9. 행정구역, 거주지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1)	(71)	(50)
서울특별시	18.2	28.2	4.0
인천광역시	4.1	2.8	6.0
부산광역시	14.9	.0	36.0
경기도	57.0	62.0	50.0
충청북도	.8	.0	2.0
경상남도	5.0	7.0	2.0
공장, 상가, 식당, 여관 등(비거주용건물내 공간)	2.5	1.4	4.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3.3	5.6	.0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1.7	2.8	.0
지하, 반지하방	19.2	18.1	20.8
옥탑방	1.7	2.8	.0
단독주택(지하,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18.3	18.1	18.8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지하,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23.3	25.0	20.8
아파트	23.3	20.8	27.1
기숙사	1.7	2.8	.0
기타	5.0	2.8	8.3
계	100.0	100.0	100.0

A10, A12. 현재 하는 일, 체류자격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4)	(77)	(47)
공장노동자	41.9	54.5	21.3
건설노동자	9.7	14.3	2.1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8	1.3	.0
농림축산업노동자	.0	.0	.0
식당주방, 청소, 서빙	3.2	3.9	2.1
현재 하는 일 간병인	.0	.0	.0
가정부, 파출부, 아이돌보기	1.6	1.3	2.1
실업자	3.2	3.9	2.1
상점운영	8.1	7.8	8.5
주부	22.6	5.2	51.1
기타	8.9	7.8	10.6
연수취업자	4.1	4.6	.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	2.7	3.1	.0
업연수생			
체류자격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0	.0	.0
예술, 흥행 자격연예인	1.4	.0	12.5
상점운영, 기업투자	4.1	3.1	12.5
불법체류자	87.7	89.2	75.0
계	100.0	100.0	100.0

A11. 귀하의 한 달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단위: 만원)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한달 평균 임금	110.2	100.5	133.3

A13, A14, A15, A16. 자진 출국 계획, 강제출국 조치의 경우,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기간,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0)	(62)	(8)
자진 출국 계획	그렇다	8.6	8.1	12.5
	아니다	91.4	91.9	87.5
강제출국 조치의 경우	모국으로 돌아감	33.8	37.9	9.1
	일자리 구하러 제3국으로 감	6.5	4.5	18.2
	다시 한국에 올 것임	46.8	50.0	27.3
	기타	13.0	7.6	45.5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기간	즉시 떠나고 싶다	3.8	1.5	16.7
	3개월까지	1.3	1.5	.0
	1년까지	3.8	4.5	.0
	2년까지	21.8	22.7	16.7
	3년까지	14.1	16.7	.0
	5년까지	23.1	25.8	8.3
	5년 이상	32.1	27.3	58.3
한국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해서	38.0	43.9	7.7
	모국보다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15.2	16.7	7.7
	모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6.3	7.6	.0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다 좋아서	30.4	28.8	38.5
	기타	10.1	3.0	46.2
계		100.0	100.0	100.0

B. 가족

B1. 당신은 현재 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6)	(77)	(49)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81.0	76.6	87.8
자녀	80.2	77.9	83.7
아버지	2.4	2.6	2.0
어머니	4.0	1.3	8.2
기타 가족·친척	5.6	5.2	6.1
친구	3.2	2.6	4.1
기타	2.4	.0	6.1

B2. 귀하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위: 명)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2)	(72)	(50)
0명	2.5	1.4	4.0
1명	5.7	6.9	4.0
2명	25.4	23.6	28.0
3명	30.3	37.5	20.0
4명	27.9	27.8	28.0
5명	6.6	1.4	14.0
6명	1.6	1.4	2.0
계	100.0	100.0	100.0
평균	3.02	2.93	3.14

B3. 귀하의 배우자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28)	(78)	(50)
한국	28.1	.0	72.0
방글라데시	4.7	5.1	4.0
중국 조선족	1.6	2.6	.0
중국 한족	.8	1.3	.0
인도네시아	6.3	6.4	6.0
카자흐스탄	.8	1.3	.0
몽골	35.9	59.0	.0
파키스탄	5.5	3.8	8.0
필리핀	7.8	9.0	6.0
러시아	1.6	2.6	.0
스리랑카	1.6	1.3	2.0
우즈베키스탄	2.3	3.8	.0
베트남	1.6	2.6	.0
기타 나라	1.6	1.3	2.0
계	100.0	100.0	100.0

B4. 귀하는 어디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모국	57.1	77.5	27.1
한국	42.9	22.5	72.9
제3국	.0	.0	.0
계	100.0	100.0	100.0

B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본국에 있는 자녀까지 포함하여, 전체 자녀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1명	54.0	51.9	57.1
2명	38.9	39.0	38.8
3명	4.0	6.5	.0
4명 이상	3.2	2.6	4.1
계	100.0	100.0	100.0

B6. 귀하의 자녀 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9)	(71)	(48)
1명	61.2	63.9	57.1
2명	34.7	31.9	38.8
3명	.8	.0	2.0
없다	3.3	4.2	2.0
계	100.0	100.0	100.0

B7.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국에 사는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순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7-1. 첫째 자녀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1)	(64)	(47)
첫째 자녀 성별	남자	61.3	62.5	59.6
	여자	38.7	37.5	40.4
첫째 자녀 출생지	모국	40.7	66.1	6.5
	한국	59.3	33.9	93.5
	제3국	.0	.0	.0
첫째 자녀의 출생년도	1984	1.1	2.0	.0
	1986	4.3	6.1	2.2
	1987	1.1	2.0	.0
	1988	2.1	4.1	.0
	1989	5.3	10.2	.0
	1990	3.2	6.1	.0
	1991	2.1	4.1	.0
	1992	9.6	12.2	6.7
	1993	1.1	.0	2.2
	1994	2.1	2.0	2.2
	1995	3.2	6.1	.0
	1996	5.3	4.1	6.7
	1997	5.3	4.1	6.7
	1998	9.6	.0	20.0
	1999	8.5	6.1	11.1
	2000	8.5	6.1	11.1
	2001	19.1	8.2	31.1
	2002	3.2	6.1	.0
	2003	5.3	10.2	.0
첫째 자녀의 국적	모국	54.3	78.2	20.5
	한국	45.7	21.8	79.5
	제3국	.0	.0	.0
첫째 자녀의 현재 교육상태	미취학	54.3	35.7	74.4
	초등학교	24.7	31.0	17.9
	중학교	11.1	21.4	.0
	고등학교	9.9	11.9	7.7
계		100.0	100.0	100.0

B7-2. 둘째 자녀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0)	(38)	(22)
둘째 자녀의 성별	남자	33.3	23.7	50.0
	여자	66.7	76.3	50.0
둘째 자녀 출생지	모국	42.4	64.9	4.5
	한국	57.6	35.1	95.5
	제3국	.0	.0	.0
둘째 자녀의 출생년도	1987	5.4	8.8	.0
	1988	8.9	14.7	.0
	1989	8.9	14.7	.0
	1991	5.4	8.8	.0
	1992	7.1	11.8	.0
	1993	8.9	11.8	4.5
	1994	3.6	5.9	.0
	1995	3.6	2.9	4.5
	1996	1.8	.0	4.5
	1997	5.4	2.9	9.1
	1998	7.1	2.9	13.6
	1999	1.8	.0	4.5
	2000	8.9	2.9	18.2
	2001	5.4	.0	13.6
	2002	14.3	8.8	22.7
	2003	3.6	2.9	4.5
둘째 자녀의 국적	모국	53.3	75.0	17.6
	한국	46.7	25.0	82.4
	제3국	.0	.0	.0
둘째 자녀의 현재 교육상태	미취학	48.8	24.0	87.5
	초등학교	31.7	44.0	12.5
	중학교	9.8	16.0	.0
	고등학교	9.8	16.0	.0
계		100.0	100.0	100.0

B7-2. 셋째 자녀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9)	(16)	(3)
셋째 자녀의 성별	남자	57.9	56.3	66.7
	여자	42.1	43.8	33.3
셋째 자녀 출생지	모국	65.0	81.3	.0
	한국	35.0	18.8	100.0
	제3국	.0	.0	.0
셋째 자녀의 출생년도	1990	18.2	22.2	.0
	1991	13.6	16.7	.0
	1992	4.5	5.6	.0
	1993	18.2	22.2	.0
	1994	9.1	11.1	.0
	1997	13.6	11.1	25.0
	1998	4.5	5.6	.0
	1999	9.1	5.6	25.0
	2000	4.5	.0	25.0
	2002	4.5	.0	25.0
셋째 자녀의 국적	모국	61.5	80.0	.0
	한국	38.5	20.0	100.0
	제3국	.0	.0	.0
셋째 자녀의 현재 교육상태	미취학	13.3	.0	100.0
	초등학교	33.3	38.5	.0
	중학교	53.3	61.5	.0
	고등학교	.0	.0	.0
계		100.0	100.0	100.0

B8. (국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낮에 아이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8)	(38)	(40)
비해당(학교에 다님)	14.1	23.7	5.0
나 ·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39.7	31.6	47.5
보육시설(어린이 집, 놀이방)	24.4	21.1	27.5
유치원	10.3	7.9	12.5
사설 학원	1.3	.0	2.5
없다(아이 혼자 지냄)	5.1	7.9	2.5
기타	5.1	7.9	2.5
계	100.0	100.0	100.0

B8-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 또는 유치원은 어떤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5)	(33)	(32)
일하는 회사	.0	.0	.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7.7	3.0	12.5
종교기관(교회 등)	35.4	51.5	18.8
시민단체	3.1	.0	6.3
사설 탁아소	38.5	24.2	53.1
기타	15.4	21.2	9.4
계	100.0	100.0	100.0

B8-2. 귀하 가족의 탁아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45)	(20)	(25)
10만원 미만	15.6	20.0	12.0
11만원 ~ 20만원	51.1	30.0	68.0
21만원 ~ 30만원	33.3	50.0	20.0
계	100.0	100.0	100.0
평균	19.49	20.50	18.68

B8-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46)	(24)	(22)
내 가족이나 친구가 더 잘 보아줄 것 같아서	19.6	20.8	18.2
비용부담 때문에	37.0	41.7	31.8
안심하고 보낼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8.7	8.3	9.1
기타	34.8	29.2	40.9
계	100.0	100.0	100.0

B9. 자녀에게 예방주사는 제 때에 맞추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0)	(56)	(44)
제 때에 맞추었다	62.0	46.4	81.8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38.0	53.6	18.2
계	100.0	100.0	100.0

B10. 자녀가 아플 경우,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0)	(47)
예	57.0	30.0	91.5
아니오	43.0	70.0	8.5
계	100.0	100.0	100.0

B10-1.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3)	(51)	(12)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3.8	21.6	33.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60.3	68.6	25.0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봐	4.8	5.9	.0
기타	11.1	3.9	41.7
계	100.0	100.0	100.0

B11. 귀하의 자녀가 아플 경우, 귀하가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2)	(64)	(48)
병원	59.8	39.1	87.5
약국	23.2	34.4	8.3
친구 및 친척	.9	.0	2.1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13.4	21.9	2.1
기타	2.7	4.7	.0
계	100.0	100.0	100.0

B12.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4)	(43)
돈 문제	50.5	48.4	53.5
학교 교육	22.4	26.6	16.3
탁아	3.7	1.6	7.0
한국사회 적응(한국어 습득 등)	6.5	7.8	4.7
귀국 후 모국사회 적응 준비	.9	1.6	.0
한국어, 의사소통	8.4	7.8	9.3
이웃의 차별	.9	1.6	.0
기타	6.5	4.7	9.3
계	100.0	100.0	100.0

B13. 귀하는 한국에서 태어난(혹은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7)	(49)	(38)
있다	18.4	14.3	23.7
없다	81.6	85.7	76.3
계	100.0	100.0	100.0

B13-1. 귀하는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1)	(42)	(29)
있다	78.9	81.0	75.9
없다	21.1	19.0	24.1
계	100.0	100.0	100.0

B13-2. 귀하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56)	(34)	(22)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1.8	2.9	.0
본국에서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17.9	23.5	9.1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12.5	17.6	4.5
함께 살고 싶어서	62.5	50.0	81.8
기타	5.4	5.9	4.5
계	100.0	100.0	100.0

B14. 한국에 있는 귀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복수 응답)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58)	(41)
미취학 연령 아동	53.5	31.0	85.4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학교 다님	41.4	56.9	19.5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학교 안 다님	21.2	27.6	12.2
15세이상으로 취업	3.0	3.4	2.4
15세 이상으로 실업	2.0	3.4	.0

B14-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9)	(14)	(5)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21.1	28.6	.0
한국말을 잘 못해서	31.6	35.7	20.0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	5.3	.0	20.0
일을 해서돈을 벌기 위해	5.3	7.1	.0
기타	36.8	28.6	60.0
계	100.0	100.0	100.0

C. 자녀의 학교 생활

C1. 현재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5)	(44)	(21)
있다	69.2	86.4	33.3
없다	30.8	13.6	66.7
계	100.0	100.0	100.0

C2.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1)	(44)	(17)
예	68.9	77.3	47.1
아니오	31.1	22.7	52.9
계	100.0	100.0	100.0

C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57)	(41)	(16)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29.8	36.6	12.5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것 같아서	19.3	19.5	18.8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33.3	34.1	31.3
모국어를 잊을 까봐	1.8	.0	6.3
기타	15.8	9.8	31.3
계	100.0	100.0	100.0

C4.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4)	(46)	(18)
한국어와 한글 교육	64.1	71.7	44.4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9.4	4.3	22.2
방과 후 프로그램	14.1	17.4	5.6
학비지원	4.7	2.2	11.1
기타	7.8	4.3	16.7
계	100.0	100.0	100.0

D. 언어 능력

D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6)	(59)	(47)
말하기	매우 잘못함	11.3	18.6	2.1
	별로 잘못함	47.2	57.6	34.0
	대체로 잘함	26.4	22.0	31.9
	매우 잘함	15.1	1.7	31.9
	계	100.0	100.0	100.0
	평균	48.4	35.6	64.5
듣기(이해하기)	매우 잘못함	4.3	8.2	.0
	별로 잘못함	41.9	55.1	27.3
	대체로 잘함	33.3	28.6	38.6
	매우 잘함	20.4	8.2	34.1
	계	100.0	100.0	100.0
	평균	56.6	45.6	68.9
읽기	매우 잘못함	28.6	42.6	13.6
	별로 잘못함	31.9	40.4	22.7
	대체로 잘함	22.0	10.6	34.1
	매우 잘함	17.6	6.4	29.5
	계	100.0	100.0	100.0
	평균	42.9	26.9	59.9
쓰기	매우 잘못함	33.7	53.3	13.6
	별로 잘못함	36.0	35.6	36.4
	대체로 잘함	16.9	8.9	25.0
	매우 잘함	13.5	2.2	25.0
	계	100.0	100.0	100.0
	평균	36.7	20.0	53.8

주: 한국어 실력에 대한 점수화는 “매우 잘못함”에 0점, “별로 잘못함”에 33.3점, “대체로 잘함”에 66.7점, “매우 잘함”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D2. 귀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1)	(46)
모국어	39.3	62.3	8.7
한국어	34.6	8.2	69.6
두가지 언어를 섞어서	26.2	29.5	21.7
계	100.0	100.0	100.0

D3.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는다	1.3	.0	3.2
가끔 한다	13.2	13.3	12.9
종종 한다	36.8	33.3	41.9
자주 규칙적으로 한다	48.7	53.3	41.9
계	100.0	100.0	100.0

D4.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는다	17.5	8.3	31.3
가끔 한다	20.0	14.6	28.1
종종 한다	26.3	27.1	25.0
자주 규칙적으로 한다	36.3	50.0	15.6
계	100.0	100.0	100.0

D5. 귀하(또는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6)	(45)	(31)
거의 하지 않음	34.8	43.2	20.0
한 달에 한두 차례	7.2	9.1	4.0
일주일에 한두 차례	18.8	15.9	24.0
거의 매일	39.1	31.8	52.0
계	100.0	100.0	100.0

D6. '현재 귀하의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0)	(47)	(33)
매우 만족	21.3	25.5	15.2
대체로 만족	13.8	8.5	21.2
약간 만족	43.8	42.6	45.5
보통	18.8	21.3	15.2
약간 불만	2.5	2.1	3.0
불만	.0	.0	.0
매우 불만	.0	.0	.0
계	100.0	100.0	100.0

D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57)	(42)
중학교 이하	3.0	3.5	2.4
고등학교	9.1	15.8	.0
전문대학(2년제)	2.0	.0	4.8
대학교(4년제)	67.7	70.2	64.3
대학원 석사과정	3.0	.0	7.1
대학원 박사과정	12.1	7.0	19.0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음	3.0	3.5	2.4
계	100.0	100.0	100.0

E. 사회적 연결망

E1. 한국에서 귀하와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친척은 몇 명입니까?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없으면, 0이라고 기재하십시오.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2)	(63)	(39)
0명	45.1	41.3	51.3
1 ~ 2명	17.6	20.6	12.8
3 ~ 5명	28.4	31.7	23.1
6명 이상	8.8	6.3	12.8
계	100.0	100.0	100.0
평균	1.86	1.90	1.79

E2. 귀하의 이웃에 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주로 누구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6)	(62)	(44)
모국출신 외국인노동자	29.2	32.3	25.0
제2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10.4	8.1	13.6
한국인 중산층	33.0	33.9	31.8
한국인 노동자계급 또는 하류층	17.0	22.6	9.1
기타	10.4	3.2	20.5
계	100.0	100.0	100.0

E3. 귀하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10)	(65)	(45)
매우 만족	13.6	13.8	13.3
대체로 만족	13.6	15.4	11.1
약간 만족	42.7	36.9	51.1
보통	20.9	23.1	17.8
약간 불만	4.5	7.7	.0
대체로 불만	.9	.0	2.2
매우 불만	3.6	3.1	4.4
계	100.0	100.0	100.0

E4. 귀하의 출신국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여쭙어보겠습니다.

(단위: %, 점수)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9)	(63)	(36)
모국출신 노동자들의 도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1	6.3	11.1
	약간 그런 편이다	39.4	38.1	41.7
	꽤 그런 편이다	39.4	46.0	27.8
	아주 많이 그렇다	13.1	9.5	19.4
	계	100.0	100.0	100.0
	평균	52.5	52.9	51.9
모국출신자들의 관계유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3.1	4.9	.0
	약간 그런 편이다	20.8	14.8	31.4
	꽤 그런 편이다	41.7	47.5	31.4
	아주 많이 그렇다	34.4	32.8	37.1
	계	100.0	100.0	100.0
	평균	69.1	69.4	68.6
모국에 대한 자부심	전혀 그렇지 않다	2.0	1.6	2.7
	약간 그런 편이다	13.0	6.3	24.3
	꽤 그런 편이다	29.0	27.0	32.4
	아주 많이 그렇다	56.0	65.1	40.5
	계	100.0	100.0	100.0
	평균	79.7	85.2	70.3
자녀가 모국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중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0	.0	2.7
	약간 그런 편이다	9.4	6.8	13.5
	꽤 그런 편이다	24.0	18.6	32.4
	아주 많이 그렇다	65.6	74.6	51.4
	계	100.0	100.0	100.0
	평균	84.7	89.3	77.5
자녀에게 들려주는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주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9.5	1.7	22.9
	약간 그런 편이다	26.3	23.3	31.4
	꽤 그런 편이다	30.5	36.7	20.0
	아주 많이 그렇다	33.7	38.3	25.7
	계	100.0	100.0	100.0
	평균	62.8	70.6	49.5
모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챙기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9.0	1.6	21.6
	약간 그런 편이다	27.0	22.2	35.1
	꽤 그런 편이다	33.0	42.9	16.2
	아주 많이 그렇다	31.0	33.3	27.0
	계	100.0	100.0	100.0
	평균	62.0	69.3	49.5

주: 출신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점수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약간 그런 편이다”에 33.3 점, “꽤 그런 편이다”에 66.7점, “아주 많이 그렇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5.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4)	(59)	(35)
모국출신자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	그렇다	54.3	62.7	40.0
	아니다	29.8	16.9	51.4
	모르겠다	16.0	20.3	8.6
동네의 모국출신자들은 돕지 않음	그렇다	12.2	14.0	9.1
	아니다	63.3	54.4	78.8
	모르겠다	24.4	31.6	12.1
모국출신자 중 배타적 모임이 있음	그렇다	50.0	56.9	38.2
	아니다	17.4	6.9	35.3
	모르겠다	32.6	36.2	26.5
모국출신자들은 잘 돕는다	그렇다	63.0	64.9	60.0
	아니다	18.5	14.0	25.7
	모르겠다	18.5	21.1	14.3
모국출신자들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함	그렇다	40.0	44.6	32.4
	아니다	27.8	21.4	38.2
	모르겠다	32.2	33.9	29.4
모국출신자의 가게에서 물건 구입	그렇다	44.4	45.6	42.4
	아니다	35.6	35.1	36.4
	모르겠다	20.0	19.3	21.2
한국인보다는 모국인들에게 돈을 빌림	그렇다	52.2	62.1	34.4
	아니다	24.4	17.2	37.5
	모르겠다	23.3	20.7	28.1
계		100.0	100.0	100.0

E6. 귀하의 이웃 사람들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1)	(46)	(35)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이 많다	전적으로 반대	9.9	13.0	5.7
	대체로 반대	4.9	6.5	2.9
	찬성도 반대도 아님	23.5	28.3	17.1
	대체로 찬성	51.9	41.3	65.7
	전적으로 찬성	9.9	10.9	8.6
	계	100.0	100.0	100.0
평균		61.7	57.6	67.1
이웃이 나와 비슷한 자녀양육의 견해를 보임	전적으로 반대	3.4	2.1	5.1
	대체로 반대	14.9	22.9	5.1
	찬성도 반대도 아님	34.5	37.5	30.8
	대체로 찬성	41.4	31.3	53.8
	전적으로 찬성	5.7	6.3	5.1
	계	100.0	100.0	100.0
평균		57.8	54.2	62.2
자녀에게 중요한 정보습득을 이웃에 의존	전적으로 반대	8.3	8.7	7.9
	대체로 반대	15.5	21.7	7.9
	찬성도 반대도 아님	25.0	28.3	21.1
	대체로 찬성	44.0	34.8	55.3
	전적으로 찬성	7.1	6.5	7.9
	계	100.0	100.0	100.0
평균		56.5	52.2	61.8

주: 이웃 사람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점수화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25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에 50점, “대체로 찬성한다”에 75점, “전적으로 찬성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 또는 애칭을 알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6)	(59)	(37)
안다	59.4	49.2	75.7
모른다	40.6	50.8	24.3
계	100.0	100.0	100.0

E7-1. 이름 또는 애칭을 알고 있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 수는 몇 명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1)	(39)	(32)
0명	16.9	20.5	12.5
1 ~ 2명	35.2	38.5	31.3
3 ~ 5명	33.8	30.8	37.5
6명 이상	14.1	10.3	18.8
계	100.0	100.0	100.0
합계	2.83	2.62	3.09

E8.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를 알고 지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92)	(58)	(34)
안다	59.8	56.9	64.7
모른다	40.2	43.1	35.3
계	100.0	100.0	100.0

E8-1. 알고 지내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 수는 몇 명입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72)	(40)	(32)
0명	26.4	27.5	25.0
1 ~ 2명	25.0	22.5	28.1
3 ~ 5명	30.6	35.0	25.0
6명 이상	18.1	15.0	21.9
계	100.0	100.0	100.0
합계	2.72	2.70	2.75

E9.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86)	(50)	(36)
TV프로그램 종류	규제한다	83.7	82.0	86.1
	아니다	16.3	18.0	13.9
TV시청 시작 또는 종료 시간	규제한다	64.2	57.6	70.6
	아니다	35.8	42.4	29.4
총 TV시청 시간	규제한다	58.6	54.1	63.6
	아니다	41.4	45.9	36.4
계		100.0	100.0	100.0

E10.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다음 활동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63)	(37)	(26)
학교 성적 유지	신경쓰고 있다	84.1	83.8	84.6
	아니다	15.9	16.2	15.4
숙제하기	신경쓰고 있다	86.8	87.5	85.7
	아니다	13.2	12.5	14.3
집안일하기	신경쓰고 있다	71.0	81.0	55.6
	아니다	29.0	19.0	44.4
계		100.0	100.0	100.0

E11. 귀하는 종합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단위: %)

	전체	외국인 가족	국제결혼 가족
(N)	(107)	(63)	(44)
매우 만족	17.8	25.4	6.8
대체로 만족	16.8	15.9	18.2
약간 만족	40.2	39.7	40.9
보통	15.0	12.7	18.2
약간 불만	7.5	3.2	13.6
매우 불만	2.8	3.2	2.3
계	100.0	100.0	100.0

부록 1-3. 조사 결과: 한국인 친구 조사

A. 청소년의 신상정보

A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20)	(377)	(243)
남자	52.6	53.8	50.6
여자	47.4	46.2	49.4
계	100.0	100.0	100.0

A2.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20)	(377)	(243)
1988	5.0	.0	12.8
1989	13.4	.3	33.7
1990	16.5	.5	41.2
1991	19.5	24.1	12.3
1992	21.6	35.5	.0
1993	20.3	33.4	.0
1994	3.7	6.1	.0
계	100.0	100.0	100.0

A3. 학생의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99)	(368)	(231)
공장노동자	14.5	14.9	13.9
사무원	27.0	26.6	27.7
판매원	5.5	6.0	4.8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1.5	.8	2.6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8	1.1	.4
기업경영자	3.8	3.8	3.9
전문기술자	8.2	10.6	4.3
교사, 교수	1.2	1.6	.4
변호사, 판사, 법률가	.3	.3	.4
의사	.7	.8	.4
상점운영	9.8	8.4	12.1
기타	26.5	25.0	29.0
계	100.0	100.0	100.0

A4. 학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2)	(371)	(241)
서울특별시	56.5	90.3	4.6
부산광역시	.2	.0	.4
경기도	43.1	9.4	95.0
경상남도	.2	.3	.0
계	100.0	100.0	100.0

A5. 학생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단위: 명)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20)	(377)	(243)
가족수	4.26	4.28	4.21

A6. 학생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위: 개)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20)	(377)	(243)
사용하는 방 개수	2.74	2.76	2.71

A7. 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단위: 명)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20)	(377)	(243)
사람수	1.08	1.20	.89

B. 가족 관계

B1. 학생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8)	(376)	(242)
아버지	92.4	91.8	93.4
어머니	93.2	92.8	93.8
형제 · 자매	85.9	84.3	88.4
할아버지	6.0	7.2	4.1
할머니	12.6	13.0	12.0
기타 가족 · 친척	6.6	8.5	3.7
아버지의 친구	.0	.0	.0
어머니의 친구	.0	.0	.0
기타	2.9	2.4	3.7

B2. 학생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2)	(370)	(242)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전혀 없음	5.7	5.9	5.4
	이따금 있음	20.6	18.4	24.0
	종종 있음	40.4	36.5	46.3
	자주 있음	22.7	25.9	17.8
	항상 있음	10.6	13.2	6.6
	계	100.0	100.0	100.0
평균		53.0	55.5	49.1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 경우	전혀 없음	4.4	6.0	2.1
	이따금 있음	17.2	18.0	16.1
	종종 있음	29.1	25.3	34.7
	자주 있음	30.2	27.2	34.7
	항상 있음	19.0	23.4	12.4
	계	100.0	100.0	100.0
평균		60.6	61.0	59.8
가족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 경우	전혀 없음	4.8	6.1	2.9
	이따금 있음	16.6	15.2	18.6
	종종 있음	27.8	26.2	30.2
	자주 있음	28.3	28.2	28.5
	항상 있음	22.5	24.3	19.8
	계	100.0	100.0	100.0
평균		61.8	62.4	61.0

주: 경우 점수는 “전혀 없음”에 0점, “이따금 있음”에 25점, “종종 있음”에 50점, “자주 있음”에 75점, “항상 있음”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B3. 다음과 같은 태도에 대해 학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0)	(370)	(240)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적으로 고려	전적으로 반대한다	7.9	7.3	8.8
	대체로 반대한다	33.8	29.5	40.4
	대체로 동의한다	49.2	51.6	45.4
	전적으로 동의한다	9.2	11.6	5.4
	계	100.0	100.0	100.0
	평균	53.2	55.9	49.2
친척만이 도와줄 수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5.8	34.3	37.9
	대체로 반대한다	42.1	37.9	48.3
	대체로 동의한다	18.4	23.1	11.3
	전적으로 동의한다	3.8	4.7	2.5
	계	100.0	100.0	100.0
	평균	30.1	32.7	26.1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	전적으로 반대한다	7.0	8.2	5.1
	대체로 반대한다	24.1	18.6	32.5
	대체로 동의한다	41.9	41.6	42.2
	전적으로 동의한다	27.1	31.5	20.3
	계	100.0	100.0	100.0
	평균	63.0	65.5	59.2

주: 동의 점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B4.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7)	(374)	(243)
매우 만족	33.7	35.3	31.3
만족	27.4	28.6	25.5
약간 만족	22.7	23.3	21.8
보통	12.5	9.6	16.9
약간 불만	1.8	1.6	2.1
불만	1.5	1.6	1.2
매우 불만	.5	.0	1.2
계	100.0	100.0	100.0
평균	78.7	80.3	76.4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B5. 학생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38)	(319)	(219)
용돈을 적게 준다	19.7	21.6	16.9
공부만을 강요한다	38.7	33.9	45.7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7.6	6.9	8.7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12.6	13.8	11.0
내 생각을 무시한다	18.8	17.9	20.1
기타	34.6	37.9	29.7

C. 교육·직업에 대한 태도

C1.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N)	(613)	(373)	(240)
중학교 이하	1.3	1.9	.4
고등학교	9.1	9.1	9.2
전문대학(2년제)	11.9	11.0	13.3
대학교(4년제)	62.3	61.7	63.3
대학원 석사과정	4.7	4.6	5.0
대학원 박사과정	9.3	10.5	7.5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1.3	1.3	1.3
계	100.0	100.0	100.0

C2.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N)	(611)	(368)	(243)
중학교 이하	3.4	3.5	3.3
고등학교	28.3	32.1	22.6
전문대학(2년제)	12.4	10.6	15.2
대학교(4년제)	48.1	45.4	52.3
대학원 석사과정	4.6	5.4	3.3
대학원 박사과정	2.9	2.7	3.3
학교를 전혀 다닐 수 없다	.2	.3	.0
계	100.0	100.0	100.0

C3.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1)	(369)	(242)
중등학교 이하	.5	.5	.4
고등학교	4.4	4.9	3.7
전문대학(2년제)	7.2	6.5	8.3
대학교(4년제)	65.1	60.2	72.7
대학원 석사과정	4.3	4.9	3.3
대학원 박사과정	18.3	23.0	11.2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2	.0	.4
계	100.0	100.0	100.0

C4. 학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9)	(376)	(243)
공장노동자	.8	1.1	.4
사무원	5.8	5.9	5.8
판매원	1.5	2.1	.4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8.9	9.0	8.6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1.9	1.9	2.1
기업경영자	1.1	.5	2.1
전문기술자	6.9	5.3	9.5
교사, 교수	15.5	14.1	17.7
변호사, 판사, 법률가	8.7	8.8	8.6
의사	9.2	10.1	7.8
기타	39.6	41.2	37.0
계	100.0	100.0	100.0

C5.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0)	(371)	(239)
매우 낮다	6.6	5.7	7.9
다소 낮은 편이다	39.5	35.6	45.6
다소 높은 편이다	47.2	51.5	40.6
매우 높다	6.7	7.3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51.4	53.5	48.1

주: 가능성 점수는 “매우 낮다”에 0점, “다소 낮은 편이다”에 33.3점, “다소 높은 편이다”에 66.7점, “매우 높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D. 친구 관계

D1. 개인적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96)	(366)	(230)
한국인 친구수	1~2명	17.1	12.6
	3~5명	31.7	29.1
	6~10명	19.0	18.3
	11~30명	13.1	13.0
	31명 이상	19.1	27.0
	계	100.0	100.0
	평균	21.13	28.80
외국인 친구수	0명	68.8	60.1
	1~2명	27.2	37.0
	3~5명	2.9	2.1
	6~10명	1.1	.8
	계	100.0	100.0
	평균	.53	.59

D2.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93)	(355)	(238)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만둔 친구	전혀 없다	84.3	86.8	80.7
	약간 있다	14.3	11.3	18.9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1.3	2.0	.4
	계	100.0	100.0	100.0
	평균	8.5	7.6	9.9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전혀 없다	47.8	48.2	47.3
	약간 있다	47.8	47.9	47.7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4.4	4.0	5.1
	계	100.0	100.0	100.0
	평균	28.3	27.9	28.9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42.9	46.3	37.9
	약간 있다	49.1	46.0	53.6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8.0	7.7	8.5
	계	100.0	100.0	100.0
	평균	32.5	30.7	35.3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34.4	34.3	34.6
	약간 있다	55.5	56.3	54.3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10.1	9.4	11.1
	계	100.0	100.0	100.0
	평균	37.8	37.6	38.3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전혀 없다	18.0	19.2	16.2
	약간 있다	38.9	39.3	38.5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43.0	41.5	45.3
	계	100.0	100.0	100.0
	평균	62.5	61.2	64.5

주: 친구 점수는 “전혀 없다”에 0점, “약간 있다”에 50점,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D3.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6)	(364)	(242)
매우 쉽다	6.9	5.2	9.5
대체로 쉬운 편이다	30.4	27.5	34.7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39.6	42.3	35.5
매우 어렵다	23.1	25.0	20.2
계	100.0	100.0	100.0

D3-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95)	(360)	(235)
사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39.3	36.9	43.0
외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62.0	63.6	59.6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5.4	5.8	4.7
외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예 멀리한다	3.4	4.2	2.1
기타	11.9	10.0	14.9

D4. 학생은 같은 반의 외국인 친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73)	(333)	(240)
매우 만족	18.0	16.2	20.4
만족	18.7	19.2	17.9
약간 만족	25.5	28.5	21.3
보통	26.9	24.0	30.8
약간 불만	3.5	3.6	3.3
불만	1.2	2.1	.0
매우 불만	6.3	6.3	6.3
계	100.0	100.0	100.0

D4-1.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싫어하는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10)	(297)	(213)
외국인이라서	10.0	10.1	9.9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8.0	36.0	40.8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18.6	19.5	17.4
피부색이 달라서	4.7	5.1	4.2
잘하는 것이 없어서	.6	.7	.5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4	.3	.5
건방지다고	12.5	9.8	16.4
특별한 이유 없이	16.5	20.2	11.3
기타	22.5	20.5	25.4

D5. 학생이 외국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4)	(364)	(240)
아무렇지도 않았다	28.5	25.0	33.8
신기했다	38.6	35.4	43.3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4.3	28.8	17.5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4.0	5.2	2.1
기타	4.6	5.5	3.3
계	100.0	100.0	100.0

D6. 학생은 외국인 친구를 학생의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9.3	9.9	8.3
없다	90.7	90.1	91.7
계	100.0	100.0	100.0

D7. 학생은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7.8	9.4	5.4
없다	92.2	90.6	94.6
계	100.0	100.0	100.0

D8.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에 외국인 친구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4)	(372)	(242)
있다	10.3	9.7	11.2
없다	89.7	90.3	88.8
계	100.0	100.0	100.0

D9.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생활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0)	(362)	(238)
매우 만족	10.5	9.9	11.3
만족	18.7	19.3	17.6
약간 만족	25.7	24.6	27.3
보통	27.3	29.3	24.4
약간 불만	9.3	6.6	13.4
불만	3.8	4.7	2.5
매우 불만	4.7	5.5	3.4
계	100.0	100.0	100.0

D10. 학생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1)	(371)	(240)
1시간 미만	14.2	20.2	5.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5.2	28.6	20.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9.6	20.8	17.9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5.7	12.4	20.8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7.9	7.3	8.8
5시간 이상	17.3	10.8	27.5
계	100.0	100.0	100.0

E. 학교 생활

E2. 학생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8)	(376)	(242)
1시간 미만	56.8	58.2	54.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6.7	24.2	30.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9.1	10.6	6.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0	3.7	4.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8	2.1	1.2
5시간 이상	1.6	1.1	2.5
계	100.0	100.0	100.0

E3. 학생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9)	(376)	(243)
부모님	39.4	56.4	13.2
형제자매	17.8	17.8	17.7
친구	25.0	10.6	47.3
학교 선생님	1.8	1.9	1.6
학원 또는 과외 선생님	5.5	5.3	5.8
기타	4.0	2.1	7.0
없다	6.5	5.9	7.4
계	100.0	100.0	100.0

E4. 다음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5)	(365)	(240)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8.6	6.6	11.7
	대체로 반대한다	25.6	18.1	37.1
	대체로 동의한다	54.2	58.9	47.1
	전적으로 동의한다	11.6	16.4	4.2
	계	100.0	100.0	100.0
	평균	56.3	61.8	47.9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전혀 사귀려 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0.5	27.7	34.7
	대체로 반대한다	41.7	38.5	46.4
	대체로 동의한다	21.0	24.7	15.5
	전적으로 동의한다	6.8	9.1	3.3
	계	100.0	100.0	100.0
	평균	34.7	38.4	29.1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5.2	2.7	9.1
	대체로 반대한다	9.7	3.8	18.6
	대체로 동의한다	46.1	37.5	59.1
	전적으로 동의한다	39.0	56.0	13.2
	계	100.0	100.0	100.0
	평균	73.0	82.7	58.8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6.1	3.6	10.0
	대체로 반대한다	14.7	9.6	22.5
	대체로 동의한다	44.6	39.3	52.5
	전적으로 동의한다	34.7	47.5	15.0
	계	100.0	100.0	100.0
	평균	69.3	77.0	57.5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3.6	26.9	18.5
	대체로 반대한다	34.9	34.1	36.1
	대체로 동의한다	30.9	27.5	36.1
	전적으로 동의한다	10.6	11.5	9.2
	계	100.0	100.0	100.0
	평균	42.9	41.2	45.4

주: 학교의 사정 점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5)	(365)	(240)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30.1	32.3	26.8
	대체로 반대한다	43.9	38.2	52.3
	대체로 동의한다	18.8	20.2	16.7
	전적으로 동의한다	7.2	9.3	4.2
	계	100.0	100.0	100.0
	평균	34.4	35.5	32.8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57.8	62.8	50.4
	대체로 반대한다	28.0	25.3	31.9
	대체로 동의한다	11.5	8.0	16.8
	전적으로 동의한다	2.7	4.0	.8
	계	100.0	100.0	100.0
	평균	19.7	17.7	22.7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8.8	35.7	18.3
	대체로 반대한다	31.9	26.9	39.6
	대체로 동의한다	27.1	25.2	30.0
	전적으로 동의한다	12.1	12.2	12.1
	계	100.0	100.0	100.0
	평균	40.9	38.0	45.3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13.1	8.4	20.2
	대체로 반대한다	33.6	27.4	42.9
	대체로 동의한다	43.8	52.0	31.5
	전적으로 동의한다	9.6	12.3	5.5
	계	100.0	100.0	100.0
	평균	50.0	56.1	40.8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	20.5	18.0	24.3
	대체로 반대한다	37.4	33.0	43.9
	대체로 동의한다	33.2	38.0	25.9
	전적으로 동의한다	8.9	11.0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43.5	47.3	37.8

주: 학교의 사정 점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에 0점, “대체로 반대한다”에 33.3점, “대체로 동의한다”에 66.7점,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5)	(365)	(240)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전혀 없었다	56.2	58.1	53.3
	1~2번	35.9	33.7	39.2
	3번 이상	7.9	8.2	7.5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	전혀 없었다	75.0	72.5	78.7
	1~2번	19.8	21.9	16.6
	3번 이상	5.2	5.6	4.7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전혀 없었다	74.7	66.9	86.5
	1~2번	16.5	21.3	9.3
	3번 이상	8.8	11.8	4.2
계		100.0	100.0	100.0

E6. 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8)	(368)	(240)
매우 만족	16.3	22.3	7.1
만족	21.2	26.4	13.3
약간 만족	22.9	23.1	22.5
보통	20.6	16.8	26.3
약간 불만	8.7	6.3	12.5
불만	3.9	2.2	6.7
매우 불만	6.4	3.0	11.7
계	100.0	100.0	100.0
평균	63.0	70.5	51.6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E7. 학생의 학교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3)	(366)	(237)
있다	56.9	41.3	81.0
없다	43.1	58.7	19.0
계	100.0	100.0	100.0

E8. 학생은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인 청소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603)	초등학교 (365)	중등학교 (238)
	(N)			
욕설, 협박, 모욕	전혀 없다	72.5	72.3	72.7
	별로 없다	11.8	12.1	11.3
	가끔 있다	9.8	9.9	9.7
	자주 있다	3.2	3.0	3.4
	매우 자주 있다	2.8	2.7	2.9
	계	100.0	100.0	100.0
	평균	13.0	13.0	13.1
돈, 물건 빼앗김	전혀 없다	80.7	83.7	76.1
	별로 없다	9.8	9.4	10.5
	가끔 있다	7.3	5.8	9.7
	자주 있다	1.2	1.1	1.3
	매우 자주 있다	1.0	.0	2.5
	계	100.0	100.0	100.0
	평균	8.0	6.1	10.9
따돌림	전혀 없다	78.7	76.2	82.4
	별로 없다	10.5	11.3	9.2
	가끔 있다	7.0	8.0	5.5
	자주 있다	2.5	3.6	.8
	매우 자주 있다	1.3	.8	2.1
	계	100.0	100.0	100.0
	평균	9.3	10.4	7.8
신체적 폭행	전혀 없다	87.2	89.0	84.5
	별로 없다	6.2	5.5	7.1
	가끔 있다	4.7	3.9	5.9
	자주 있다	1.0	.8	1.3
	매우 자주 있다	1.0	.8	1.3
	계	100.0	100.0	100.0
	평균	5.6	4.8	6.9

주: 피해 점수는 “전혀 없다”에 0점, “별로 없다”에 25점, “가끔 있다”에 50점, “자주 있다”에 75점, “매우 자주 있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E9.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0)	(369)	(241)
매우 만족	26.7	36.3	12.0
만족	25.6	29.5	19.5
약간 만족	22.1	19.8	25.7
보통	13.6	8.7	21.2
약간 불만	5.4	3.0	9.1
불만	1.8	1.1	2.9
매우 불만	4.8	1.6	9.5
계	100.0	100.0	100.0
평균	71.7	79.6	59.5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에 100점, "만족"에 83.3점, "약간 만족"에 66.7점, "보통"에 50점, "약간 불만"에 33.3점, "불만"에 16.7점, "매우 불만"에 0점을 부여하였다.

E10. 학생은 학교에서 학급임원(반장·부반장 등)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7)	(376)	(241)
없다	43.3	33.5	58.5
반장	31.4	43.6	12.4
부반장	30.1	37.0	19.5
각 부서 부장	22.5	22.3	22.8
분단장	14.9	20.5	6.2
기타	8.4	7.7	9.5

E11.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1)	(371)	(240)
있다	64.3	63.6	65.4
없다	35.7	36.4	34.6
계	100.0	100.0	100.0

E11-1. 학생이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43)	(330)	(213)
외국인노동자의 학국생활의 어려움	61.9	63.9	58.7
외국인노동자와 한국경제, 한국사회	6.6	5.8	8.0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15.7	14.2	17.8
기타	15.8	16.1	15.5
계	100.0	100.0	100.0

E12. 학생은 외국인 친구의 부모님들이 왜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8)	(366)	(242)
돈을 벌려고	56.7	52.7	62.8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17.1	21.9	9.9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10.4	8.2	13.6
기타	2.3	1.6	3.3
생각해본 적 없다	13.5	15.6	10.3
계	100.0	100.0	100.0

E13. 학생은 일본에 사는 한국 동포들처럼 민족이나 국적이 달라서 무시 받거나 차별 받는 글이나 영화·TV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16)	(373)	(243)
있다	62.3	56.6	71.2
없다	37.7	43.4	28.8
계	100.0	100.0	100.0

E14. 학생은 요즘 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9)	(367)	(242)
매우 심각하다	6.7	6.3	7.4
심각하다	8.7	6.8	11.6
보통이다	31.0	30.2	32.2
심각하지 않다	25.3	25.1	25.6
전혀 심각하지 않다	28.2	31.6	23.1
계	100.0	100.0	100.0

E15.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8)	(367)	(241)
있다	9.7	9.0	10.8
없다	90.3	91.0	89.2
계	100.0	100.0	100.0

E15-1.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52)	(340)	(212)
외국인이라서	33.3	35.6	29.7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20.7	22.4	17.9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19.9	21.5	17.5
피부색이 달라서	10.1	11.5	8.0
잘하는 것이 없어서	3.4	4.1	2.4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2.5	1.8	3.8
건방지다고	22.3	21.2	24.1
특별한 이유 없이	30.4	31.5	28.8
기타	18.1	15.9	21.7

E16.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싸웠을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578)	(348)	(230)
잘못한 친구를 혼내신다	60.9	60.3	61.7
외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5	.6	.4
한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8.7	7.5	10.4
그냥 내버려둔다	4.7	3.2	7.0
기타	25.3	28.4	20.4
계	100.0	100.0	100.0

F. 가치관과 태도

F1. 학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점수)

(N)		전체 (607)	초등학교 (367)	중등학교 (240)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 않다	8.6	7.6	10.0
	다소 중요하다	53.5	52.6	55.0
	매우 중요하다	37.9	39.8	35.0
	계	100.0	100.0	100.0
	평균	64.7	66.1	62.5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중요하지 않다	2.0	1.4	2.9
	다소 중요하다	20.7	21.3	19.9
	매우 중요하다	77.3	77.4	77.2
	계	100.0	100.0	100.0
	평균	87.7	88.0	87.1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중요하지 않다	2.6	1.4	4.6
	다소 중요하다	32.6	34.1	30.3
	매우 중요하다	64.8	64.6	65.1
	계	100.0	100.0	100.0
	평균	81.1	81.6	80.3
부모, 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중요하지 않다	9.6	7.6	12.5
	다소 중요하다	41.8	40.9	43.3
	매우 중요하다	48.6	51.5	44.2
	계	100.0	100.0	100.0
	평균	69.5	71.9	65.8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중요하지 않다	58.3	54.8	63.5
	다소 중요하다	30.7	33.0	27.4
	매우 중요하다	11.0	12.2	9.1
	계	100.0	100.0	100.0
	평균	26.3	28.7	22.8

주: 인생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에 0점, “다소 중요하다”에 50점, “매우 중요하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7)	(367)	(240)
자녀를 갖는 것	중요하지 않다	21.7	20.1	24.2
	다소 중요하다	47.5	47.3	47.9
	매우 중요하다	30.8	32.7	27.9
	계	100.0	100.0	100.0
	평균	54.6	56.3	51.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중요하지 않다	9.2	10.2	7.5
	다소 중요하다	36.3	40.3	30.1
	매우 중요하다	54.6	49.4	62.3
	계	100.0	100.0	100.0
	평균	72.7	69.6	77.4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42.4	44.0	40.0
	다소 중요하다	36.7	32.6	42.9
	매우 중요하다	20.9	23.4	17.1
	계	100.0	100.0	100.0
	평균	39.2	39.7	38.5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다	8.8	10.9	5.8
	다소 중요하다	31.4	32.6	29.6
	매우 중요하다	59.8	56.5	64.6
	계	100.0	100.0	100.0
	평균	75.5	72.8	79.4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다	3.5	2.2	5.4
	다소 중요하다	28.0	25.1	32.5
	매우 중요하다	68.5	72.7	62.1
	계	100.0	100.0	100.0
	평균	82.5	85.3	78.3

주: 인생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에 0점, “다소 중요하다”에 50점, “매우 중요하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2.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1주일에 몇 일 정도 자주 갖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7)	(369)	(238)
슬프다고 느낀다	거의 없다	44.0	45.3	42.0
	가끔 있다	35.7	36.9	34.0
	종종 있다	14.0	11.4	18.1
	자주 있다	6.3	6.5	5.9
	계	100.0	100.0	100.0
	평균	27.5	26.4	29.3
매사에 잘할 수 없다고 느낀다	거의 없다	46.2	48.4	42.9
	가끔 있다	34.6	33.3	36.6
	종종 있다	14.6	13.7	16.0
	자주 있다	4.6	4.6	4.6
	계	100.0	100.0	100.0
	평균	25.9	24.9	27.4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거의 없다	46.7	47.3	45.8
	가끔 있다	30.6	31.0	29.8
	종종 있다	16.3	15.4	17.6
	자주 있다	6.5	6.3	6.7
	계	100.0	100.0	100.0
	평균	27.5	26.9	28.4
우울하다	거의 없다	57.1	60.4	52.1
	가끔 있다	24.7	26.0	22.7
	종종 있다	11.4	7.4	17.6
	자주 있다	6.8	6.3	7.6
	계	100.0	100.0	100.0
	평균	22.6	19.8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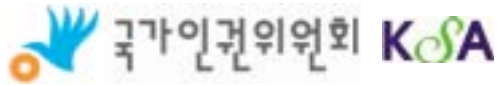
주: 느낌 점수는 “거의 없다”에 0점, “가끔 있다”에 33.3점, “종종 있다”에 66.7점, “자주 있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F3.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학생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단위: %, 점수)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N)		(609)	(370)	(239)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75.0	80.0	67.4
	별로 그렇지 않다	19.0	15.1	25.1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4.4	4.3	4.6
	정말로 그렇다	1.5	.5	2.9
	계	100.0	100.0	100.0
평균		10.8	8.5	14.4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5	11.1	14.6
	별로 그렇지 않다	25.2	25.8	24.2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35.2	34.2	36.7
	정말로 그렇다	27.1	28.8	24.6
	계	100.0	100.0	100.0
평균		59.0	60.2	57.1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53.5	61.0	41.8
	별로 그렇지 않다	29.4	25.5	35.6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12.5	9.5	17.2
	정말로 그렇다	4.6	4.1	5.4
	계	100.0	100.0	100.0
평균		22.8	18.9	28.7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57.8	58.6	56.7
	별로 그렇지 않다	26.4	26.4	26.3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11.0	9.5	13.3
	정말로 그렇다	4.8	5.4	3.8
	계	100.0	100.0	100.0
평균		20.9	20.6	21.4

주: 감정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33.3점, “부분적으로 사실이다”에 66.7점, “정말로 그렇다”에 100점을 부여하였다.



ID NO				
1	2	3	4	5
3				

외국인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답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 151-8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전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A. 청소년의 신상 정보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1) 남자

___ (2) 여자

2.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___ (00) 한국

___ (01) 방글라데시

___ (03) 중국 한족

___ (05) 인도네시아

___ (07) 가나

___ (09) 몽골

___ (11) 네팔

___ (13) 파키스탄

___ (15) 러시아

___ (17) 태국

___ (19) 베트남

___ (02) 중국 조선족

___ (04) 인도

___ (06) 이란

___ (08) 카자흐스탄

___ (10) 미얀마

___ (12) 나이지리아

___ (14) 필리핀

___ (16) 스리랑카

___ (18) 우즈베키스탄

___ (20) 기타 나라()

4. 당신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___ (1) 모국

___ (2) 한국

___ (3) 제3국

5.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입국 시기를 알려주십시오.

년 월

6. 당신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6-1. 행정구역

___ (01) 서울특별시

___ (04) 대전광역시

___ (07) 울산광역시

___ (10) 충청북도

___ (13) 전라남도

___ (16) 제주도

___ (02) 인천광역시

___ (05) 부산광역시

___ (08) 경기도

___ (11) 경상남도

___ (14) 전라북도

___ (03) 대구광역시

___ (06) 광주광역시

___ (09) 충청남도

___ (12) 경상북도

___ (15) 강원도

6-2. 지역규모

___ (1) 도시지역

___ (2) 농촌지역

B. 가족 관계

— (1) 아버지 — (2) 어머니 — (3) 형제 · 자매
— (4) 할아버지 — (5) 할머니 — (6) 기타 가족 · 친척
— (7) 아버지의 친구 — (8) 어머니의 친구 — (9) 기타()

명

— (00) 비해당(아버지가 한국에 안 계신다)
— (01) 공장노동자
— (02) 건설노동자
— (03)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 (04) 농림축산업노동자
— (05) 식당(음식점) 주방·청소·서빙
— (06) 간병인
— (07) 가정부·파출부·아이돌보기
— (08) 유흥업소 접대원
— (09) 상점주인
— (10) 실업자
— (11) 기타()

— (00) 한국	— (02) 중국 조선족
— (01) 방글라데시	— (04) 인도
— (03) 중국 한족	— (06) 이란
— (05) 인도네시아	— (08) 카자흐스탄
— (07) 가나	— (10) 미얀마
— (09) 몽골	— (12) 나이지리아
— (11) 네팔	— (14) 필리핀
— (13) 파키스탄	— (16) 스리랑카
— (15) 러시아	— (18) 우즈베키스탄
— (17) 태국	— (20) 기타 나라()
— (19) 베트남	

— (00) 비해당(어머니가 한국에 안 계신다)
— (01) 공장노동자
— (02) 건설노동자
— (03)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 (04) 농림축산업노동자
— (05) 식당(음식점) 주방·청소·서빙
— (06) 간병인
— (07) 가정부·파출부·아이돌보기
— (08) 유흥업소 접대원
— (09) 상점주인
— (10) 실업자
— (11) 주부
— (12) 기타()

6. 당신 어머니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00) 한국
☐ (01) 방글라데시
☐ (02) 중국 조선족
☐ (03) 중국 한족
☐ (04) 인도
☐ (05) 인도네시아
☐ (06) 이란
☐ (07) 가나
☐ (08) 카자흐스탄
☐ (09) 몽골
☐ (10) 미얀마
☐ (11) 네팔
☐ (12) 나이지리아
☐ (13) 파키스탄
☐ (14) 필리핀
☐ (15) 러시아
☐ (16) 스리랑카
☐ (17) 태국
☐ (18) 우즈베키스탄
☐ (19) 베트남
☐ (20) 기타 나라()

7. 당신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01) 공장, 상가, 식당, 여관 등(비거주용 건물내 공간)
☐ (0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 (03)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 (04) 지하 · 반지하방
☐ (05) 옥탑방
☐ (06) 단독주택(지하 ·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 (07) 연립 · 다세대 · 다가구주택(지하 · 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 (08) 아파트
☐ (09) 기숙사
☐ (10) 기타()

8. 당신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

9. 당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10. 당신은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주로 어느 언어를 사용합니까?

- ☐ (1) 모국어
☐ (2) 한국어
☐ (3)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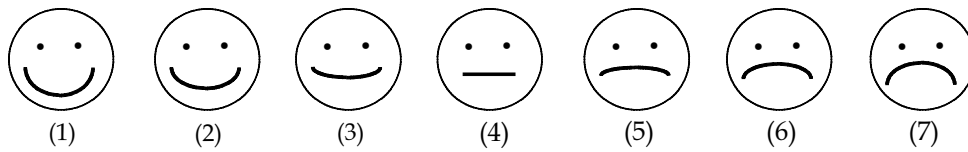
11.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전혀 없음	이따금 있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11-1.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1)	(2)	(3)	(4)	(5)
11-2.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 경우	(1)	(2)	(3)	(4)	(5)
11-3. 가족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 경우	(1)	(2)	(3)	(4)	(5)

12. 다음과 같은 태도에 대해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1. 어떤 사람의 취직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1)	(2)	(3)	(4)
12-2.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경우 친척만이 도와줄 수 있다	(1)	(2)	(3)	(4)
12-3. 직업을 구할 때, 먼 지역의 좋은 일자리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1)	(2)	(3)	(4)

13.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14. 당신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 (1) 용돈을 적게 준다 | — (2) 공부만 강요한다 |
| — (3)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 — (4)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
| — (5) 내 생각을 무시한다 | — (6) 기타() |

C. 언어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대체로 잘함	매우 잘함
1-1. 말하기	(1)	(2)	(3)	(4)
1-2. 듣기(이해하기)	(1)	(2)	(3)	(4)
1-3. 읽기	(1)	(2)	(3)	(4)
1-4. 쓰기	(1)	(2)	(3)	(4)

2. 당신의 모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대체로 잘함	매우 잘함
2-1. 말하기	(1)	(2)	(3)	(4)
2-2. 듣기(이해하기)	(1)	(2)	(3)	(4)
2-3. 읽기	(1)	(2)	(3)	(4)
2-4. 쓰기	(1)	(2)	(3)	(4)

3. 당신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 |

3-1. 당신은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당신이 희망하는 수준을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 |

4.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전혀 다닐 수 없다 | |

4-1.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전혀 다닐 수 없다 | |

5.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 |

5-1.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 |

6. 당신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 | |
|------------------------|-----------------------|
| — (01) 공장노동자 | — (02) 사무원 |
| — (03) 판매원 | — (04)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
| —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 (06) 기업경영자 |
| — (07) 전문기술자 | — (08) 교사, 교수 |
| — (09) 변호사, 판사, 법률가 | — (10) 의사 |
| — (11) 기타() | |

7.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신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1) 매우 낮다 — (2) 다소 낮은 편이다
— (3) 다소 높은 편이다 — (4) 매우 높다

D. 친구 관계

1. 한국에서 개인적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1-1. 모국인 친구	명
-------------	---

1-2. 한국인 친구	명
-------------	---

1-3. 제3국인 친구 명

2.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다	약간 있다	많다, 또는 대부분이다
2-1.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친구	(1)	(2)	(3)
2-2.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친구	(1)	(2)	(3)
2-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할 계획인 친구	(1)	(2)	(3)
2-4. 2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2-5.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인 친구	(1)	(2)	(3)

3.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쉽다 — (2) 대체로 쉬운 편이다
— (3) 대체로 어려운 편이다 — (4) 매우 어렵다

3-1.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1) 사귄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다
— (2)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 (3) 한국인 친구들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려 하지 않는다
— (4) 한국인 청소년이 나를 아예 멀리한다
— (5)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
— (6) 기타()

4. 당신은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5번 문항으로)

4-1. 당신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1) 모국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 (2) 한국 아이들과 구별되기 싫어서
— (3) 한국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 (4)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용이하도록
— (5) 기타()

4-2. 당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불리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 (1) 본래 이름 — (2) 한국 이름
— (3) 내가 좋아하는 별명 — (4) 내가 싫어하는 별명

4-3. 당신은 본래 이름과 한국어 이름 중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까?

- (1) 본래 이름 _____ (2) 한국 이름 _____

5. 당신은 현재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1) 다닌다(6번 문항으로) — (2) 다니지 않는다(5-1번 문항으로)

5-1. 당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 (2)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 (3) 한국말을 잘 못해서 — (4) 학교 가기가 겁이 나서
— (5) 한국인 청소년의 따돌림 때문에 — (6)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 (7) 기타()

6. 당신은 교과 공부를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한다면 누구(무엇)의 도움으로 공부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1)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 (2) 책
— (3) TV 프로그램 — (4) 비디오 또는 오디오 교재
— (5)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 — (6) 한국인 친구
— (7)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의 교육 — (8) 사설 학원
— (9) 기타()

7.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 (1) 전업(full-time) 직업이 있다 — (2) 파트타임(part-time) 직업이 있다
— (3) 없다. 전업 직업을 구하고 있다 — (4) 없다. 파트타임 직업을 구하고 있다
— (5) 없다. 취직할 생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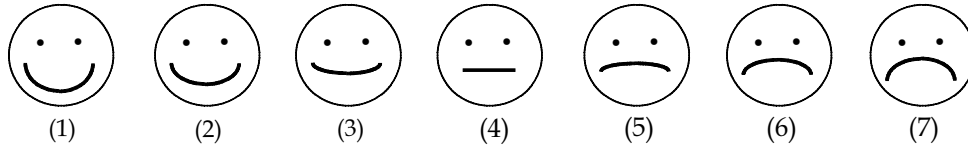
7-1. 당신은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01) 공장노동자 — (02) 건설노동자
— (03)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 (04) 농림축산업노동자
— (05) 식당(음식점) 주방·청소·서빙 — (06) 간병인
— (07) 가정부·파출부 — (08) 유흥업소 접대원
— (09) 가게(수퍼마켓·편의점 등) 종업원 — (10) 주유소 주유원
— (11) 학생 — (12) 실업자(일자리를 구한 적 있다)
— (13) 그냥 논다(일자리를 구한 적 없다) — (14) 기타()

8. 당신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1) 다닌다(8-1번 문항으로) — (2) 다니지 않는다(9번 문항으로)

8-1.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9. 당신은 학교·학원 또는 일이 끝난 후에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냅니까?

- | | |
|--------------|---------------|
| — (1) 혼자 | — (2) 한국인 친구 |
| — (3) 모국인 친구 | — (4) 제3국인 친구 |
| — (5) 부모님 | — (6) 형제·자매 |
| — (7) 기타() | |

10. 당신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십니까?

- | | |
|---------------------|---------------------|
| — (1) 1시간 미만 |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 —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 —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 (6) 5시간 이상 |

E. 학교 생활

1. 당신은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십니까?

- | | |
|------------|--------------------------|
| — (1) 초등학교 | — (2) 중학교 |
| — (3) 고등학교 | — (4)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F섹션으로) |

2. 당신은 주중(월~금요일)에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십니까?

- | | |
|---------------------|---------------------|
| — (1) 1시간 미만 |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 —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 (4)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 — (5)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 (6) 5시간 이상 |

3. 당신은 숙제를 하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누구로부터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
|------------------------|------------------------|
| — (1) 부모님 | — (2) 형제자매 |
| — (3) 친구 | — (4) 학교 선생님 |
| — (5) 학원 선생님 또는 과외 선생님 | — (6)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상담원 |
| — (7) 기타() | — (8) 없다 |

4. 다음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4-1.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1)	(2)	(3)	(4)
4-2.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전혀 사귀려 하지 않는다	(1)	(2)	(3)	(4)
4-3.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1)	(2)	(3)	(4)
4-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4-5.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4-6.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1)	(2)	(3)	(4)
4-7.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1)	(2)	(3)	(4)
4-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1)	(2)	(3)	(4)
4-9. 학생 성적을 공정하게 부여한다	(1)	(2)	(3)	(4)
4-10.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1)	(2)	(3)	(4)

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1~2번	3번 이상
5-1.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	(2)	(3)
5-2.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	(1)	(2)	(3)
5-3.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1)	(2)	(3)

6. 귀하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6-1번 문항으로) ___ (2) 그런 적 없다(7번 문항으로)

6-1. 왜 한국인 학생들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___ (1) 외국인이라서 | _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
| ___ (3) 내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 ___ (4) 피부색이 달라서 |
| ___ (5) 잘하는 것이 없어서 | ___ (6)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
| ___ (7) 건방지다고 | ___ (8) 특별한 이유 없이 |
| ___ (9) 기타() | |

6-2.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___ (1) 있다(6-2.1번 문항으로) ___ (2) 없다(6-3번 문항으로)

6-2.1. 당신이 피해를 상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___ (1) 가족 · 친척 | ___ (2) 모국인 친구 |
| ___ (3) 한국인 친구 | ___ (4) 제3국인 친구 |
| ___ (5) 교사 | ___ (6)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
| ___ (7) 성직자 | ___ (8) 신고전화(경찰 · 검찰) |
| ___ (9) 기타() | |

6-2.2. 여러 상담자 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 주세요.

- | | |
|--------------------------------------|--|
| ☐ (1) 가족 · 친척 | ☐ (2) 모국인 친구 |
| ☐ (3) 한국인 친구 | ☐ (4) 제3국인 친구 |
| ☐ (5) 교사 | ☐ (6)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직원 |
| ☐ (7) 성직자 | ☐ (8) 경찰 · 검찰에 전화 또는 신고 |
| ☐ (9) 기타() | |

6-2.3. 그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
| ☐ (3) 약간 도움이 되었다 | ☐ (4)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6-3. 한국인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1)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 ☐ (2) 야단 맞을 것 같아서 |
| ☐ (3)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 ☐ (4) 일이 커질 것 같아서 |
| ☐ (5)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 ☐ (6) 보복 당할 것 같아서 |
| ☐ (7)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 ☐ (8)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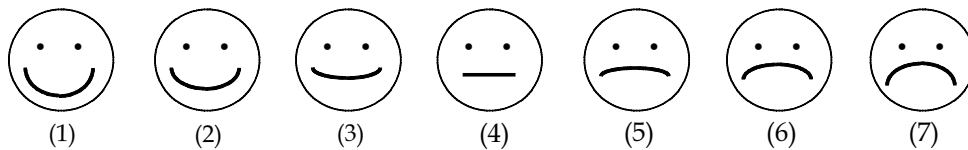
6-4. 한국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 | | |
|--|---|
| ☐ (1) 학교 가기가 두려웠다 | ☐ (2) 사람들을 대하기가 무섭거나 싫었다 |
| ☐ (3) 정신적 불안이나 악몽에 시달렸다 | ☐ (4) 학교에 가지 않았다 |
| ☐ (5) 가출을 하였다 | ☐ (6) 전문상담기관이나 병원에 갔다 |
| ☐ (7) 기타() | |

6-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집단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 훈화 · 상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 ☐ (2) 없다 |
| ☐ (3) 모르겠다 | |

7. 당신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8. 당신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피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 (1) 미숙한 한국어 | ☐ (2) 친구 사귀기가 힘들 |
| ☐ (3) 낮은 성적 | ☐ (4) 한국 학생들로부터 따돌림 · 놀림 · 구타당하는 것 |
| ☐ (5) 소비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 ☐ (6) 한국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어 따라가기 힘들 |
| ☐ (7) 기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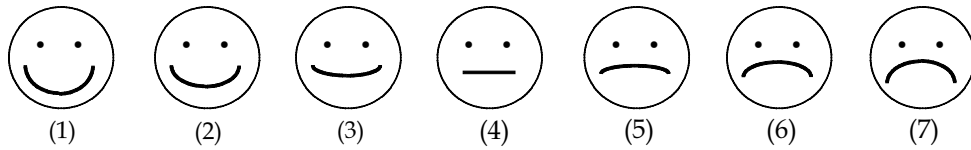
9. 학교에 다른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 ☐ (2) 없다 |
|---------------------------------|---------------------------------|

10. 당신은 학교 시설물(컴퓨터 ·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
|---------------------------------|---------------------------------|
| ☐ (1) 있다 | ☐ (2) 없다 |
|---------------------------------|---------------------------------|

11. 당신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12. 당신이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 | |
|--|--|
| ☐ (1)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한다 | ☐ (2) 공부만 강요한다 |
| ☐ (3) 자주 때린다 | ☐ (4)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
| ☐ (5)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 ☐ (6) 기타() |

13. 당신은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13-1번 문항으로) | ☐ (2) 없다(14번 문항으로) |
| ☐ (3) 모르겠다(14번 문항으로) | |

13-1. 당신이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 | |
|---|-------------------------------------|
| ☐ (1) 욕설 · 헐박 · 모욕 | ☐ (2) 신체적 폭행 |
| ☐ (3) 심한 체벌 | ☐ (4) 무시함 |
| ☐ (5) 부당한 차별 대우 | ☐ (6) 기타() |

14.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다르게 당신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1) 있다(14-1번 문항으로) | ☐ (2) 없다(15번 문항으로) |
|---|---|

14-1. 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부당하게 차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 (1) 외국인이라서 | ☐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
| ☐ (3) 내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 ☐ (4) 피부색이 달라서 |
| ☐ (5) 공부를 잘못해서 | ☐ (6) 건망지다고 |
| ☐ (7) 특별한 이유 없이 | ☐ (8) 기타() |

15. 당신은 학교에서 학급임원(반장 · 부반장 등)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 | |
|----------------------------------|--------------------------------------|
| ☐ (1) 없다 | ☐ (2) 반장 |
| ☐ (3) 부반장 | ☐ (4) 각 부서 부장 |
| ☐ (5) 분단장 | ☐ (6) 기타() |

F. 가치관과 태도

1.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1. 한국에서는 경제적 기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있다	(1)	(2)	(3)	(4)
1-2.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약화시킨다	(1)	(2)	(3)	(4)
1-3.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	(1)	(2)	(3)	(4)
1-4. 한국인들은 피부색에 관계 없이 외국인을 경제적 기회면에서 평등하게 대우한다	(1)	(2)	(3)	(4)
1-5. 나의 모국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다	(1)	(2)	(3)	(4)
1-6. 보통 한국인들은 검은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1)	(2)	(3)	(4)
1-7. 보통 한국인들은 흰 피부색의 외국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1)	(2)	(3)	(4)

2. 당신은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2-1. 욕설 · 헐박 · 모욕	(1)	(2)	(3)	(4)	(5)
2-2. 돈 · 물건 빼앗김	(1)	(2)	(3)	(4)	(5)
2-3.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1)	(2)	(3)	(4)	(5)
2-4. 신체적 폭행	(1)	(2)	(3)	(4)	(5)
2-5. 강간, 성폭행	(1)	(2)	(3)	(4)	(5)

3. 당신은 자신이 차별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3-1번 문항으로)

— (2) 없다(4번 문항으로)

3-1. 당신을 차별하는 한국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1) 학교 선생님

— (2) 학교 친구

— (3) 이웃 주민

— (4) 상점 주인

— (5) 버스·택시 운전자

— (6) 공무원

— (7) 목사·신부님 등 성직자

— (8)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상담원

— (9) 기타(

)

4.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4-01. 돈을 많이 버는 것	(1)	(2)	(3)
4-02.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1)	(2)	(3)
4-03.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	(1)	(2)	(3)
4-04. 부모·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1)	(2)	(3)
4-05.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1)	(2)	(3)
4-06. 자녀를 갖는 것	(1)	(2)	(3)
4-07.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1)	(2)	(3)
4-08.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1)	(2)	(3)
4-09.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1)	(2)	(3)
4-10.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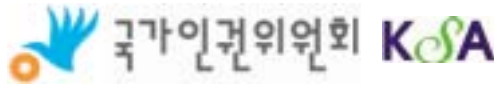
5.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 1주일에 몇 일 정도 다음 증상을 느꼈습니까?

	거의 없었다 (1주일에 한 차례 미만)	가끔 있었다 (1주일에 1~2일)	종종 있었다 (1주일에 3~4일)	자주 있었다 (1주일에 5~7일)
5-1. 슬프다고 느꼈다	(1)	(2)	(3)	(4)
5-2.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느꼈다	(1)	(2)	(3)	(4)
5-3. 밥맛이 없어 먹기 싫었다	(1)	(2)	(3)	(4)
5-4. 우울했다	(1)	(2)	(3)	(4)

6.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그렇다
6-1.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1)	(2)	(3)	(4)
6-2.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2)	(3)	(4)
6-3.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1)	(2)	(3)	(4)
6-4.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6-5.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차별할 것이다	(1)	(2)	(3)	(4)

♪ 당신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ID NO				
1	2	3	4	5
6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에 대한 부모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부모님의 생각을 여쭙어 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답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 151-8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전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A. 응답자의 신상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1) 남자

___ (2) 여자

2.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	---	--	---

3.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___ (00) 한국

___ (01) 방글라데시

___ (03) 중국 한족

___ (05) 인도네시아

___ (07) 가나

___ (09) 몽골

___ (11) 네팔

___ (13) 파키스탄

___ (15) 러시아

___ (17) 태국

___ (19) 베트남

___ (02) 중국 조선족

___ (04) 인도

___ (06) 이란

___ (08) 카자흐스탄

___ (10) 미얀마

___ (12) 나이지리아

___ (14) 필리핀

___ (16) 스리랑카

___ (18) 우즈베키스탄

___ (20) 기타 나라()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 (1) 기독교

___ (3) 불교

___ (5) 힌두교

___ (7) 종교 없음

___ (2) 천주교

___ (4) 이슬람교

___ (6) 기타 종교()

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___ (1) 중학교 이하

___ (3) 전문대학(2년제)

___ (5) 대학원 석사과정

___ (2) 고등학교

___ (4) 대학교(4년제)

___ (6) 대학원 박사과정

6. 귀하는 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습니까?

___ (1) 졸업

___ (3) 재학

___ (2) 중퇴

___ (4) 휴학

7. 귀하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년		월
--	---	--	---

8.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8-1. 행정구역

- | | | |
|-------------------------------------|-------------------------------------|-------------------------------------|
| ☐ (01) 서울특별시 | ☐ (02) 인천광역시 | ☐ (03) 대구광역시 |
| ☐ (04) 대전광역시 | ☐ (05) 부산광역시 | ☐ (06) 광주광역시 |
| ☐ (07) 울산광역시 | ☐ (08) 경기도 | ☐ (09) 충청남도 |
| ☐ (10) 충청북도 | ☐ (11) 경상남도 | ☐ (12) 경상북도 |
| ☐ (13) 전라남도 | ☐ (14) 전라북도 | ☐ (15) 강원도 |
| ☐ (16) 제주도 | | |

8-2. 지역규모

- ☐ (1) 도시지역 ☐ (2) 농촌지역

9. 당신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01) 공장, 상가, 식당, 여관 등(비거주용 건물내 공간)
- ☐ (02) 재개발지역의 가이주단지 등(임시가건물)
- ☐ (03)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등(무허가불량주택)
- ☐ (04) 지하·반지하방
- ☐ (05) 옥탑방
- ☐ (06) 단독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 ☐ (07)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지하·반지하방, 옥탑방 제외)
- ☐ (08) 아파트
- ☐ (09) 기숙사
- ☐ (10) 기타()

10.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합니까?

- | | |
|--|--|
| ☐ (01) 공장노동자 | ☐ (02) 건설노동자 |
| ☐ (03) 어부 또는 수산업노동자 | ☐ (04) 농림축산업노동자 |
| ☐ (05) 식당(음식점) 주방·청소·서빙 | ☐ (06) 간병인 |
| ☐ (07) 가정부·파출부·아이돌보기 | ☐ (08) 유흥업소 접대원 |
| ☐ (09) 실업자 | ☐ (10) 상점운영 |
| ☐ (11) 주부 | ☐ (12) 기타() |

11. 귀하의 한 달 평균임금은 얼마입니까?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한 총 임금)

만원

12. 귀하의 체류자격은 어느 것입니까?

- ☐ (1) 연수취업자(E-8)
- ☐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생(D-3-2부터 D-3-6까지)
- ☐ (3)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D-3-1)
- ☐ (4) 예술·홍행(E-6) 자격 연예인
- ☐ (5) 상점운영·기업투자(D-8)
- ☐ (6) 불법체류자(단기방문사증 또는 밀입국자)

12-1. (불법체류자인 경우만) 귀하의 사증(visa) 상태는 어떻습니까?

- ☐ (1) 2003년 8월까지 출국이 유예된 사람
☐ (2) 2004년 3월까지 출국이 유예된 사람
☐ (3) 자진신고 거부자(자발적 거부, 또는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 (4) 자진신고 기간 후 입국자
☐ (5) 밀입국자

13. 귀하는 2003년 8월 31일(또는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자진 출국할 계획입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14. 만약 귀하가 한국에서 강제출국 조치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 (1) 모국으로 돌아간다 ☐ (2) 일자리를 구하러 제3국으로 간다
☐ (3) 어떻게든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 (4) 기타()

15. 귀하는 여권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고 싶습니까?

- ☐ (1) 즉시 떠나고 싶다 ☐ (2) 3개월까지
☐ (3) 6개월까지 ☐ (4) 1년까지
☐ (5) 2년까지 ☐ (6) 3년까지
☐ (7) 5년까지 ☐ (8) 5년 이상

16. 귀하가 한국에 (당분간 혹은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충분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 (2) 모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 (3) 모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 (4) 한국의 생활여건이 모국보다 좋기 때문에
☐ (5) 기타()

B. 가족

1. 당신은 현재 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은 방 또는 집을 사용하는 사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1)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 (2) 자녀 ☐ (3) 아버지
☐ (4) 어머니 ☐ (5) 기타 가족·친척 ☐ (6) 친구
☐ (7) 기타()

2. 귀하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3. 귀하의 배우자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 |
|-------------------------------------|--|
| ☐ (00) 한국 | ☐ (02) 중국 조선족 |
| ☐ (01) 방글라데시 | ☐ (04) 인도 |
| ☐ (03) 중국 한족 | ☐ (06) 이란 |
| ☐ (05) 인도네시아 | ☐ (08) 카자흐스탄 |
| ☐ (07) 가나 | ☐ (10) 미얀마 |
| ☐ (09) 몽골 | ☐ (12) 나이지리아 |
| ☐ (11) 네팔 | ☐ (14) 필리핀 |
| ☐ (13) 파키스탄 | ☐ (16) 스리랑카 |
| ☐ (15) 러시아 | ☐ (18) 우즈베키스탄 |
| ☐ (17) 태국 | ☐ (20) 기타 나라() |
| ☐ (19) 베트남 | |

4. 귀하는 어디에서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까?

- | | |
|----------------------------------|---------------------------------|
| ☐ (1) 모국 | ☐ (2) 한국 |
| ☐ (3) 제3국 | |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본국에 있는 자녀까지 포함하여, 전체 자녀 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 | |
|---------------------------------|------------------------------------|
| ☐ (1) 1명 | ☐ (2) 2명 |
| ☐ (3) 3명 | ☐ (4) 4명 이상 |

6. 귀하의 자녀 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 | |
|---------------------------------|------------------------------------|
| ☐ (1) 1명 | ☐ (2) 2명 |
| ☐ (3) 3명 | ☐ (4) 4명 이상 |
| ☐ (5) 없다 | |

7.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국에 사는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순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순서	성별	자녀 출생지	태어난 해	국적	현재 교육상태
7-1. 첫째 자녀	☐ (1) 남자	☐ (1) 모국	년	☐ (1) 모국	☐ (1) 미취학
	☐ (2) 여자	☐ (2) 한국		☐ (2) 한국	☐ (2) 초등학교
		☐ (3) 제3국		☐ (3) 제3국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7-2. 둘째 자녀	☐ (1) 남자	☐ (1) 모국	년	☐ (1) 모국	☐ (1) 미취학
	☐ (2) 여자	☐ (2) 한국		☐ (2) 한국	☐ (2) 초등학교
		☐ (3) 제3국		☐ (3) 제3국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7-3. 셋째 자녀	☐ (1) 남자	☐ (1) 모국	년	☐ (1) 모국	☐ (1) 미취학
	☐ (2) 여자	☐ (2) 한국		☐ (2) 한국	☐ (2) 초등학교
		☐ (3) 제3국		☐ (3) 제3국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8. (국내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낮에 아이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 | | |
|---|--|
| ☐ (01) 비해당(학교에 다닌다) | ☐ (02) 나·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 |
| ☐ (03)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 ☐ (04) 유치원 |
| ☐ (05) 사설 학원 | ☐ (06) 한글교실 |
| ☐ (07) 개인 탁아모 | ☐ (08) 모국인 친구 |
| ☐ (09) 없다(아이 혼자 지낸다) | ☐ (10) 기타() |

8-1.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탁아소 또는 유치원은 어떤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 | |
|---|---|
| ☐ (1) 일하는 회사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3) 종교기관(교회 등) | ☐ (4) 시민단체 |
| ☐ (5) 사설 탁아소 | ☐ (6) 기타() |

8-2. 귀하 가족의 탁아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됩니까?

만원

8-3.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 |
|---|
| ☐ (1) 남보다는 내 가족 혹은 친구가 더 잘 보아줄 것 같아서 |
| ☐ (2)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
| ☐ (3) 비용부담 때문에 |
| ☐ (4)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서 |
| ☐ (5) 기타() |

9. 자녀에게 예방주사는 제 때에 맞추었습니까?

- | | |
|--|---|
| ☐ (1) 제 때에 맞추었다 | ☐ (2) 제 때에 맞추지 못했다 |
|--|---|

10. 자녀가 아플 경우,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 | | |
|--|--|
| ☐ (1) 예(11번 문항으로) | ☐ (2) 아니오(10-1번 문항으로) |
|--|--|

10-1.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
| ☐ (2)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
| ☐ (3)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봐 |
| ☐ (4) 기타() |

11. 귀하의 자녀가 아플 경우, 귀하가 주로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1) 병원 | ☐ (2) 약국 |
| ☐ (3) 친구 및 친척 | ☐ (4) 외국인노동자 무료 진료소 |
| ☐ (5) 기타() | |

12.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 |
|--|--|
| ☐ (1) 돈 문제 | ☐ (2) 학교 교육 |
| ☐ (3) 탁아 | ☐ (4) 한국사회 적응(한국어 습득 등) |
| ☐ (5) 귀국 후 모국사회 적응 준비(모국 문화 및 언어습득) | ☐ (6) 한국어, 의사소통 |
| ☐ (7) 이웃의 차별 | ☐ (8) 기타() |

13. 귀하는 한국에서 태어난(혹은 한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를 모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14번 문항으로) — (2) 없다(13-1번 문항으로)

13-1. 귀하는 자녀를 모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13-2번 문항으로) — (2) 없다(14번 문항으로)

13-2. 귀하가 자녀를 본국에 보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만 보낼 길이 없어서 — (2) 본국에서 키워 줄 사람이 없어서
— (3) 아이를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 (4) 함께 살고 싶어서
— (5) 기타()

14. 한국에 있는 귀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1) 미취학 연령 아동(섹션 D로)
— (2)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고 학교 다님(섹션 C로)
— (3) 취학 연령(만6세 이상 15세 미만)이지만 학교 안 다님(14-1번 문항으로)
— (4) 15세 이상으로 취업(섹션 D로)
— (5) 15세 이상으로 실업(섹션 D로)

14-1. 자녀가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에 — (2) 한국말을 잘 못해서
— (3) 학교 가는 것을 겁내서 — (5) 한국인 아동들의 따돌림 때문에
— (6)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 (7) 기타()

C. 자녀의 학교 생활

1. 현재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D섹션으로)

2. 학교에 찾아가서 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3.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것 같아서
— (2)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3) 학교 공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 (4)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까봐
— (5) 모국어를 잊어 버릴까봐
— (6) 기타()

5.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1) 한국어와 한글 교육 — (2) 한국인 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증진
— (3) 외국인 아동을 위한 상담 — (4) 방과후 프로그램
— (5) 무료급식 — (6) 학비 지원
— (7) 기타() — (8) 도움이 필요 없다

D. 언어 능력

1.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함	별로 잘못함	대체로 잘함	매우 잘함
1-1. 말하기	(1)	(2)	(3)	(4)
1-2. 듣기(이해하기)	(1)	(2)	(3)	(4)
1-3. 읽기	(1)	(2)	(3)	(4)
1-4. 쓰기	(1)	(2)	(3)	(4)

2. 귀하는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 ☐ (1) 모국어
 ☐ (2) 한국어
☐ (3)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3.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가끔 한다
☐ (3) 종종 한다
 ☐ (4) 자주 규칙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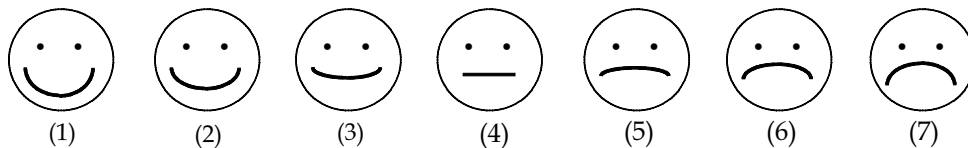
4.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장래 고등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가끔 한다
☐ (3) 종종 한다
 ☐ (4) 자주 규칙적으로 한다

5. 귀하(또는 배우자)는 얼마나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십니까?

- ☐ (1) 거의 하지 않는다
 ☐ (2) 한 달에 한두 차례
☐ (3) 일 주에 한두 차례
 ☐ (4) 거의 매일

6. '현재 귀하의 자녀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 ☐ (1) 중학교 이하
 ☐ (2) 고등학교
☐ (3) 전문대학(2년제)
 ☐ (4) 대학교(4년제)
☐ (5) 대학원 석사과정
 ☐ (6) 대학원 박사과정
☐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E. 사회적 연결망

- 명

- [illegible]

-
- Seven smiley faces are shown in a row, labeled (1) through (7). Each face is a circle with two dots for eyes. The mouth is represented by a curved line. The sequence shows a progression from a wide, upward-curving smile in (1) to a wide, downward-curving frown in (7). Faces (2) and (3) are happy, (4) is neutral, and (5), (6), and (7) are sad.

- |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런 편이다 | 꽤
그런 편이다 | 아주 많이
그렇다 |
|--|--------------|--------------|-------------|--------------|
| 4-1. 한국에서 모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서로 돕고 있습니까? | (1) | (2) | (3) | (4) |
| 4-2. 한국에서 모국 출신 사람들끼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1) | (2) | (3) | (4) |
| 4-3. 귀하는 모국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 (1) | (2) | (3) | (4) |
| 4-4. 귀하의 자녀가 모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 (2) | (3) | (4) |
| 4-5. 귀하는 얼마나 자주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주십니까? | (1) | (2) | (3) | (4) |
| 4-6. 귀하는 얼마나 자주 모국의 명절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십니까? | (1) | (2) | (3) | (4) |

- 252

6. 귀하의 이웃 사람들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대체로 찬성한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6-1. 내 자녀가 상담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다	(1)	(2)	(3)	(4)	(5)
6-2. 이웃 사람들은 자녀를 기르는 데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1)	(2)	(3)	(4)	(5)
6-3. 내 자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정보 습득을 이웃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	(1)	(2)	(3)	(4)	(5)

7.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 또는 애칭을 알고 있습니까?

— (1) 안다 — (2) 모른다

7-1. 이름 또는 애칭을 알고 있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 수는 몇 명입니까?

 명

8. 귀하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를 알고 지냅니까?

— (1) 안다 — (2) 모른다

8-1. 알고 지내는 한국에 사는 자녀의 친한 친구의 부모 수는 몇 명입니까?

 명

9.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규제하십니까?

	규제한다	아니다
9-1. TV프로그램의 종류	(1)	(2)
9-2.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작 또는 종료 시간	(1)	(2)
9-3. 총 TV 시청시간	(1)	(2)

10. 귀하(또는 배우자)는 자녀의 다음 활동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신경쓰고 있다	아니다
10-1.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교 성적을 유지하기	(1)	(2)
10-2. 숙제하기	(1)	(2)
10-3. 집안일하기	(1)	(2)

11. 귀하는 종합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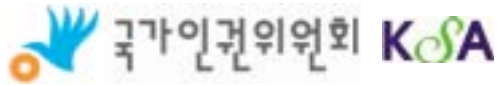

(4)


(5)


(6)


(7)

♪ 귀하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ID NO				
1	2	3	4	5
7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학교생활 조사연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외국인 친구에 대한 태도와 학교 생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체계적·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하실 때 다른 분들과 상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답변한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한 한 모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 151-8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응답 요령은 ‘_’에 ✓를, ‘□’ 안에 숫자를, ‘()’안에 글자를 써넣으시면 됩니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31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전화: (063) 270-2917

이-메일: dhseol@chonbuk.ac.kr

A. 청소년의 신상 정보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1) 남자

___ (2) 여자

2.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년 월

3. 학생의 부모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같은 직업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___ (01) 공장노동자

___ (02) 사무원

___ (03) 판매원

___ (04)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___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___ (06) 기업경영자

___ (07) 전문기술자

___ (08) 교사, 교수

___ (09) 변호사, 판사, 법률가

___ (10) 의사

___ (11) 상점운영

___ (12) 기타()

4. 학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4-1. 행정구역

___ (01) 서울특별시

___ (02) 인천광역시

___ (03) 대구광역시

___ (04) 대전광역시

___ (05) 부산광역시

___ (06) 광주광역시

___ (07) 울산광역시

___ (08) 경기도

___ (09) 충청남도

___ (10) 충청북도

___ (11) 경상남도

___ (12) 경상북도

___ (13) 전라남도

___ (14) 전라북도

___ (15) 강원도

___ (16) 제주도

4-2. 지역규모

___ (1) 도시지역

___ (2) 농촌지역

5. 학생의 한국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6. 학생의 가족은 몇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

7. 학생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

B. 가족 관계

1. 학생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 — (1) 아버지 | — (2) 어머니 | — (3) 형제 · 자매 |
| — (4) 할아버지 | — (5) 할머니 | — (6) 기타 가족 · 친척 |
| — (7) 아버지의 친구 | — (8) 어머니의 친구 | — (9)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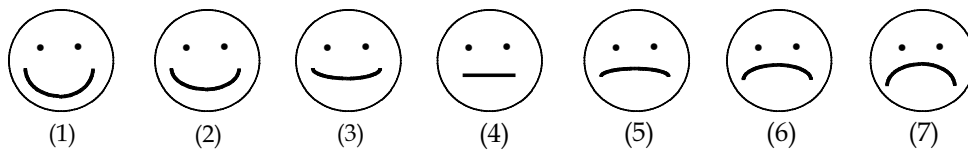
2. 학생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있습니까?

	전혀 없음	이따금 있음	종종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2-1. 자유시간을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한 경우	(1)	(2)	(3)	(4)	(5)
2-2.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 경우	(1)	(2)	(3)	(4)	(5)
2-3. 가족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낀 경우	(1)	(2)	(3)	(4)	(5)

3. 다음과 같은 태도에 대해 학생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3-1. 어떤 사람의 취직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친구보다는 친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다	(1)	(2)	(3)	(4)
3-2.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될 경우 친척만이 도와줄 수 있다	(1)	(2)	(3)	(4)
3-3. 직업을 구할 때, 먼 지역의 좋은 일자리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1)	(2)	(3)	(4)

4.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5. 학생이 부모님께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
| — (1) 용돈을 적게 준다 | — (2) 공부만 강요한다 |
| — (3) 나를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는다 | — (4)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
| — (5) 내 생각을 무시한다 | — (6) 기타() |

C. 교육 · 직업에 대한 태도

1.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습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을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 | |

2.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를 전혀 다닐 수 없다 | |

3.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 (1) 중학교 이하 | ☐ (2) 고등학교 |
| ☐ (3) 전문대학(2년제) | ☐ (4) 대학교(4년제) |
| ☐ (5) 대학원 석사과정 | ☐ (6) 대학원 박사과정 |
| ☐ (7)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다 | |

4. 학생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 | |
|---|--|
| ☐ (01) 공장노동자 | ☐ (02) 사무원 |
| ☐ (03) 판매원 | ☐ (04) 기능공, 컴퓨터 프로그래머 |
| ☐ (05)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 (06) 기업경영자 |
| ☐ (07) 전문기술자 | ☐ (08) 교사, 교수 |
| ☐ (09) 변호사, 판사, 법률가 | ☐ (10) 의사 |
| ☐ (11) 기타() | |

5.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학생이 그 직업을 실제로 가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 | |
|--|--|
| ☐ (1) 매우 낮다 | ☐ (2) 다소 낮은 편이다 |
| ☐ (3) 다소 높은 편이다 | ☐ (4) 매우 높다 |

D. 친구 관계

1. 개인적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몇 명 있습니까?

1-1. 한국인 친구 명

1-2. 외국인 친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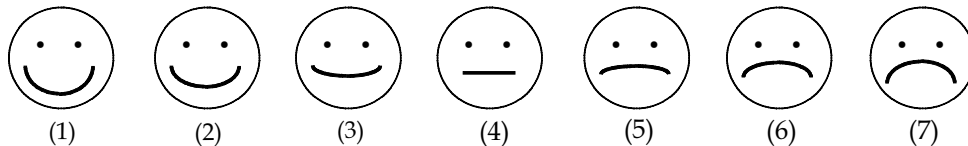
4. 다음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의견입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반대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4-1. 진정한 교육 정신이 살아 있다	(1)	(2)	(3)	(4)
4-2.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전혀 사귀려 하지 않는다	(1)	(2)	(3)	(4)
4-3.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1)	(2)	(3)	(4)
4-4.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4-5. 나는 학교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4-6. 다른 학생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한다	(1)	(2)	(3)	(4)
4-7.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싸운다	(1)	(2)	(3)	(4)
4-8. 학교에 학생 폭력배가 많다	(1)	(2)	(3)	(4)
4-9.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다	(1)	(2)	(3)	(4)
4-10. 학생들의 규율이 바르다	(1)	(2)	(3)	(4)

5. 2003년 1학기에 학교에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1~2번	3번 이상
5-1. 학교에서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훔쳐갔다	(1)	(2)	(3)
5-2.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 나를 위협하였다	(1)	(2)	(3)
5-3. 학교에서 다른 학생과 주먹다짐을 했다	(1)	(2)	(3)

6. 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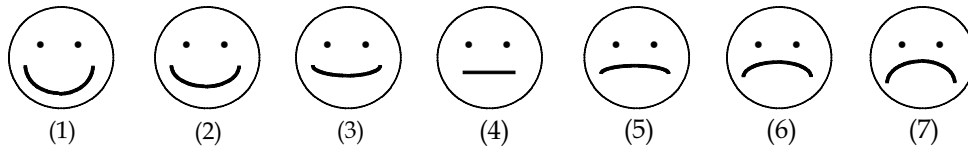
7. 학생의 학교에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8. 학생은 외국인 청소년이 한국인 청소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일을 목격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8-1. 욕설 · 협박 · 모욕	(1)	(2)	(3)	(4)	(5)
8-2. 돈 · 물건 빼앗김	(1)	(2)	(3)	(4)	(5)
8-3. 따돌림	(1)	(2)	(3)	(4)	(5)
8-4. 신체적 폭행	(1)	(2)	(3)	(4)	(5)

9. 학생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얼굴 표정과 가장 가깝습니까?



10. 학생은 학교에서 학급임원(반장 · 부반장 등)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 | |
|-------------|-----------------|
| ___ (1) 없다 | ___ (2) 반장 |
| ___ (3) 부반장 | ___ (4) 각 부서 부장 |
| ___ (5) 분단장 | ___ (6) 기타() |

11.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___ (1) 있다 | ___ (2) 없다 |
|------------|------------|

11-1. 학생이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 | |
|---------------------------|-----------------------------|
| ___ (1)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생활의 어려움 | ___ (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경제 · 한국사회 |
| ___ (3)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___ (4) 기타() |

12. 학생은 외국인 친구의 부모님들이 왜 한국으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 |
|---------------------|------------------------|
| ___ (1) 돈을 벌려고 | ___ (2)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
| ___ (3)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 ___ (4) 기타() |
| ___ (5) 생각해본 적 없다. | |

13. 학생은 일본에 사는 한국 동포들처럼 민족이나 국적이 달라서 무시 받거나 차별 받는 글이나 영화 · TV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까?

- | | |
|------------|------------|
| ___ (1) 있다 | ___ (2) 없다 |
|------------|------------|

14. 학생은 요즘 학교 내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1) 매우 심각하다 | ___ (2) 심각하다 |
| ___ (3) 보통이다 | ___ (4) 심각하지 않다 |
| ___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15.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___ (1) 있다 | ___ (2) 없다 |
|------------|------------|

15-1. 학생은 한국인 친구가 외국인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십시오.

- | | |
|-------------------------|-----------------------|
| ___ (1) 외국인이라서 | ___ (2)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
| ___ (3) 태도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 ___ (4) 피부색이 달라서 |
| ___ (5) 잘하는 것이 없어서 | ___ (6)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
| ___ (7) 건방지다고 | ___ (8) 특별한 이유 없이 |
| ___ (9) 기타() | |

16.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싸웠을 경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 (1) 잘못된 친구를 혼내신다 — (2) 외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 (3) 한국인 친구를 혼내신다 — (4) 그냥 내버려둔다
— (5) 기타()

E. 가치관과 태도

1. 학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1. 돈을 많이 버는 것	(1)	(2)	(3)
1-2.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1)	(2)	(3)
1-3.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1)	(2)	(3)
1-4. 부모·친척과 가까이 사는 것	(1)	(2)	(3)
1-5.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떠나는 것	(1)	(2)	(3)
1-6. 자녀를 갖는 것	(1)	(2)	(3)
1-7.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	(1)	(2)	(3)
1-8.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1)	(2)	(3)
1-9.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1)	(2)	(3)
1-10.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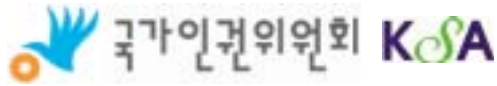
2. 다음과 같은 일은 모든 사람이 가끔씩 느끼는 것입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1주일에 몇 일 정도 자주 갖습니까?

	거의 없다 (1주일에 한 차례 미만)	가끔 있다 (1주일에 1~2일)	종종 있다 (1주일에 3~4일)	자주 있다 (1주일에 5~7일)
2-1. 슬프다고 느낀다	(1)	(2)	(3)	(4)
2-2. 매사에 잘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2-3. 밥맛이 없어 먹기 싫다	(1)	(2)	(3)	(4)
2-4. 우울하다	(1)	(2)	(3)	(4)

3. 다음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학생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정말로 그렇다
3-1. 부모님은 나를 아주 미워한다	(1)	(2)	(3)	(4)
3-2.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2)	(3)	(4)
3-3. 부모님과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서 종종 말다툼을 한다	(1)	(2)	(3)	(4)
3-4. 부모님은 보통 내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 학생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학생의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ID NO				
1	2	3	4	5
1				

외국인 아동 인권실태 심층면접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노동자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 면접에 응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의 연구에 할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humanrights.go.kr

☎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www.ksa.re.kr

☎ 151-8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5-7 미주하바드 오피스텔 904호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 200-701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진수 교수 연구실

전화: (033) 250-6874

이-메일: yoruba@kangwon.ac.kr

1. 심층면접 대상자

- ① 외국인노동자(부모)
- ② 외국인노동자 아동(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이상)
- ③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한국인 친구(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④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한국인 교사나 학교 행정책임자

2. 심층면접 절차

- ① 질문지 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형적 유형의 연구대상자 리스트 확인
- ② 심층면접 참여 의사 타진
- ③ 1차 면접조사: 면담자와 연구대상자의 상호소개, 연구내용 소개, 질문지를 함께 작성함으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 질문지를 함께 작성할 때 설문항목의 보기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심층면접의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 외에는 모두 조사대상자의 언어 표현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질문지에 나온 모든 질문들을 함께 작성하면서, 각 문항의 보기들을 고른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실제 실태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설명을 작성한다. 예컨대, 가족관계: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시한 후, 모국에 남아있는 가족, 형제자매에 대한 질문, 그들과의 연락, 이산가족으로 사는 생활의 어려움 등을 추가로 질문한다. 학교생활: 친구 사귀기가 왜 어려운가?: 친구 사귀는 방법, 문제들, 한국 친구와 모국인 친구와의 차이 등…….
- ④ 2차 심층면접: 1차 면접에서 확인된 사실들에서 빠진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을 확인한다. 1차 면접 답변이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다.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들을 질문한다.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른 형식을 갖춰도 되나, 아래에 별도로 제시한 질문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⑤ 3차 심층면접: 생애사 채록,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의 삶에 대한 진술, 연구 대상자가 이해한 생활세계를 자신의 언어로 진술케 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생애사 채록은 연구 대상자에 따라 2차 면접에서 시작하고, 3차 면접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도 된다.

3. 심층면접시 유의사항

- ① 연구 대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배려한다. 면접자는 연구대상자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빈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공백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선에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 가부간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피해야 한다.
- ② 심층면접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언어나 표현, 말투 등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녹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대상자가 녹음을 허락치 않는 경우는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한 후, 면접 직후 바로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술하는 방식을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 ③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 몇몇 사례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거

짓말이라고 추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4.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면접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꼭 그렇게 행동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진술일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일상의 실제 모습이 그들이 진술한 삶과 일치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일상에 대한 참여관찰은 아동이 설명한 자신의 생활이 실제 그러한가를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참여관찰은 연구 대상자(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을 가정, 학교, 놀이방, 쉼터 등의 터전에서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층면접에서 취득한 각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일주일에 3일 정도 관찰함으로써 재구성해 본다.

B. 아동 면접

1. 한국에 오게 된 과정: 출생, 이주; 이주라면 어떤 경로로 입국했는가? 부모님만 오지 않고 함께 입국한 이유?; 가족관계; 이산가족의 경험 등.
2. 학생들이 이해한 본국과 한국의 학교생활 비교.
3.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의 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
4. 한국 친구들이 놀리거나 때리고 왕따시킨적 있나? 있다면 그 사례를 자세히 질문할 것.
5. 학교에서 반장이나 부반장을 맡은 아이들과 자신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학급 간부가 되고 싶은 적이 있는가?
6. 자신의 모국에 대해 한국 친구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한국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모국에서 가져온 옷을 입고 학교에 온 적이 있는가? 그랬을 때 친구들 반응은? 모국의 전통의상을 한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아니라면 왜? 수업시간에 모국의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발표를 하라고 권한 적이 있는가?
7. 학교 급식에 관한 질문: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가? 급식 당번 친구들이 특별히 놀리거나 장난을 친 적이 있는가? 집에서 부모님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급식에 나오는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가?
8. 학교 수업에 관한 질문: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수업 내용에서 모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가? 수업과 관련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9. 방과후 시간 활용 패턴: 수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학원에 가는가? 간다면 어떤 과목? 친구와 노는가? 어떤 친구와 노는가?(한국인 친구, 모국인 친구, 다른 외국인아동 친구?) 어디에서 주로 노는가? 집에 있다면 무엇을 하는가?

C. 부모 면접을 통한 아동의 생활 조사

1. 개인신상: 국적, 연령, 교육정도, 모국에서의 직업,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 결정 이유, 입국과정, 입국시기, 한국에서의 정착과정.
2. 자녀: 한국에서의 출생 — 출산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이유?
본국에서 이주: 자녀를 동반한 이유, 모든 자녀를 다 동반했는가? 본국에 남은 자녀는 누가 돌보는가? 이산가족의 어려움과 실태에 대한 질문.
3. 자녀를 한국의 학교에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자녀를 한국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4.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습내용, 방과후 보호의 실태.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과내용 등.
담임교사와의 관계: 관계가 안 좋다면 그 이유는?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과준비물, 급식에 대한 인지 내용.
교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필요한 것?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학교에 보내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유, 보육실태, 대안학교(쉼터 운영학교) 등교 여부, 어려운 점.
6. 자녀의 만족스러운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선책이 무엇인가? 학교, 쉼터 공부방, 대안학교, 교사, 회사, 공무원 등.
7. 일반적 자녀 육아내용: 용돈, 친구관계, 피부색이 다른데서 오는 차별, 외국인 또는 혼혈아라고 받는 차별 등.
8. 학교 생활이나 거주지, 작업장의 일상 중 외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인권침해가 있다면 무엇인가?
9.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10. 여아의 경우, 한국인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는지? 본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겪었는지 질문할 것. (이 질문은 인터뷰의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상담소를 통해 미리 파악한 경우는 상담소 활동가들과 상의할 것)

D. 부모 심층면접

1. 개인신상: 국적, 연령, 교육정도, 모국에서의 직업,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 결정 이유, 입국과정, 입국시기, 한국에서의 정착과정.
2. 자녀: 한국에서의 출생 — 출산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이유?
본국에서 이주: 자녀를 동반한 이유, 모든 자녀를 다 동반했는가? 본국에 남은 자녀는 누가 돌보는가? 이산가족의 어려움과 실태에 대한 질문.
3.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
출생신고
예방접종 및 병원 진료
4. 육아 문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지?
보육 비용은 얼마? 어떤 곳에 아이를 보내는가?
5. 자녀를 본국에 보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6. 자녀교육
놀이방(탁아소)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학교에 보내고 있는지?
보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보내고 있다면 몇 시간이나(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취학아동의 경우, 방과후 일과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나 준비물을 아이가 혼자 준비하도록 하는지?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가장 힘든 일은?
7. 자녀의 이중문화
자녀가 한국어와 본국어 중에 더 잘하는 말은?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느니?
자녀가 본국어를 잘 못 한다면, 가르치고 싶은지?
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원이 있다면 보내고 싶은지?
자녀가 한국음식과 본국음식 중 더 좋아하는 것은?
자녀가 한국아이들과 같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
8. 자녀가 외국인 또는 혼혈아로서 겪는 인권침해의 사례는?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구청,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공무원;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 한국인 배우자나 그 친척, 동네주민, 직장 동료나 상사에 의한)
9. 여자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국인에 의한 성추행 여부를 파악할 것(인터뷰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

E. 아동의 한국인 친구

1. 친구를 알게 되어 가장 좋은 점은?
2. 친구 집에 놀러가 본적이 있는지?
3. 친구를 집에 초대할 적이 있는지?
4. 친구 나라에 가보고 싶은지?
5.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의 차이? 좋은 점?
6. “외국인”의 인식: 백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동남아 출신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피부색, 가난…….
7. 외국인 친구를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F. 답임 교사

1. 외국인 학생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2. 언어소통은 어느 정도(수업에 지장이 있다, 문제없다…….)?
3. 수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4. 가장 잘하는 과목은?
5. 가장 싫어하거나 못하는 과목은?
 - 5-1. 그 이유가 있다면?
6.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다툼 적이 있는지?
 - 6-1. 있다면 그 이유는?
7.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
 - 7-1. 있다면 그 이유는(한국말을 잘 못해서, 피부색 때문에,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서…….)?
8. 외국인 학생이 다른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는지?
 - 8-1. 있다면 그 이유는?
9. 한국인 친구들이 외국인 학생의 나라와 역사 문화 등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지?
10. 외국인 학생의 부모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1. 외국인 학생의 출신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 보고 싶었거나 해 본적이 있는지?
12. 교육을 해 봤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13. 자료 등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14. 교육을 해 보고 싶었는데 못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15.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학교의 지원은 무엇인가?
16.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반 설치에 대한 견해?

G.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

1. 처음 외국인학생의 입학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2. 학생을 입학시킨 후 새롭게 드러난 어려움은?
3.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정부가 더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4. 외국인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국제 이해에 도움이 된다, 따돌림현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라서 학교이미지에 나쁘다…….)?

♪ 당신의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은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필자 소개

설동훈(薛東勳, Dong-Hoon Seol):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메일: dhseol@chonbuk.ac.kr 홈페이지: <http://prof.chonbuk.ac.kr/~dhseol>

저서: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노동부, 2000), 『중소기업 인력부족실태 및 대응방안』 (노동부, 2001),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국제노동재단, 2003) 등.

논문: “Foreign Workers in Korea 1987-2000: Issues and Discussions” (2000), “Past and Presen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1987-2000” (2001),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tics: A Comparison of Migrant Workers and Women’s Rights in South Korea” (2002),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in Korea: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measures” (2003),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2004), “Foreign Migrant Work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 (2004) 등.

한건수(韓健洙, Geon-Soo Han):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메일: yoruba@kangwon.ac.kr

저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세계화와 사회변동』 (강원대학교출판부, 2002),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일조각, 2003).

논문: “African Migrant Workers’ View of Korean People and Culture” (2004), “Foreign Migrant Workers and Social Discrimination in Korea” (2004) 등.

이란주(李蘭珠, Ran-Joo Lee):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정책팀장.

이-메일: ranjoo@empal.com

저서: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2003).

논문: “한국내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2001) 등.